

제8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책임연구원 : 김영한(한국청소년개발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춘화(한국청소년개발원 ·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이승현(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2005. 8

국가청소년위원회

목 차

I. 분석개요	1
1. 목 적	1
2. 조사의 개요	1
1) 조사의 대상	1
2) 조사내용	2
3) 분석방법	3
II. 분석결과	4
1. 성범죄자 범죄의 일반적 개요	4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0
3.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5
4. 성범죄 행위 실태	20
1) 피해자 및 성범죄자의 특성과 성매매 제의자	20
2) 피해자 및 성범죄자의 특성과 성교 인원	23
3) 피해자 및 성범죄자의 특성과 성교유형	27
4) 피해자 및 성범죄자의 특성과 피임기구 활용도	31
5) 성범죄자의 특성과 청소년인지여부	35
6) 피해자의 특성과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	36
7) 성범죄자의 특성과 성매매 업소형태	41
8) 성범죄자의 특성과 가해자의 역할	43
9) 피해자의 특성과 성매매업소의 고용조건	44

5. 피해청소년의 특성과 피해청소년행동	45
1) 피해자의 특성과 성관계 경험	45
2) 피해자의 특성과 성폭력 피해경험	47
3) 피해자의 특성과 성매매 형태	48
4) 피해자의 특성과 청소년의 기타피해	51
5) 피해자의 특성과 청소년의 범죄자처벌 의견	55
6) 피해자의 특성과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	56
7) 피해자의 특성과 경찰신고여부	58
8) 피해자의 특성과 성매매이유	59
6.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62
6-1.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내용	68
6-2. 성매수 범죄자 범죄내용	75
6-3. 성매매알선 범죄자 범죄내용	77
III. 분석결과 시사점과 대책	81
1. 일반 대책	81
2. 성범죄자 대책	83
3. 성범죄 피해청소년 대책	85
부록 1. 범죄유형별 3차원 교차표	88

표 목 차

<표 1> 범죄유형별 피해자 분포 현황	2
<표 2> 범죄유형별 성범죄자 분포 현황	4
<표 3> 범죄유형별 피해자 분포 현황	5
<표 4> 성범죄자 범죄유형별 심의결과 분포 현황	5
<표 5> 범죄유형별 성범죄자 범죄처리 현황	6
<표 6> 범죄유형별 성범죄자의 항소 현황	6
<표 7> 범죄유형별 경찰신고 및 가해자와 합의 현황	7
<표 8> 범죄유형별 성범죄자의 경합범죄 현황	7
<표 9> 범죄유형별 성범죄자 전과횟수 현황	8
<표 10> 범죄유형별 성범죄자의 구속 현황	8
<표 11> 범죄유형별 처벌관련 법률 및 조문 적용 현황	9
<표 12> 범죄자의 성별	10
<표 13> 국적	10
<표 14> 교육수준	11
<표 15> 거주지역	11
<표 16> 직업	12
<표 17> 가해자의 직업안정성	13
<표 18> 성범죄자의 혼인상태	14
<표 19> 성범죄자 연령별	14
<표 20> 성범죄자 과거 전과 기록	15
<표 21> 피해자의 성별	15
<표 22> 피해자의 교육수준	16
<표 23> 피해자의 연령	17
<표 24> 피해자의 직업	18
<표 25> 피해청소년의 동거형태	19

<표 26> 청소년의 가출여부	19
<표 27> 성매매 제의자와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20
<표 28> 성매매제의자와 피해자 직업과의 관계	21
<표 29> 성매매 제의자와 성범죄자연령과의 관계	21
<표 30> 성매매제의자와 범죄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22
<표 31> 성매매제의자와 범죄자 직업과의 관계	22
<표 32> 성매매 제의자와 가해자의 직업안정성과의 관계	23
<표 33> 성교인원과 피해자연령과의 관계	23
<표 34> 성교인원과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24
<표 35> 성교인원과 피해자 직업과의 관계	24
<표 36> 성교인원과 범죄자 연령과의 관계	25
<표 37> 성교인원과 범죄자의 교육수준과의 관계	25
<표 38> 성교인원과 범죄자 직업과의 관계	26
<표 39> 성교인원과 가해자의 직업안전성과의 관계	26
<표 40> 성교유형과 피해자 연령과의 관계	27
<표 41> 성교유형과 피해자 교육수준의 관계	28
<표 42> 성교유형과 피해자직업과의 관계	28
<표 43> 성교유형과 성범죄자 연령과의 관계	29
<표 44> 성교유형과 범죄자의 교육수준과의 관계	29
<표 45> 성교유형과 범죄자 직업과의 관계	30
<표 46> 성교유형과 가해자의 직업안정성과의 관계	30
<표 47> 피임기구 사용여부와 피해자연령과의 관계	31
<표 48> 피임기구 사용여부와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32
<표 49> 피임기구 사용여부와 피해자 직업과의 관계	32
<표 50> 피임기구 사용여부와 성범죄자 연령과의 관계	33
<표 51> 피임기구 사용여부와 범죄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33
<표 52> 피임기구 사용여부와 범죄자 직업과의 관계	34
<표 53> 청소년 인지여부와 성범죄자의 연령과의 관계	35
<표 54> 청소년 인지여부와 범죄자의 교육수준과의 관계	35

<표 55>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과 피해자의 연령과의 관계	36
<표 56>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과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37
<표 57>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과 피해자 직업과의 관계	38
<표 58>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과 성범죄자 연령과의 관계	39
<표 59>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과 범죄자의 교육수준과의 관계	40
<표 60> 성매매업소의 형태와 성범죄자 연령과의 관계	41
<표 61> 성매매업소의 형태와 범죄자의 직업과의 관계	42
<표 62> 성매매업소의 형태와 가해자 직업안정성과의 관계	42
<표 63> 업소에서 가해자의 역할과 범죄자의 교육수준과의 관계	43
<표 64> 성매매업소의 고용조건과 피해자연령과의 관계	44
<표 65> 성매매업소의 고용조건과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44
<표 66>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경험유무와 교육수준과의 관계	45
<표 67>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경험유무와 직업과의 관계	46
<표 68>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경험유무와 청소년 가출여부와의 관계	46
<표 69>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경험유무와 피해자연령과의 관계	47
<표 70>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경험 유무와 교육수준과의 관계	47
<표 71> 피해자의 성폭력피해경험 유무와 청소년 가출여부의 관계	48
<표 72> 피해자의 성매매형태와 연령과의 관계	49
<표 73> 피해자의 성매매형태와 교육수준과의 관계	49
<표 74> 피해자의 성매매형태와 직업과의 관계	50
<표 75> 피해자의 성매매형태와 청소년 가출여부와의 관계	50
<표 76> 청소년의 기타 피해사항과 연령과의 관계	51
<표 77> 청소년의 기타 피해사항과 교육수준과의 관계	52
<표 78> 청소년의 기타 피해사항과 직업과의 관계	53
<표 79> 청소년의 기타 피해사항과 청소년가출여부의 관계	54
<표 80> 피해청소년의 범죄자 처벌의견과 교육수준과의 관계	55
<표 81> 피해청소년의 범죄자 처벌의견과 가출여부의 관계	55
<표 82> 가해자와의 합의여부와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56
<표 83> 가해자와의 합의여부와 피해자 직업과의 관계	57

<표 84> 가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청소년 가출여부와의 관계	57
<표 85> 경찰신고여부와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58
<표 86> 경찰신고여부와 청소년 가출여부와의 관계	58
<표 87> 청소년 성매매이유와 연령과의 관계	59
<표 88> 청소년 성매매이유와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60
<표 89> 청소년 성매매이유와 가출여부와의 관계	61
<표 90> 범죄 유형별 범행 장소	62
<표 91> 범죄유형별 범행지역	63
<표 92> 범죄유형별 범행월	64
<표 93> 범죄유형별 범행일	65
<표 94> 범죄유형별 범행시간	65
<표 95> 범죄유형별 범행요일	66
<표 96> 범죄유형별 공범여부	66
<표 97> 범죄유형별 공범 수	67
<표 98>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68
<표 99>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공범관계에서의 역할	68
<표 100>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범죄지속기간	69
<표 101>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피해청소년 유인방법	69
<표 102>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제방식	70
<표 103>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피해자의 저항정도	71
<표 104>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범행이후 2차폭력 유형	71
<표 105>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윤간공범자수	72
<표 106>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범죄피해여부	73
<표 107>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간 유형	73
<표 108>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제추행 유형	74
<표 109> 성매수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	75
<표 110> 성매수범죄자의 성매매제의자	75
<표 111> 성매수범죄의 성교인원	76
<표 112> 성매수범죄의 성교유형	76

<표 113> 성매수범죄시 피임기구사용여부	76
<표 114> 성매매알선범죄의 성매매업소 위치지역	77
<표 115> 성매매알선범죄 업소에 고용한 청소년의 수	78
<표 116> 성매매알선범죄의 업소형태	78
<표 117> 성매매알선범죄자의 업소에서의 역할	78
<표 118>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청소년의 업소에서의 노동조건	79
<표 119> 성매매알선범죄의 업소에 고용된 경로	79
<표 120> 성매매알선범죄의 성매매 강요방법	80
<표 121> 성매매알선범죄의 성매매 외 다른 범죄 발생유형	80
부록 1. 범죄유형별 3차원 교차표	88
<표 1> 성매매알선의 피해자 교육수준별 성매매이동경로	88
<표 2> 성매매알선의 피해자 연령별 성매매이동경로	88
<표 3> 성매매알선의 피해청소년 동거형태별 성매매이동경로	89
<표 4> 성매매알선의 청소년 가출여부에 따른 성매매이동경로	89
<표 5>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자 교육수준별 성매매이유	90
<표 6>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자 연령별 성매매이유	90
<표 7>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청소년 동거형태별 성매매이유	91
<표 8> 성매매알선범죄의 청소년가출여부에 따른 성매매이유	91
<표 9>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자 교육수준별 성매매이전 일자리	92
<표 10>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자 연령별 성매매이전 일자리	92
<표 11>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청소년 동거형태별 성매매이전 일자리	93
<표 12> 성매매알선범죄의 청소년가출여부에 따른 성매매이전 일자리	93
<표 13>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자 교육수준별 업소에 고용된 경로	94
<표 14>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자연령별 업소에 고용된 경로	94
<표 15>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청소년 동거형태별 업소 고용경로	95
<표 16> 성매매알선범죄의 청소년가출여부에 따른 업소 고용경로	95
<표 17> 성매매알선범죄의 성범죄자 연령별 성매매강요방법	96
<표 18> 성매매알선범죄의 교육수준별 성매매강요방법	96

<표 19> 성매매알선범죄의 직업별 성매매 강요방법	97
<표 20> 성매매알선범죄자의 연령별 성매매 외 다른 범죄발생 유형	97
<표 21> 성매매알선 범죄자 교육수준별 성매매 외 다른 범죄발생유형	98
<표 22> 성매매알선범죄자 직업별 성매매 외 다른 범죄발생 유형	98
<표 23> 피해자신분별 피해유무	99
<표 24> 피해자신분별 음부상처나 감염피해 유무	100
<표 25> 피해자신분별 음부이외 외상피해 유무	101
<표 26> 피해자신분별 금전적 피해유무	102
<표 27> 피해자신분별 임신피해유무	103
<표 28> 성매수범죄의 피해자신분별 기타 피해사항	104
<표 29> 강간범죄의 강제추행 유형별 피해여부	104
<표 30>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제추행 유형별 음부상처나 감염피해유무	105
<표 31>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제추행 유형별 음부 이외 외상피해유무	106
<표 32>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제추행 유형별 금전적 피해유무	107
<표 33>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제추행 유형별 임신피해유무	107
<표 34>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간 유형별 피해유무	108
<표 35>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간 유형별 음부상처나 감염피해유무	109
<표 36>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간 유형별 음부 이외의 외상피해 유무	110
<표 37>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간 유형별 금전적 피해유무	111
<표 38>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간 유형별 임신피해유무	112
<표 39>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간 유형별 피해자 신분	113
<표 40>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제추행 유형별 피해자 신분	114
<표 41>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유인방법별 피해자 신분	115
<표 42>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제방식별 피해자신분	116
<표 43>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범행이후 2차폭력 유형별 피해자 신분	117
<표 44> 성매매알선범죄의 성범죄자 연령별 성매매 강요방법	118
<표 45>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연령별 유인방법	118
<표 46>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연령별 강제방식	119
<표 47>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연령별 범행이후 2차폭력 유형	120

<표 48>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연령별 강제추행 유형	121
<표 49>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연령별 강간의 유형	122
<표 50> 성매매알선 범죄자연령별 성매매강요방법	122
<표 51>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교육수준별 유인방법	123
<표 52>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의 교육수준별 강제방식	124
<표 53>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의 교육수준별 범행이후 2차폭력 유형	125
<표 54>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교육수준별 강제추행 유형	126
<표 55>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교육수준별 강간 유형	127
<표 56> 성매매알선 범죄자 직업별 성매매 강요방법	127
<표 57>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자 직업별 유인방법	128
<표 58>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직업별 강제방식	129
<표 59>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직업별 범행이후 2차폭력 유형	130
<표 60>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자 직업별 강제추행 유형	131
<표 61>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자 직업별 강간 유형	132
<표 62>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연령별 범죄지속기간	133
<표 63>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교육수준별 범죄지속기간	134
<표 64>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직업별 범죄지속기간	135
<표 65>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 피해자 직업별 범죄지속기간	136
<표 66>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 피해청소년 동거형태별 범죄지속기간	137
<표 67>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에서 청소년가출여부에 따른 범죄지속기간	138
<표 68>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 피해자신분별 범죄지속기간	138
<표 69>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의 강제방식별 피해자의 저항정도	139
<표 70>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제추행 유형별 피해자 저항정도	140
<표 71>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의 강간 유형별 피해자 저항정도	141
<표 72>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 피해자신분별 저항정도	142

그림 목차

<그림 1> 성범죄유형별 범죄자 분포도	4
<그림 2> 성범죄자 심의결과 분포도	5

I. 분석개요

1. 목적

이 연구는 제8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에 나타난 심의대상 성범죄자 및 피해청소년의 특성, 성범죄자의 행위 태양,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결과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죄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실증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가적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로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심의 처리된 성범죄자의 범죄행위와 피해청소년의 행태가 주요 분석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행동과 사법처리 결과를 분석한다.

셋째,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다.

넷째,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성범죄행동에 따른 피해결과를 분석한다.

다섯째, 성범죄유형별 범죄내용을 분석한다.

2.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대상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위원회의 제8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심의대상이 된 성범죄자 1,375명과 성범죄 피해청소년 1,251명¹⁾으로 성범죄자 1인당 피해청소년 수는 0.9명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8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심의대상이 된 1,375건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대상 자료는 법원의 재판기록, 검찰조서, 피해자진술서, 수사기록이다.

1) 여기에서 제시하는 피해자수는 사건 중심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수는 이보다 많다. 따라서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분석에서는 분석대상자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표 1> 범죄유형별 피해자 분포 현황

성범죄자 수(사건)	1,375명	피해자 수	1,251명	성범죄자 1인당 피해청소년 수	0.9명
------------	--------	-------	--------	------------------	------

2) 조사내용

본 조사의 내용은 3개 범죄유형별(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 및 강제추행)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조사영역	조사항목
A. 범죄자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상공개여부 - 죄명 - 경합여부 및 경합범죄 - 수사경찰서 - 구속여부 - 1심선고형 및 1심선고형량 - 항소여부 및 항소결과 - 2심선고형 및 2심선고형량 - 3심선고형 및 3심선고형량 - 최종심 변호인
B. 범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지역, 범행 장소, 범행일시 및 요일 - 공범여부 및 가해자의 범행가담정도 - 범행동기, 성매수 경험 - 피해자수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 범행 시 음주정도 - 청소년접촉 방법 및 성매매 제의자 - 성교인원 및 성교유형 - 피해자에 대한 사전 인지 유무 - 고용청소년 수 - 업소형태, 업소의 노동 강도 - 업소에서 가해자의 역할 - 유인방법, 강제강압 방식 - 피해자 저항정도, 2차폭력 - 강제추행 유형, 강간 유형
C. 피해청소년 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 교육수준, 현재의 신분, 직업 - 부모와의 동거상태, 가출여부 - 음주여부 - 과거 성경험 및 성폭력 경험 - 성매매 유형

조사영역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사항, 피해신고, 가해자 처벌, 합의 - 성매매이유, 성매매 대가 - 인터넷 성매매접촉 및 고용사이트 - 성매매경로, 성매매고용경로 - 성매매 강요방법 및 타 범죄의 발생 - 피해청소년 장애여부
D.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국적,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 직업 및 직업의 안정성 - 혼인상태 - 전과기록(이종전과, 동종전과)

조사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자료의 연속성을 중요시하여 이전의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의 조사방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재판결과, 검찰 및 경찰조서, 피해자 진술서 등)을 중심으로 이를 검토하여 사전에 마련된 질문지에 기입토록 하였다. 기입된 설문지에 대한 통계적 처리는 범죄유형별 교차분석을 중심으로 한 백분율과 평균을 활용하였다.

II.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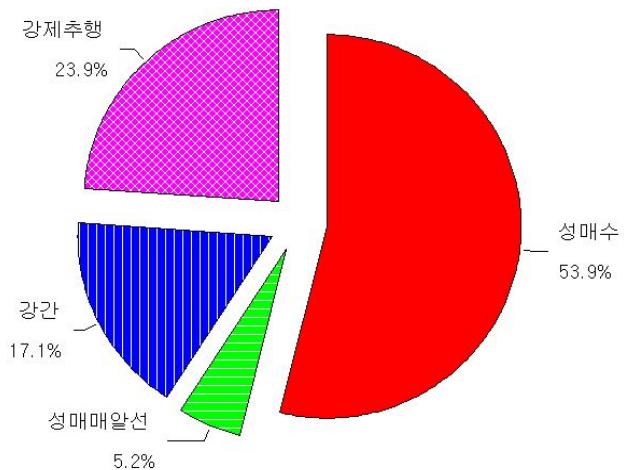
1. 성범죄자 범죄의 일반적 개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유형별 분포현황은 <표 2> <그림 1>에서와 같이 전체 성범죄자는 1375명으로써 성매수 741명(53.9%), 성매매알선 71명(5.2%), 강간 232명(17.1%), 강제추행 331명(23.9%)이다.

<표 2> 범죄유형별 성범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성범죄자수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	강제추행	전체
	741	71	232	331	1375



<그림 1> 성범죄유형별 범죄자 분포도

피해청소년 응답자 1,251명의 범죄유형별 현황은 성매수가 49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강제추행이 394명, 강간이 277명으로 나타나, 피해청소년에게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유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범죄유형별 피해자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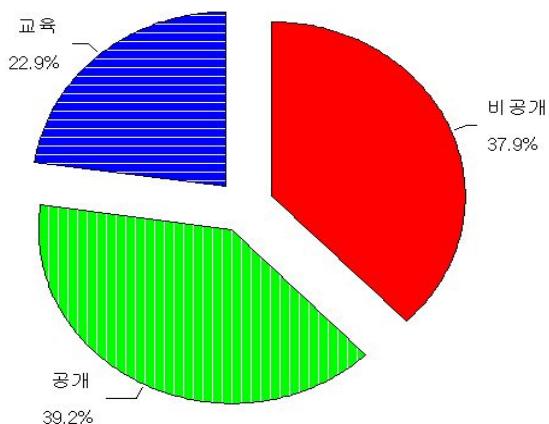
피해청소년수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	강제추행
	494명	86명	277명	394명

성범죄자에 대한 청소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표 4>에서와 같이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공개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매수의 경우는 비공개-교육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법적용 엄격한데 반하여 성매수의 경우는 아직까지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 성범죄자 범죄유형별 심의결과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범죄유형				전체
		성매수	성매매 알선	강간	강제추행	
심의결과	비공개	427	3	22	77	529
	공개	98	68	210	156	532
	교육	216			98	314
전체		741	71	232	331	1375



<그림 2> 성범죄자 심의결과 분포도

전체적으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공개 39.2% 비공개 37.9%, 교육 2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범죄유형별 성범죄자 범죄처리 현황

(단위: 빈도, %)

구 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알선	
선고유예			2		2
			0.3		0.1
벌금		50	424		474
		15.1	57.2		34.5
집행유예	80	181	289	65	615
	34.5	54.7	39.0	91.5	44.7
징역 1년 미만		21	15		36
		6.3	2.0		2.6
징역 1년 이상 3년 미만	35	61	7	6	109
	15.1	18.4	0.9	8.5	7.9
징역 3년 이상 5년 미만	57	11	2	0	70
	24.6	3.3	0.3		5.1
징역 5년 이상	58	7	2	0	67
	25.0	2.1	0.3		4.9
무기징역	2				2
	0.9				0.1
계	232	331	741	71	1375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범죄처리현황을 보면 <표 4>에서와 같이 벌금형은 성매수가 높은 반면에 징역형은 강간이 높으며, 집행유예는 강제추행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집행유예가 44.7%, 벌금이 34.5%를 차지한 반면에 징역5년 이상의 중형은 5%에 머물고 있다.

<표 6> 범죄유형별 성범죄자의 항소 현황

(단위: 빈도, %)

구 분	항목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	강제추행
성범죄자의 항소 현황	항소 요청	피고인	9	25	64.2
	검사	1.3	1.5	1.3	
	쌍방	0.3	–	4.3	
	기각	49.4	57.9	42	
	항소 결과	진행	50.6	42.1	58

성범죄자의 항소는 강간과 강제추행 그리고 성매매알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항소결과는 성매매알선-강제추행-성매수-강간 순으로 기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항소진행은 강간이 58%로 가장 높다.

<표 7> 범죄유형별 경찰신고 및 가해자와 합의 현황

(단위: 빈도, %)

구 분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경찰신고율	34	86.6	97.4
가해자와 합의율	96.8	81.9	79.9

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에 대한 경찰신고율은 강제추행(97.4%)과 강간(86.6)은 높은 반면에 성매수의 경우는 낮게 나타났다.

가해자와의 합의정도에 있어서는 성매수가 96.8%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강간, 강제추행 순이다.

<표 8> 범죄유형별 성범죄자의 경합범죄 현황

(단위: 빈도, %)

전과유무 및 유형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알선	
비경합범	113	264	662	17	1056
	48.7	79.8	89.3	23.9	76.8
이종범죄 경합	62	46	41	16	165
	26.7	13.9	5.5	22.5	12.0
동종범죄 경합	33	15	27	12	87
	14.2	4.5	3.6	16.9	6.3
이종+동종범죄경합	24	6	11	26	67
	10.3	1.8	1.5	36.6	4.9
계	232	331	741	71	1375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와 동시에 일어나는 경합범죄 여부에 있어서는 성매수 89.3%, 강제추행 79.8%로 비경합으로 나타났으나 성매매알선은 76.1% 강간은 51.3 다른 범죄를 수반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매매알선의 경우는 이종+동종범죄가 36.6% 다수의 높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간은 동종범죄가 14.2%에 달한다.

이 결과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성매수와 강제추행은 단순범죄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성매매알선과 강간은 다른 범죄를 수반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피해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매매알선과 강간은 동일인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9> 범죄유형별 성범죄자 전과횟수 현황

(단위: 빈도, %)

범죄유형	이종전과횟수	동종전과횟수
성매수	2.43	.41
성매매알선	3.32	.35
강간	2.66	.19
강간추행	3.03	.16
합계	2.74	.23

성범죄자의 전과횟수는 평균 이종전과 횟수는 2.74회, 동종전과 횟수는 0.23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 알선범죄자의 경우는 당양한 범죄유형과 경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매수는 동종전과 횟수가 가장 높아 동일인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범죄유형별 성범죄자의 구속 현황

(단위: 빈도, %)

구 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알선	
불구속	1	28	288	1	318
	0.4	8.5	38.9	1.4	23.1
구속	219	289	436	70	1014
	94.4	87.3	58.8	98.6	73.7
미상	12	14	17		43
	5.2	4.2	2.3		3.1
계	232	331	741	71	1375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현황은 <표 10>에서와 같이 성매매알선-강간-강제추행 순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매수의 경우는 38.9%가 불구속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8.5%가 불구속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강제추행 대상이 주

로 12세 이하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11> 범죄유형별 처벌관련 법률 및 조문 적용 현황

강간	적용조문	빈도	(%)
특수강도강간	성폭력특별법 제5조	26	11.2
특수강간	성폭력특별법 제6조	47	20.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특별법 제7조	19	8.2
13세미만 강간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25	10.8
강간등상해치상	성폭력특별법 제9조	23	9.9
청소년 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39	16.8
강간미수	성폭력특별법 제12조 등	53	22.8
계		232	100.0
강제추행	적용조문	빈도	(%)
특수강도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 제5조	24	7.3
특수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 제6조	4	1.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 제7조	24	7.3
13세미만 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	211	63.7
강제추행 치상	성폭력특별법 제9조	1	0.3
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63	19.0
강제추행 미수	성폭력특별법 제12조 등	4	1.2
계		331	100.0
성매매알선	적용조문	빈도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6조	55	77.5
알선영업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16	22.5
계		71	100.0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유형별 법률 적용 현황을 보면 <표 11>에서와 같이 강간은 성폭력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개 죄명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중 강간미수가 22.8%, 특수강간 20.3%, 청소년강간 16.8% 순으로 나타나며 특히 13세미만 강간의 경우 10.8%로 강간죄적용 10건 중 1건이 파렴치범임을 알 수 있다.

강제추행은 7개 죄명이 적용되며, 그중 13세미만 강제추행이 63.7%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청소년강제추행이 19%이다. 이것은 강제추행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강제추행에 대한 청소년의 대응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제추행이 대부분 범죄자의 가시거리에서 이루지고 있음을 볼 때 지역사회에서의 성인의 역할과 감시노력이 더욱 요청된

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알선은 2개 죄명으로 적용되며 대부분 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77.5%로 이루어진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12> 성범죄자의 성별

(단위: 빈도, %)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	강제추행	
성별	남	741	45	232	328	1349
		99.9	63.4	100.0	100.0	98.1
	여		26			26
			36.6			1.9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의 98.1%가 남성이고, 여성은 1.9%인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범죄자의 경우 주로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을 저질렀던 반면에, 여성범죄자의 경우는 주로 성매매알선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성별에 따른 범죄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성범죄자의 국적

(단위: 빈도, %)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	강제추행	
국적	내국인	733	71	231	329	1364
		98.9	100.0	99.6	99.4	99.2
	외국인	8	0	1	2	11
		1.1	.0	.4	.6	.8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국적은 전체의 99.2%가 내국인인 반면에, 외국인은 전체의 0.8%인 11명으로 성매매알선을 제외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 성범죄자의 교육수준

(단위: 빈도, %)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	강제추행	
교육수준	무학	0	0	1	2	3
		.0	.0	2.4	2.9	0.7
	중졸이하	27	2	10	25	64
		8.2	2.9	24.4	36.2	14.2
	고졸	93	7	16	24	140
		28.1	63.6	39.0	34.8	31
	대졸이상	211	2	14	18	245
		63.7	18.2	34.1	26.1	54.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체범죄 중 54.2%가 대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범죄자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범죄유형 중에 성매수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범죄자가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성범죄자의 거주지역

(단위: 빈도, %)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	강제추행	
거주지역	서울	207	11	40	72	330
		27.9	15.5	17.2	21.8	24.0
	부산	56	3	8	25	92
		7.6	4.2	3.4	7.6	6.7
	대구	24	2	5	21	52
		3.2	2.8	2.2	6.3	3.8
	인천	87	0	21	20	128
		11.7	.0	9.1	6.0	9.3
	광주	16	1	9	14	40
		2.2	1.4	3.9	4.2	2.9
	대전	2	7	6	3	18
		.3	9.9	2.6	.9	1.3
	울산	23	0	3	7	33
		3.1	.0	1.3	2.1	2.4
	경기	146	10	51	68	275
		19.7	14.1	22.0	20.5	20.0
	경북	81	3	18	18	120
		10.9	4.2	7.8	5.4	8.7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	강제추행	
경남	경남	28	5	20	14	67
		3.8	7.0	8.6	4.2	4.9
	전북	17	10	9	11	47
		2.3	14.1	3.9	3.3	3.4
	전남	12	16	14	17	59
		1.6	22.5	6.0	5.1	4.3
	충북	18	1	6	7	32
		2.4	1.4	2.6	2.4	2.3
충남	충남	6	2	9	15	32
		.8	2.8	3.9	4.5	2.3
	강원	15	0	6	15	36
		2.0	.0	2.6	4.5	2.6
제주	제주	3	0	7	4	14
		.4	.0	3.0	1.2	1.0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역별 분포는 서울 24.0%(330명), 경기 20.0%(275명), 인천 9.3%(128명), 경북 8.7%(12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제주 1.0%(14명)와 대전 1.3%(18명) 지역이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 성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수와 강제추행은 서울지역에서 각각 27.9%(20명), 21.8%(7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알선은 전남지역이 22.5%(16명), 강간은 경기지역이 22.0%(51명)를 차지했다.

<표 16> 성범죄자의 직업

(단위: 빈도, %)

범죄자의 직업	범죄유형				계
	강간	강간추행	성매수	성매매알선	
전문직	3	2	10	-	15
	1.3	0.6	1.3	-	1.1
회사원	39	59	239	2	339
	16.8	17.8	32.3	2.8	24.7
자영업	16	53	110	14	193
	6.9	16.0	14.8	19.7	14.0
서비스직	45	56	115	2	218
	19.4	16.9	15.5	2.8	15.9
일용직	33	49	34	-	116
	14.2	14.8	4.6		8.4
학생	4	11	74	1	90
	1.7	3.3	10.0	1.4	6.5

범죄자의 직업	범죄유형				계
	강간	강간추행	성매수	성매매알선	
공공기관	-	1	7	-	8
		0.3	0.9		0.6
유통업소	10	4	18	32	64
	4.3	1.2	2.4	45.1	4.7
무직	79	89	116	19	303
	34.1	26.9	15.7	26.8	22.0
기타	3	7	18	1	29
	1.3	2.1	2.4	1.4	2.1
계	232	331	741	71	1375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직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회사원 24.7%(339명), 무직 22.0%(303명), 서비스직 15.9%(218명), 자영업 14.0%(193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수의 경우 회사원의 비율이 32.3%(239명)으로 가장 높았고, 성매매알선의 경우 유통업주가 45.1%(32명)로 높았다.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는 무직자의 비율이 각각 34.1%(79명), 26.9(89명)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가해자의 직업안정성

(단위: 빈도, %)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	강제추행		
가해자 직업안정성	무직	137	20	81	92	330
		18.9	29.4	34.6	28.2	24.4
	정규직	348	32	48	102	530
		48.1	47.1	20.5	31.3	39.2
	임시직	155	13	88	102	358
		21.4	19.1	37.6	31.3	26.5
	미상	83	3	17	30	133
		11.5	4.4	7.3	9.2	9.8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직업의 안정성을 살펴보면 정규직인 경우가 39.2%(53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안정성은 각각의 범죄유형별로 약간은 다른데, 성매수, 성매매알선은 정규직이 각각 48.1%(348명), 47.1%(32명)로 나타난 반면에, 강간은 임시직 37.6%(88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강제추행은 정규직과 임시직이 모두 33.1%로 동일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성범죄자의 혼인상태

(단위: 빈도, %)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	강제추행	
혼인상태	미혼	309	9	69	53	440
		43.5	13.0	30.5	16.7	33.3
	기혼동거	106	17	29	75	227
		14.9	24.6	12.8	23.6	17.2
	기혼별거	13	2	11	11	37
		1.8	2.9	4.9	3.5	2.8
	기혼사별	1	0	2	4	7
		.1	.0	.9	1.3	.5
	이혼	28	1	12	17	58
		3.9	1.4	5.3	5.3	4.4
	동거	5	1	10	14	30
		.7	1.4	4.4	4.4	2.3
	기타	1	0	1	0	2
		.1	.0	.4	.0	.2
	미상	247	39	92	144	522
		34.8	56.5	40.7	45.3	39.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혼인상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미상이 전체의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아있는 기록들을 토대로 분포를 살펴보면 미혼인 경우가 33.3%(44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각의 범죄유형별로 검토해보면, 성매수와 강간은 미혼이 43.5%(309명), 30.5%(69명)로 가장 높고, 성매매알선은 기혼동거가 24.6%(44명), 23.6%(75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9> 성범죄자 연령별

(단위: 빈도, %)

연령대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20대 이하	105	44	311	27	487	
	(45.3)	(13.3)	(42.0)	(38.0)	(35.4)	
30	57	85	321	23	486	
	(24.6)	(25.7)	(43.3)	(32.4)	(35.3)	
40	50	107	84	13	254	
	(21.6)	(32.3)	(11.3)	(18.3)	(18.5)	
50	14	56	15	6	91	
	(6.0)	(16.9)	(2.0)	(8.5)	(6.6)	
60	5	32	10	2	49	
	(2.2)	(9.7)	(1.3)	(2.8)	(3.6)	
70	1	7			8	
	(0.4)	(2.1)			(0.6)	
계	232	331	741	71	1375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연령은 주로 20대 이하(35.4%)와 30대(35.3%)가 차지하고 있다. 성범죄유형별로 연령분포 상 차이가 약간은 있는데,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의 경우는 대체로 20대 이하와 30대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강제추행의 경우는 30대와 40대의 비율이 높다.

<표 20> 성범죄자 과거 전과 기록

구분	범죄유형				전체평균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	강제추행	
이종전과	평균	1.82회	3.04회	2.68회	3.06회
	대상자	137명	49명	234명	327명
동종전과	평균	0.34회	0.37회	0.19회	0.15회
	대상자	137명	49명	234명	327명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전과기록을 살펴보면, 청소년범죄 평균 186.7명이 이종전과의 경우 2.65회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동종전과의 경우 0.26회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성범죄자의 이종전과기록상 강제추행이 평균 3.06회로 가장 높았고, 성매수의 경우가 평균 1.82회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동종전과기록상 성매매알선이 평균 0.37회로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이 0.15회로 가장 낮았다.

3.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중 무려 99.1%인 1,679명이 여성이다. 남성의 경우 비율상으로 낮지만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2.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1> 피해자의 성별

(단위: 빈도, %)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성별	남	4	0	1	11	16
		.5	.0	.3	2.8	.9
	여	858	113	319	389	1679
		99.5	100.0	99.7	97.3	99.1

<표 22> 피해자의 교육수준

(단위: 빈도, %)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교육수준	미취학	1	0	5	66
		.1	.0	1.6	3.9
	초등학교 재학	6	0	46	212
		.7	.0	14.3	53.1
	중학교 재학	180	12	73	319
		21.2	10.7	22.7	19.0
	고등학교 재학	173	14	91	319
		20.3	12.5	28.3	19.0
	대학교 재학	0	0	3	3
		.0	.0	.9	.2
	초등학교 졸업	2	0	0	3
		.2	.0	.0	.2
	중학교 졸업	19	2	1	22
		2.2	1.8	.3	1.3
	고등학교 졸업	4	0	8	12
		.5	.0	2.5	.7
	중퇴	174	15	12	203
		20.4	13.4	3.7	12.1
	고퇴	123	11	15	153
		14.5	9.8	4.7	9.1
	미상	169	58	67	319
		19.9	51.8	20.9	19.0

청소년대상 성범죄청소년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생과 중학교 재학생이 각각 19.0%(319명), 초등학교 재학생이 15.7%(264명), 중학교 퇴학생이 12.1%(20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매수의 경우 중학교 재학생(21.2%), 중학교 퇴학생(20.4%), 고등학교 재학생(20.3%)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매매알선의 경우는 중학교 퇴학생(13.4%), 고등학교 재학생(12.5%), 중학교 재학생(10.7%)순을 차지했으며, 강간의 경우 중학교 재학생(22.7%), 고등학교 재학생(2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경우는 초등학교 재학생이 53.1%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청소년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23> 피해자의 연령

(단위: 빈도, %)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연령	2세	0	0	0	2	2
		.0	.0	.0	.5	.1
	3세	0	0	0	1	1
		.0	.0	.0	.3	.1
	4세	0	0	1	14	15
		.0	.0	.3	3.5	.9
	5세	0	0	1	23	24
		.0	.0	.3	5.8	1.4
	6세	2	0	3	25	30
		.2	.0	.9	6.3	1.8
	7세	0	0	3	48	51
		.0	.0	.9	12.1	3.0
	8세	0	0	3	32	35
		.0	.0	.9	8.1	2.1
	9세	0	0	8	32	40
		.0	.0	2.5	8.1	2.4
	10세	1	0	8	33	42
		.1	.0	2.5	8.3	2.5
	11세	1	0	16	39	56
		.1	.0	5.0	9.8	3.3
	12세	18	1	24	42	85
		2.1	.9	7.5	10.6	5.1
	13세	52	8	20	23	103
		6.1	7.1	6.3	5.8	6.1
	14세	126	4	28	15	173
		14.7	3.6	8.8	3.8	10.3
	15세	167	5	47	17	236
		19.5	4.5	14.7	4.3	14.0
	16세	223	24	58	18	323
		26.1	21.4	18.2	4.5	19.2
	17세	193	30	55	20	298
		22.6	26.8	17.2	5.1	17.7
	18세	49	34	42	11	136
		5.7	30.4	13.2	2.8	8.1
	19세	23	6	2	1	32
		2.7	5.4	.6	.3	1.9

청소년성범죄 피해청소년의 연령은 대체로 14세에서 17세의 청소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피해청소년의 연령 비율을 보면, 16세가 19.2%(323명), 17세가 17.7%(198명)로 높았다. 범죄유형별로 분석하면, 성매수의 경우는 16세 26.1%, 17세 22.6% 순으로, 성매매알선의 경우는 18세 30.4%, 17세 26.8% 순으로, 강간의 경우는 16세 18.2%, 17세 17.2% 순으로, 강제추행의 경우는 7세 12.1%, 12세 1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은 주로 비슷한 연령대인 16-18세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강제추행의 경우는 7세, 12세 등 저연령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피해자의 직업

(단위: 빈도, %)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의 직업	무직	429	0	76	46	551
		51.4	.0	24.6	12.4	36.3
	유통업소 아르바이트	3	0	0	0	3
		.4	.0	.0	.0	.2
	편의점등 아르바이트	4	0	1	0	5
		.5	.0	.3	.0	.3
	다방종업원	34	1	18	3	56
		4.1	100.0	5.8	.8	3.7
	유통업소 종업원	25	0	0	1	26
		3.0	.0	.0	.3	1.7
	기타	321	0	192	297	810
		38.4	.0	62.1	80.1	53.4
	미상	19	0	22	24	65
		2.3	.0	7.1	6.5	4.3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직업은 53.4%가 기타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기타 항목에 학생인 청소년을 포함한 결과이다. 학생이 아닌 청소년의 경우 무직이 36.3%, 다방종업원이 3.7%, 유통업소 종업원이 1.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수의 경우 무직자의 비율(5.14%)이 월등히 높았다.

<표 25> 피해청소년의 동거형태

(단위: 빈도, %)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	강제추행		
피해청소년의 동거형태	부모	277	24	128	253	682
		32.4	22.0	40.5	64.1	40.7
	부	66	2	19	26	113
		7.7	1.8	6.0	6.6	6.7
	모	92	4	27	28	151
		10.7	3.7	8.5	7.1	9.0
	조부모	8	0	2	2	12
		.9	.0	.6	.5	.7
	조부	0	0	0	1	1
		.0	.0	.0	.3	.1
	조모	47	6	10	3	66
		5.5	5.5	3.2	.8	3.9
	친척	67	8	17	11	103
		7.8	7.3	5.4	2.8	6.1
	형제자매	89	18	16	10	133
		10.4	16.5	5.1	2.5	7.9
	친구	195	47	97	58	397
		22.8	43.1	30.7	14.7	23.7
	기타	15	0	0	3	18
		1.8	.0	.0	.8	1.1

청소년대상 성범죄 청소년의 동거형태는 40.7%가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보호 하에 있으면서도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친구와 동거하는 경우도 23.7%(397명)로 높게 나타나 청소년이 가출 등을 통해 지내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은 부모와의 동거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성매매알선은 친구와의 동거(43.1%)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6> 청소년의 가출여부

(단위: 빈도, %)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성매매알선	강간	강제추행		
청소년 가출여부	가출	351	50	38	7	446
		41.1	45.5	11.9	1.8	26.6
	미가출	356	20	216	365	957
		41.7	18.2	67.9	91.9	57.0
	미상	146	40	64	25	275
		17.1	36.4	20.1	6.3	16.4
	계	853	110	318	397	1678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를 당한 청소년의 가출여부에 대해 전체 피해청소년 중 57.0%가 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하고, 전체 피해청소년 중 26.6%가 가출상태에서 성범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의 경우에는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가출여부가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일선의 경우는 가출청소년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는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4. 성범죄 행위 실태

1) 피해자 및 성범죄자의 특성과 성매매 제의자

<표 27> 성매매 제의자와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교육수준									계	
	초등 학교재 학	중 학교재 학	고등 학교 재학	초등 학교 졸업	중 학교 졸업	고등 학교 졸업	중퇴	고퇴	미상		
성매매 제의자	가해자	2	89	107	1	7	3	96	59	92	456
		40.0	56.7	71.8	50.0	43.8	100.0	67.1	57.3	68.1	64.0
	피해자	2	61	39	1	9	–	45	43	40	240
		40.0	38.9	26.2	50.0	56.3	–	31.5	41.7	29.6	33.7
	미상	1	7	3	–	–	–	2	1	3	17
		20.0	4.5	2.0	–	–	–	1.4	1.0	2.2	2.4
계		5	157	149	2	16	3	143	103	135	7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매매 피해자는 주로 중·고등학생이 많다. 성매매 피해자의 교육수준별로 성매매 제의자를 살펴보면, 중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의한 자는 가해자가 56.7%(89명), 피해자가 38.9%(61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제의를 한 자는 가해자가 71.8%(107명), 피해자가 26.2%(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퇴학생인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제의는 67.1%가 가해자이었고, 피해청소년이 제의하는 경우는 31.5%에 해당하였다.

<표 28> 성매매 제의자와 피해자 직업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의 직업							계	
		무직	유홍업소 아르 바이트	편의점등 아르 바이트	다방 종업원	유홍업소 종업원	기타	미상		
성매매 제의자	가해자	208	3	3	29	18	181	7	449	
		59.6	100.0	100.0	100.0	72.0	65.8	53.8	64.4	
	피해자	135	-	-	-	5	86	5	231	
		38.7	-	-	-	20.0	31.3	38.5	33.1	
	미상	6	-	-		2	8	1	17	
		1.7	-	-	-	8.0	2.9	7.7	2.4	
	계		349	3	3	29	25	275	13	6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매매 피해자의 직업은 무직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성매매 제의자와 피해자의 직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무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제의를 한 사람은 가해자가 59.6%이고, 피해자가 38.7%이었다.

<표 29> 성매매 제의자와 성범죄자 연령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성범죄자 연령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성매매 제의자	가해자	207	189	46	9	7	458	
		63.7	62.2	68.7	75.0	77.8	63.9	
	피해자	111	110	17	3	1	242	
		34.2	36.2	25.4	25.0	11.1	33.8	
	미상	7	5	4	-	1	17	
		2.2	1.6	6.0	-	11.1	2.4	
	계		325	304	67	12	9	71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자의 연령은 20대 이하와 30대가 주류를 이루는데, 20대 이하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중 가해자가 성매매 제의를 한 경우는 63.7%(207명)로 피해자가 제의를 한 경우인 34.2%(111명)보다 높았다. 30대인 성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중 성

매매제의를 한 가해자는 62.2%, 피해자는 36.2%로 역시 높았다. 40대 이상의 범죄자로 갈수록 성매매 제의를 한 자가 가해자인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0> 성매매제의자와 범죄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교육수준					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미상	기타		
성매매 제의자	가해자	21	64	124	218	17	444	
		80.8	70.3	59.9	63.7	54.8	63.7	
	피해자	5	25	77	116	13	236	
		19.2	27.5	37.2	33.9	41.9	33.9	
	미상	-	2	6	8	1	17	
		-	2.2	2.9	2.3	3.2	2.4	
계		26	91	207	342	31	6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자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의 고학력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대졸이상 범죄자의 행위 중 성매매제의를 한 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59.9%인 124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범죄자가 고졸 이하로 갈수록 성매매제의를 가해자가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표 31> 성매매제의자와 범죄자 직업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직업									계		
		전문직	회사원	자영업	서비스직	일용직	학생 (휴학)	공직 (공공 기관 근무)	유형 업소	무직			
성매매 제의자	가해자	5	142	67	80	19	37	13	10	77	2	452	
		55.6	62.8	63.2	70.2	55.9	51.4	72.2	66.7	68.1	100.0	63.7	
	피해자	3	79	37	33	14	32	4	5	33	1	241	
		33.3	35.0	34.9	28.9	41.2	44.4	22.2	3.3	29.2	100	33.9	
	미상	1	5	2	1	1	3	1	-	3	-	17	
		11.1	2.2	1.9	.9	2.9	4.2	5.6	-	2.7	-	2.4	
계		9	226	106	114	34	72	18	15	113	3	7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직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회사원에게 있어서 성매매 제의는 누가 하는가를 살펴보면 62.8%인 142명인 가해자가 성매매제의를, 35.0%인 79명인 피해자가 성매매 제의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직업을 가진 범죄자의 경우도 역시 가해자 쪽에서 성매매제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성매매 제의자와 가해자의 직업안정성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가해자 직업안정성					계	
	무직	정규직	임시직	미상	기타		
성매매 제의자	가해자	89	215	101	45	450	
		66.9	63.6	66.0	57.7	63.7	
	피해자	40	116	49	30	239	
		30.1	34.3	32.0	38.5	33.9	
	미상	4	7	3	3	17	
		3.0	2.1	2.0	3.8	2.4	
계		133	338	153	78	706	
		100.0	100.0	100.0	100.0	100.0	

가해자의 직업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직업에 상관없이 성매매제의는 가해자가 높다. 그러나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의한 경우도 30%이상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가치관과 지역사회와의 통제력에 대한 정책 대안이 요구된다.

2) 피해자 및 성범죄자의 특성과 성교 인원

<표 33> 성교인원과 피해자연령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연령										계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성교 인원	1:1	1	1	16	44	101	142	167	146	40	23	681	
		100.0	100.0	100.0	91.7	94.4	94.0	91.3	92.4	97.6	100.0	93.4	
	청소년1 : 성인2 이상	-	-	-	-	-	3	-	1	1	-	5	
		-	-	-	-	-	2.0	-	.6	2.4	-	.7	
	청소년2 이상 : 성인 1인	-	-	-	3	5	5	15	10	-	-	38	
		-	-	-	6.3	4.7	3.3	8.2	6.3	-	-	5.2	
	청소년2 이상 : 성인 2 이상	-	-	-	1	1	1	1	1	-	-	5	
		-	-	-	2.1	.9	.7	.5	.6	-	-	.7	
계		1	1	16	48	107	151	183	158	41	23	7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교인원과 피해자의 연령과의 관계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대부분 1:1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변태적 행위가 청소년을 대상의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성교인원과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교육수준									계
		초등학교 재학	중학교 재학	고등학교 재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중퇴	고퇴	미상	
성교인원	1:1	5	158	144	2	15	3	132	91	129	679
		100.0	97.5	96.0	100.0	93.8	100.0	90.4	89.2	92.8	93.7
	청소년1 : 성인2 이상	-	-	1	-	-	-	3	1	-	5
		-	-	.7	-	-	-	2.1	1.0	-	.7
	청소년2 이상: 성인 1인	-	4	3	-	1	-	9	9	10	36
		-	2.5	2.0	-	6.3	-	6.2	8.8	7.2	5.0
	청소년2 이상: 성인 2 이상	-	-	2	-	-	-	2	1	-	5
		-	-	1.3	-	-	-	1.4	1.0	-	.7
	계	5	162	150	2	16	3	146	102	139	72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해자의 교육수준과 성교인원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청소년 1인과 성인 1인이 성매매를 한 경우가 가장 많다. 변태적 성교행위는 고퇴와 중퇴가 각각 8.8%, 6.2%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지도방안 마련되지 않는데도 원인이 있다.

<표 35> 성교인원과 피해자 직업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의 직업						전체	
		무직	유통업소 아르바이트	편의점등 아르바이트	다방 종업원	유통업소 종업원	기타		
성교인원	1:1	316	3	3	31	24	276	12	665
		89.8	100.0	100.0	100.0	96.0	97.5	92.3	93.7
	청소년1 : 성인2 이상	3	-	-	-	1	1	-	5
		.9	-	-	-	4.0	.4	-	.7
	청소년2 이상 : 성인 1인	30	-	-	-	-	5	1	36
		8.5	-	-	-	-	1.8	7.7	5.1
	청소년2 이상 : 성인2 이상	3	-	-	-	-	1	-	4
		.9	-	-	-	-	.4	-	.6
	전체	352	3	3	31	25	283	13	7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해청소년과 성인이 일대일로 성교를 한 경우 피해청소년이 기타인 경우(학생 포함)가 무직인 경우보다 많았다. 변태적 성행위는 무직인 경우가 높으며, 이것은 청소년들이 비용조달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도덕적 관념이나 가치 등을 희생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생활보장과 직업창출 그리고 성에 대한 교육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표 36> 성교인원과 범죄자 연령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성범죄자 연령별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성교 인원	1:1	313	282	66	12	9	682
		94.0	91.6	97.1	100.0	100.0	93.4
	청소년1 : 성인2 이상	3	2				5
		.9	.6				.7
	청소년2 이상 : 성인 1인	14	23	1			38
		4.2	7.5	1.5			5.2
	청소년2 이상 : 성인2 이상	3	1	1			5
		.9	.3	1.5			.7
	계		333	308	68	12	9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20대 30대는 대체로 일대일 성교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변태적 성교행위도 어느 정도 이루진 반면에, 50대 이상의 범죄자들은 청소년과의 일대일 성교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성교인원과 범죄자의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교육수준					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미상	기타	
성교 인원	1:1	26	90	195	325	26	662
		96.3	97.8	92.4	93.1	83.9	93.2
	청소년1 : 성인2 이상	-	-	2	3	-	5
		-	-	.9	.9	-	.7
	청소년2 이상 : 성인 1인	1	2	13	18	4	38
		3.7	2.2	6.2	5.2	12.9	5.4
	청소년2 이상 : 성인2 이상	-	-	1	3	1	5
		-	-	.5	.9	3.2	.7
	계		27	92	211	349	31
			100.0	100.0	100.0	100.0	100.0

범죄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성교인원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변태적 성행위의 경우는 대졸이상의 높은 학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38> 성교인원과 범죄자 직업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직업										계
		전문직	회사원	자영업	서비스직	일용직	학생(휴학)	공직(공공기관근무)	유증업소	무직	기타	
성교 인원	1:1	9	212	105	107	30	70	19	15	106	3	676
		100.0	92.6	95.5	93.9	90.9	94.6	100.0	88.2	92.2	100.0	93.5
	청소년1 : 성인2 이상	-	1	-	-	-	1	-	-	3	-	5
		-	.4	-	-	-	1.4	-	-	2.6	-	.7
	청소년2이상 : 성인 1인	-	13	4	7	2	3	-	2	6	-	37
		-	5.7	3.6	6.1	6.1	4.1	-	11.8	5.2	-	5.1
	청소년2 이상 : 성인2 이상	-	3	1	-	1	-	-	-	-	-	5
		-	1.3	.9	-	3.0	-	-	-	-	-	.7
	계	9	229	110	114	33	74	19	17	115	3	7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범죄자의 전체 직업 중에 일대일 성교방식을 취하는 것은 전문직, 공직, 자영업, 학생의 순으로 일대일 성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업에 비해 회사원과 무직은 4가지 성교인원 방식을 모두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표 39> 성교인원과 가해자의 직업안정성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가해자 직업안정성					계
		무직	정규직	임시직	미상	기타	
성교 인원	1:1	125	326	146	70	3	670
		91.9	94.2	95.4	88.6	75.0	93.3
	청소년1 : 성인2 이상	3	1	-	1	-	5
		2.2	.3	-	1.3	-	.7
	청소년2 이상 : 성인 1인	8	18	6	5	1	38
		5.9	5.2	3.9	6.3	25.0	5.3
	청소년2 이상 : 성인2 이상	-	1	1	3	-	5
		-	.3	.7	3.8	-	.7
	계	136	346	153	79	4	71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 1인과 성인 1인이 성교하는 경우를 가해자의 직업안정성과 관련지어 보면 임시직, 정규직, 무직 순으로 각각 95.4%, 94.2%, 9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청소년 1인과 성인 2 이상의 성교는 가해자가 무직인 경우가 가장 높고, 청소년2인과 성인 2 이상이 한 경우는 미상을 제외하고는 임시직인 경우가 많다.

3) 피해자 및 성범죄자의 특성과 성교유형

<표 40> 성교유형과 피해자 연령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연령										계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성교유형	성기 성교	1	1	14	42	87	119	146	128	31	15	584	
		100.0	100.0	87.5	87.5	81.3	78.8	80.2	80.5	75.6	65.2	80.1	
	구강 성교	-	-	-	4	3	8	5	4	1	1	26	
		-	-	-	8.3	2.8	5.3	2.7	2.5	2.4	4.3	3.6	
	항문 성교	-	-	-	-	-	2	-	-	-	-	2	
		-	-	-	-	-	1.3	-	-	-	-	.3	
	기타	-	-	-	1	1	1	4	2	-	-	9	
		-	-	-	2.1	.9	.7	2.2	1.3	-	-	1.2	
	미상	-	-	2	1	16	21	27	25	9	7	108	
		-	-	12.5	2.1	15.0	13.9	14.8	15.7	22.0	30.4	14.8	
계		1	1	16	48	107	151	182	159	41	23	7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해자가 14세를 대상으로 성교한 경우 모든 성교유형을 하고 있으나, 10세~12세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1건에 불과하나 성기성교를 하고 있을 뿐이다. 구강성교를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자 연령대는 13세이다.

<표 41> 성교유형과 피해자 교육수준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교육수준								계		
		초등 학교 재학	중학교 재학	고등 학교 재학	초등 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 학교 졸업	중퇴	고퇴			
성교 유형	성기 성교	3	132	126	1	14	1	118	85	101	581	
		60.0	81.5	84.0	50.0	87.5	33.3	80.8	83.3	72.7	80.1	
	구강 성교	-	6	1	-	-	-	5	3	11	26	
		-	3.7	.7	-	-	-	3.4	2.9	7.9	3.6	
	항문 성교	-	2	-	-	-	-	-	-	-	2	
		-	1.2	-	-	-	-	-	-	-	.3	
	기타	-	1	-	-	1	1	3	2	1	9	
		-	.6	-	-	6.3	33.3	2.1	2.0	.7	1.2	
	미상	2	21	23	1	1	1	20	12	26	107	
		40.0	13.0	15.3	50.0	6.3	33.3	13.7	11.8	18.7	14.8	
계		5	162	150	2	16	3	146	102	139	72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해자가 중학교 재학생인 경우 주로 성기성교를 당했으나 다양한 성교유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문성교는 중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2명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조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미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유형 분포를 알기는 어려웠다.

<표 42> 성교유형과 피해자직업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의 직업						계		
		무직	유동업소 아르바이트	편의점등 아르바이트	다방종업원	유동업소 종업원	기타			
성교 유형	성기 성교	278	3	3	23	20	229	9	565	
		78.8	100.0	100.0	74.2	80.0	81.2	69.2	79.6	
	구강 성교	18	-	-	1	-	6	1	26	
		5.1	-	-	3.2	-	2.1	7.7	3.7	
	항문 성교	-	-	-	-	-	2	-	2	
		-	-	-	-	-	.7	-	.3	
	기타	7	-	-	-	-	2	-	9	
		2.0	-	-	-	-	.7	-	1.3	
	미상	50	-	-	7	5	43	3	108	
		14.2	-	-	22.6	20.0	15.2	23.1	15.2	
계		353	3	3	31	25	282	13	7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해청소년이 유흥업소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3인들은 모두 성기성교를 경험한 반면에, 무직인 피해자인 경우는 구강성교를 당한 경우도 18명(5.1%)이나 되었다.

<표 43> 성교유형과 성범죄자 연령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성범죄자 연령별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성교 유형	성기 성교	271 81.4	242 78.3	55 82.1	11 91.7	6 66.7	585 80.1
	구강 성교	11 3.3	14 4.5	1 1.5	–	–	26 3.6
	항문 성교	– –	1 .3	–	–	1 11.1	2 .3
	기타	3 .9	5 1.6	1 1.5	–	–	9 1.2
	미상	48 14.4	47 15.2	10 14.9	1 8.3	2 22.2	108 14.8
	계	333 100.0	309 100.0	67 100.0	12 100.0	9 100.0	730 100.0

전체범죄자의 대다수인 80.1%는 성기성교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범죄자의 연령을 보면 50대(91.7%), 40대(82.1%), 20대 이하(81.4%), 30대(78.3%), 60대(66.7%) 순으로 성기성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성교의 경우 20대와 30대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성교유형과 범죄자의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교육수준					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미상	기타		
성교 유형	성기 성교	21 77.8	77 84.6	167 79.1	276 78.9	27 87.1	568 80.0
	구강 성교	– –	2 2.2	13 6.2	10 2.9	– –	25 3.5
	항문 성교	– –	– –	– .6	2 –	– –	2 .3
	기타	– –	2 2.2	4 1.9	3 .9	– –	9 1.3
	미상	6 22.2	10 11.0	27 12.8	59 16.9	4 12.9	106 14.9
	계	27 100.0	91 100.0	211 100.0	350 100.0	31 100.0	710 100.0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성교유형에서 성기성교를 택하는 비율은 중졸 이하가 77.8%, 고졸이 84.6%, 대졸 이상이 79.1%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구강성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성교유형과 범죄자 직업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직업									계		
		전문직	회사원	자영업	서비스 직	일용직	학생 (휴학)	공직 (공공기관 근무)	유흥 업소	무직			
성교 유형	성기 성교	8	186	90	88	26	56	16	14	92	2	578	
		88.9	81.2	81.8	77.9	76.5	75.7	84.2	82.4	80.0	50.0	79.9	
	구강 성교	-	7	2	9	-	6	-	1	1	-	26	
		-	3.1	1.8	8.0	-	8.1	-	5.9	.9	-	3.6	
	항문 성교	-	1	1	-	-	-	-	-	-	-	2	
		-	.4	.9	-	-	-	-	-	-	-	.3	
	기타	-	4	2	2	-	1	-	-	-	-	9	
		-	1.7	1.8	1.8	-	1.4	-	-	-	-	1.2	
	미상	1	31	15	14	8	11	3	2	22	1	108	
		11.1	13.5	13.6	12.4	23.5	14.9	15.8	11.8	19.1	50.0	14.9	
계		9	229	110	113	34	74	19	17	115	3	7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직업을 불문하고 대부분 성기성교를 통한 성범죄가 대부분이다. 회사원이나 자영업을 하는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도 이루어지고 있다.

<표 46> 성교유형과 가해자의 직업안정성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가해자 직업안정성					계	
		무직	정규직	임시직	미상	기타		
성교 유형	성기 성교	112	281	123	53	4	573	
		82.4	81.2	80.4	67.1	100.0	79.8	
	구강 성교	3	11	7	5	-	26	
		2.2	3.2	4.6	6.3	-	3.6	
	항문 성교	-	1	1	-	-	2	
		-	.3	.7	-	-	.3	
	기타	1	3	4	1	-	9	
		.7	.9	2.6	1.3	-	1.3	
	미상	20	50	18	20	-	108	
		14.7	14.5	11.8	25.3	-	15.0	
계		136	346	153	79	4	71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직업안정성과는 무관하게 80% 이상은 성기성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인의 경우 구강성교와 항문성교가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자 및 성범죄자의 특성과 피임기구 활용도

피해자 연령별로 볼 때 피임기구 사용여부는 진술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미상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지만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살펴보자면 전체의 16%가 질외 사정을 하였고, 13.9%가 질내 사정을 하였다. 콘돔을 사용한 경우는 단지 8%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성관계에 의한 사후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장래에는 임신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청소년교육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표 47> 피임기구 사용여부와 피해자연령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연령										계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피임 기구 사용 여부	콘돔 사용	-	-	-	7	8	10	21	6	5	1	58
		-	-	-	14.6	7.5	6.7	11.5	3.8	12.2	4.3	8.0
	질외 사정	-	-	1	7	20	24	36	20	8	-	116
		-	-	6.3	14.6	18.7	16.1	19.8	12.6	19.5	-	16.0
	질내 사정	-	-	-	8	11	28	30	18	5	1	101
		-	-	-	16.7	10.3	18.8	16.5	11.3	12.2	4.3	13.9
	사정하 지않음	-	-	1	2	7	2	9	7	-	-	28
		-	-	6.3	4.2	6.5	1.3	4.9	4.4	-	-	3.9
	미상	1	1	14	24	61	85	86	108	23	21	424
		100.0	100.0	87.5	50.0	57.0	57.0	47.3	67.9	56.1	91.3	58.3
전체											727	
	1	1	16	48	107	149	182	159	41	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8> 피임기구 사용여부와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교육수준									계		
		초등 학교 재학	중학교 재학	고등 학교 재학	초등 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 학교 졸업	중퇴	고퇴			
피임 기구 사용 여부	콘돔 사용	-	15	11	-	-	-	9	6	17	58	
		-	9.3	7.4	-	-	-	6.2	5.8	12.2	8.0	
	질외 사정	-	30	32	-	5	-	20	12	16	115	
		-	18.6	21.5	-	31.3	-	13.8	11.7	11.5	15.9	
	질내 사정	-	20	14	1	2	1	18	22	22	100	
		-	12.4	9.4	50.0	12.5	33.3	12.4	21.4	15.8	13.8	
	사정하지않음	-	7	5	-	1	-	7	4	5	29	
		-	4.3	3.4	-	6.3	-	4.8	3.9	3.6	4.0	
	미상	5	89	87	1	8	2	91	59	79	421	
		100.0	55.3	58.4	50.0	50.0	66.7	62.8	57.3	56.8	58.2	
계		5	161	149	2	16	3	145	103	139	7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질외사정이나 질내사정의 비율이 높다. 중학교 재학생의 경우 18.6%(30명)으로 질외사정을 당하고, 12.4%는 질내사정을 당하고 있어 피해 청소년의 임신 우려나 기타 상처를 입을 염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9> 피임기구 사용여부와 피해자 직업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의 직업							계		
		무직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편의점등아르바이트	다방 종업원	유흥업소 종업원	기타			
피임 기구 사용 여부	콘돔 사용	29	-	-	1	4	21	1	56	
		8.2	-	-	3.2	16.0	7.5	7.7	7.9	
	질외 사정	50	-	-	-	-	58	5	113	
		14.2	-	-	-	-	20.7	38.5	16.0	
	질내 사정	59	1	-	3	-	35	2	100	
		16.7	33.3	-	9.7	-	12.5	15.4	14.1	
	사정하지않음	12	-	-	-	1	12	2	27	
		3.4	-	-	-	4.0	4.3	15.4	3.8	
	미상	203	2	3	27	20	154	3	412	
		57.5	66.7	100.0	87.1	80.0	55.0	23.1	58.2	
계		353	3	3	31	25	280	13	7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임기구 여부와 피해자의 직업 여부는 피해청소년이 무직인 경우 다른 직업을 가진 청소년에 비해 유형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 비율을 살펴보면 범죄자가 콘돔을 사용한 경우 8.2%에 해당하고, 질외사정은 14.2%, 질내사정은 16.7%를 나타내고 있다. 사후 안정성에 있어서는 유흥업소 종업원의 콘돔사용율이 높다.

<표 50> 피임기구 사용여부와 성범죄자 연령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성범죄자 연령별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피임기구 사용여부	콘돔사용	30	24	5	–	–	59	
		9.0	7.8	7.6	–	–	8.1	
	질외사정	64	45	6	1	–	116	
		19.2	14.7	9.1	8.3	–	15.9	
	질내사정	38	50	12	2	–	102	
		11.4	16.3	18.2	16.7	–	14.0	
	사정하지 않음	13	15	1	–	–	29	
		3.9	4.9	1.5	–	–	4.0	
	미상	189	173	42	9	9	422	
		56.6	56.4	63.6	75.0	100.0	58.0	
계		334	307	66	12	9	72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범죄자 연령별로 피임기구 사용여부를 살펴보면, 젊은 층일수록 콘돔의 사용정도가 높은 반면에 40대 이상은 질내사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51> 피임기구 사용여부와 범죄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교육수준					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미상	기타		
피임기구 사용여부	콘돔사용	2	1	28	25	3	59	
		7.7	1.1	13.3	7.1	9.7	8.3	
	질외사정	3	15	36	57	3	114	
		11.5	16.3	17.1	16.3	9.7	16.1	
	질내사정	4	11	21	53	8	97	
		15.4	12.0	10.0	15.1	25.8	13.7	
	사정하지 않음	–	3	10	15	1	29	
		–	3.3	4.8	4.3	3.2	4.1	
	미상	17	62	115	200	16	410	
		65.4	67.4	54.8	57.1	51.6	57.8	
계		26	92	210	350	31	7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범죄자의 피임기구 사용여부는 범죄자의 교육수준이 210명 이상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의 범죄자만을 대상을 살펴볼 때 17.1%에 해당하는 36명이 질외사정을 하였고, 13.3%에 해당하는 28명이 콘돔을 사용하고 있어 기타 학력에 비해 콘돔의 사용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52> 피임기구 사용여부와 범죄자 직업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직업										계	
		전문직	회사원	자영업	서비스 직	일용직	학생 (휴학)	공직 (공공 기관 근무)	유흥 업소	무직	기타		
피임 기구 사용 여부	콘돔 사용	-	29	8	5	1	7	-	1	7	-	58	
		-	12.7	7.3	4.4	2.9	9.5	-	5.9	6.1	-	8.0	
	질외 사정	-	33	14	22	3	16	4	-	23	-	115	
		-	14.4	12.8	19.5	8.8	21.6	21.1	-	20.2	-	16.0	
	질내 사정	1	25	21	18	7	6	3	4	16	-	101	
		11.1	10.9	19.3	15.9	20.6	8.1	15.8	23.5	14.0	-	14.0	
	사정하 지않음	-	6	5	5	-	5	2	1	4	1	29	
		-	2.6	4.6	4.4	-	6.8	10.5	5.9	3.5	50.0	4.0	
	미상	8	136	61	63	23	40	10	11	64	2	418	
		88.9	59.4	56.0	55.8	67.6	54.1	52.6	64.7	56.1	50.0	58.0	
계		9	229	109	113	34	74	19	17	114	3	7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임기구 사용여부와 범죄자의 직업과의 관계에서 직업상 높은 비율 순으로 보면, 회사원과 학생이 콘돔의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반면에 유흥업소, 일용직, 자영업자의 경우는 질내사정이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

5) 성범죄자의 특성과 청소년인지여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청소년인지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확실히 알았다고 응답한 자는 20대 이하 227명, 30대 180명, 40대 35명으로 전체 62.5%인 반면에 알지 못하였다는 9.9%에 불과했다. 특히 청소년이 나이를 속였다고 응답한 경우도 14.8%에 달하고 있다.

<표 53> 청소년 인지여부와 성범죄자의 연령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성범죄자 연령별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청소년 인지 여부	알았음	227	180	35	6	8	456	
		68.0	58.4	52.2	50.0	88.9	62.5	
	확실히는 모르나 짐작함	35	40	5	–	–	80	
		10.5	13.0	7.5	–	–	11.0	
	청소년이나 이를 속임	40	49	17	2	–	108	
		12.0	15.9	25.4	16.7	–	14.8	
	알지 못함	26	31	10	4	1	72	
		7.8	10.1	14.9	33.3	11.1	9.9	
	진술서에 없음	6	8	–	–	–	14	
		1.8	2.6	–	–	–	1.9	
	계		334	308	67	12	9	7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4> 청소년 인지여부와 범죄자의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교육수준					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미상	기타			
청소년인지 인지여부	알았음	12	47	120	243	20	442	
		44.4	51.6	56.9	69.4	64.5	62.3	
	확실히는 모르나 짐작함	3	7	18	47	3	78	
		11.1	7.7	8.5	13.4	9.7	11.0	
	청소년이나 이를 속임	3	17	46	34	5	105	
		11.1	18.7	21.8	9.7	16.1	14.8	
	알지 못함	7	15	24	23	2	71	
		25.9	16.5	11.4	6.6	6.5	10.0	
	진술서에 없음	2	5	3	3	1	14	
		7.4	5.5	1.4	.9	3.2	2.0	
	계		27	91	211	350	31	7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범죄자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와 범죄자의 교육수준과의 관계는 62.3%인 442명이 청소년인지를 알고서도 범죄를 저질렀고, 알지 못한 채 저지른 경우는 단지 10%인 71명에 불과하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청소년성범죄는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피해자의 특성과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

<표 55>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과 피해자의 연령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연령										계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	인터넷	-	1	13	43	93	135	157	124	29	5	600	
		-	100	81.3	89.6	86.9	88.8	85.8	78.0	70.7	21.7	82.1	
	전화방	-	-	1	1	2	1	1	1	-	1	8	
		-	-	6.3	2.1	1.9	.7	.5	.6	-	4.3	1.1	
	이동통신	-	-	-	-	1	-	2	-	1	-	4	
		-	-	-	-	.9	-	1.1	-	2.4	-	.5	
	거리 헌팅	-	-	1	2	-	4	2	1	1	-	11	
		-	-	6.3	4.2	-	2.6	1.1	.6	2.4	-	1.5	
	아는사람 소개	1	-	-	-	5	5	8	6	-	-	25	
		100.0	-	-	-	4.7	3.3	4.4	3.8	-	-	3.4	
	업소	-	-	-	-	2	3	7	20	8	16	56	
		-	-	-	-	1.9	2.0	3.8	12.6	19.5	69.6	7.7	
	기타	-	-	1	2	4	4	6	7	2	1	27	
		-	-	6.3	4.2	3.7	2.6	3.3	4.4	4.9	4.3	3.7	
계		1	1	16	48	107	152	183	159	41	23	7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과 피해자의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11세부터 16세 까지의 피해자는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범죄자와 피해자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7세 피해자의 경우는 인터넷이 78%, 업소가 12.6%, 아는 사람 소개가 3.8%로 나타났다. 한편 18세 피해자의 경우는 인터넷이 70.7%, 업소가 19.5%로 나타났으며, 19세 피해자의 경우는 업소의 비율(69.6%)이 인터넷의 비율(21.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성범죄가 인터넷 등 개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18세와 19세의 경우는 윤락행위를 목시적인 직업으

로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6>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과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교육수준									계		
	초등학교 재학	중학교 재학	고등학교 재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중퇴	고퇴	미상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	인터넷	1	137	130	2	12	2	128	92	92	596	
		20.0	84.6	86.7	100.0	75.0	66.7	87.1	89.3	66.2	82.0	
	전화방	1	4	1					2		8	
		20.0	2.5	.7					1.9		1.1	
	이동통신							1	2	1	4	
								.7	1.9	.7	.6	
	거리현팅		5	2				2	1	1	11	
			3.1	1.3				1.4	1.0	.7	1.5	
	아는 사람 소개	2	7	9				3	3	2	26	
		40.0	4.3	6.0				2.0	2.9	1.4	3.6	
	업소 (유통업소)		2	2		4		8	2	37	55	
			1.2	1.3		25.0		5.4	1.9	26.6	7.6	
	기타	1	7	6			1	5	1	6	27	
		20.0	4.3	4.0			33.3	3.4	1.0	4.3	3.7	
계		5	162	150	2	16	3	147	103	139	7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과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인터넷이 84.6%, 아는 사람 소개가 4.3%, 거리 현팅이 3.1%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인터넷이 86.7%, 아는 사람 소개가 6%, 거리 현팅과 업소가 각각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중퇴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이 87.1%, 업소가 5.4%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중퇴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이 89.3%, 아는 사람 소개가 2.9%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57>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과 피해자 직업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무직	피해자의 직업						계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편의점등아 르바이트	다방 종업원	유흥업소 종업원	기타	미상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	인터넷	320	2	3	-	8	243	11	587	
		90.1	66.7	100.0	-	32.0	86.2	84.6	82.4	
	전화방	3	-	-	-	-	4	-	7	
		.8	-	-	-	-	1.4	-	1.0	
	이동통신	3	-	-	-	-	-	1	4	
		.8	-	-	-	-	-	7.7	.6	
	거리한팅	4	-	-	-	-	7	-	11	
		1.1	-	-	-	-	2.5	-	1.5	
	아는 사람 소개	12	-	-	-	-	12	-	24	
		3.4	-	-	-	-	4.3	-	3.4	
	업소 (유흥업소)	6	-	-	26	16	5	1	54	
		1.7	-	-	83.9	64.0	1.8	7.7	7.6	
	기타	7	1	-	5	1	11	-	25	
		2.0	33.3	-	16.1	4.0	3.9	-	3.5	
계		355	3	3	31	25	282	13	7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과 피해자 직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접촉이 9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방종업원과 유흥업소 종업원의 경우에는, 업소가 각각 83.9%, 64%를 차지하여 인터넷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밖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는 3명 모두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전체 성범죄 피해청소년 중 10%이내의 효과만을 발휘하고 있으며, 나머지 90%에 대해서도 보다 효과적인 단속과 지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58>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과 성범죄자 연령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성범죄자 연령별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	인터넷	312	249	39	1	2	603	
		93.4	80.6	57.4	8.3	22.2	82.4	
	전화방	2	3	2	1	-	8	
		.6	1.0	2.9	8.3	-	1.1	
	이동통신	2	1	1	-	-	4	
		.6	.3	1.5	-	-	.5	
	거리현팅	1	6	1	1	2	11	
		.3	1.9	1.5	8.3	22.2	1.5	
	아는 사람 소개	9	15	2	-	-	26	
		2.7	4.9	2.9	-	-	3.6	
	업소 (유품업소)	3	28	16	5	1	53	
		.9	9.1	23.5	41.7	11.1	7.2	
	기타	5	7	7	4	4	27	
		1.5	2.3	10.3	33.3	44.4	3.7	
계		334	309	68	12	9	73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과 성범죄자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20대 이하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93.4%, 30대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80.6%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0대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례가 57.4%, 업소를 통한 사례가 23.5%로 나타났고, 50대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업소를 이용한 사례가 41.7%, 인터넷, 전화방, 거리 현팅을 통한 경우가 각각 9.3%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인터넷을 통한 접촉 사례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9>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과 범죄자의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교육수준					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미상	기타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	인터넷	11	75	187	294	18	585	
		40.7	80.6	89.0	83.8	58.1	82.2	
	전화방	1	-	1	5	1	8	
		3.7	-	.5	1.4	3.2	1.1	
	이동통신	-	-	1	3	-	4	
		-	-	.5	.9	-	.6	
	거리현팅	2	1	-	8	-	11	
		7.4	1.1	-	2.3	-	1.5	
	아는 사람 소개	-	2	5	17	2	26	
		-	2.2	2.4	4.8	6.5	3.7	
	업소 (유통업소)	8	11	12	16	6	53	
		29.6	11.8	5.7	4.6	19.4	7.4	
	기타	5	4	4	8	4	25	
		18.5	4.3	1.9	2.3	12.9	3.5	
계		27	93	210	351	31	7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과 범죄자의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 범죄자의 경우 인터넷이 40.7%, 업소가 29.6%의 비율을 보였으며, 고졸 범죄자의 경우 인터넷이 80.6%, 업소가 11.8%의 비율을 보였으며, 대졸 이상 범죄자의 경우 인터넷이 89%, 업소가 5.7%의 비율을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업소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접촉하는 경우가 잦음을 알 수 있었다.

7) 성범죄자의 특성과 성매매 업소형태

<표60> 성매매업소의 형태와 성범죄자 연령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성범죄자 연령별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성매매업소 형태	단란주점	3	3	-	-	6	
		10.7	12.0	-	-	8.7	
	티켓다방	16	20	10	3	49	
		57.1	80.0	100.0	50.0	71.0	
	전화방	1	-	-	-	1	
		3.6	-	-	-	1.4	
	여관	1	-	-	1	2	
		3.6	-	-	16.7	2.9	
	보도방	1	1	-	-	2	
		3.6	4.0	-	-	2.9	
	기타	6	1	-	2	9	
		21.4	4.0	-	33.3	13.0	
계		28	25	10	6	69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매매업소의 형태와 성범죄자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20대 이하 범죄자의 경우 티켓다방이 57.1%, 단란주점이 10.6%로 나타났으며, 30대 범죄자의 경우에는 티켓다방이 80%, 단란주점이 12%로 나타났다. 40대 범죄자의 경우에는 10명 모두가 티켓다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으며, 50대 범죄자의 경우에는 티켓다방이 50%, 여관이 16.7%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61> 성매매업소의 형태와 범죄자의 직업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직업						계	
		회사원	자영업	서비스직	학생 (휴학생)	유통업소	무직		
성매매업 소형태	단란주점	1	-	-	1	4	-	6	
		50.0	-	-	100.0	12.5	-	8.7	
	티켓다방	1	10	2	-	25	11	49	
		50.0	76.9	100.0	-	78.1	57.9	71.0	
	전화방	-	-	-	-	-	1	1	
		-	-	-	-	-	5.3	1.4	
	여관	-	1	-	-	-	1	2	
		-	7.7	-	-	-	5.3	2.9	
	보도방	-	1	-	-	1	-	2	
		-	7.7	-	-	3.1	-	2.9	
	기타	-	1	-	-	2	6	9	
		-	7.7	-	-	6.3	31.6	13.0	
계		2	13	2	1	32	19	6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매매업소의 형태와 범죄자의 직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영업을 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티켓다방이 76.7%, 여관과 보도방이 각각 7.7%의 비율을 보였으며, 유통업을 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티켓다방이 78.1%, 단란주점이 12.5%의 비율을 보였다. 직업이 없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티켓다방이 57.9%, 전화방과 여관이 각각 5.3%의 비율을 보였다.

<표 62> 성매매업소의 형태와 가해자 직업안정성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가해자 직업안정성				계	
		무직	정규직	임시직	미상		
성매매업 소형태	단란주점	-	3	2	1	6	
		-	9.7	15.4	33.3	9.0	
	티켓다방	12	25	9	1	47	
		60.0	80.6	69.2	33.3	70.1	
	전화방	1	-	-	-	1	
		5.0	-	-	-	1.5	
	여관	1	1	-	-	2	
		5.0	3.2	-	-	3.0	
	보도방	-	1	1	-	2	
		-	3.2	7.7	-	3.0	
	기타	6	1	1	1	9	
		30.0	3.2	7.7	33.3	13.4	
계		20	31	13	3	67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매매업소의 형태와 가해자 직업안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무직 가해자의 경우에는 티켓다방이 60%, 전화방과 여관이 각각 5%를 차지하였으며, 임시직 가해자의 경우에는 티켓다방이 69.2%, 단란주점이 15.4%, 보도방이 7.7%를 나타내었으며, 정규직 가해자의 경우에는 티켓다방이 80.6%, 단란주점이 9.7%인 것으로 나타나, 직업이 안정적일수록 티켓다방의 비율이 점차 높아짐을 파악할 수 있다.

8) 성범죄자의 특성과 가해자의 역할

업소에서 가해자의 역할과 범죄자의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범죄자가 고졸인 경우에는 업주(사장)인 경우가 83.3%, 관리자(마담, 웨이터)인 경우가 16.7%로 나타났다. 그밖에 중졸 이하 범죄자인 경우에는 업주인 경우가 50%, 대졸 이상 범죄자의 경우에는 업주인 경우가 50%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업주인 경우가 8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관리자, 카맨/오토맨 순이었다.

<표 63> 업소에서 가해자의 역할과 범죄자의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업주(사장)	교육수준				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미상		
업소에서 가해자의 역할	업주(사장)	1	5	1	48	55	
		50.0	83.3	50.0	85.7	83.3	
	관리자 (마담, 웨이터)	-	1	-	2	3	
		-	16.7	-	3.6	4.5	
	카맨/오토맨	-	-	-	1	1	
		-	-	-	1.8	1.5	
	기타	1	-	1	5	7	
		50.0	-	50.0	8.9	10.6	
계		2	6	2	56	66	
		100.0	100.0	100.0	100.0	100.0	

9) 피해자의 특성과 성매매업소의 고용조건

<표 64> 성매매업소의 고용조건과 피해자연령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연령							계
	12세	13세	14세	16세	17세	18세	19세	
성매매업소의 고용조건 (노동시간)	9시간에서 12시간	-	-	-	2	1	1	- 4
		-	-	-	14.3	4.5	5.6	- 6.2
	13시간에서 15시간	-	3	1	4	5	6	- 19
		-	75.0	33.3	28.6	22.7	33.3	- 29.2
	15시간 이상	-	-	-	1	4	2	- 8
		-	-	-	7.1	18.2	11.1	33.3 12.3
	미상	1	1	2	7	12	9	- 34
		100.0	25.0	66.7	50.0	54.5	50.0	66.7 52.3
계	1	4	3	14	22	18	3	6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매매업소의 고용조건과 피해자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13세인 피해자의 경우 13~15시간이 75%, 14세인 피해자의 경우 13~15시간이 33.3%로 나타났다. 16세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13~15시간(28.6%), 9~12시간(14.3%), 15시간 이상(7.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7세 피해자의 경우에는 13~15시간(22.7%), 15시간 이상(18.2%), 9~12시간(4.5%)으로 나타났으며, 18세 피해자의 경우에는 13~15시간(33.3%), 15시간 이상(11.1%), 9~12시간(5.6%)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업소고용 청소년들의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표 65> 성매매업소의 고용조건과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교육수준						전체
	중학교 재학	고등학교 재학	중학교 졸업	중퇴	고퇴	미상	
성매매업소의 고용조건 (노동시간)	9시간에서 12시간	-	-	-	-	1	3 4
		-	-	-	-	20.0	8.6 6.2
	13시간에서 15시간	4	-	-	6	-	9 19
		50.0	-	-	54.5	-	25.7 29.2
	15시간 이상	1	1	1	-	-	6 9
		12.5	20.0	100.0	-	-	17.1 13.8
	미상	3	4	-	5	4	17 33
		37.5	80.0	-	45.5	80.0	48.6 50.8
전체	8	5	1	11	5	35	6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매매업소의 고용조건과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학생 피해자의 경우 13~15시간이 50%, 15시간 이상이 12.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를 중퇴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54.5%가 13시간~15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고등학생 피해자의 경우에는 20%가 15시간 이상, 나머지는 노동시간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고등학교를 중퇴한 피해자의 경우 역시 20%가 9~12시간, 나머지는 노동시간을 파악할 수 없었다.

5. 피해청소년의 특성과 피해청소년행동

1) 피해자의 특성과 성관계 경험

<표 66>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경험유무와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교육수준									계	
		초등학교 재학	중학교 재학	고등학교 재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중퇴	고퇴	미상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경험	없다	-	23	15	-	-	1	12	5	9	65	
		-	14.2	10.3	-	-	33.3	8.3	4.9	6.5	9.0	
	있다	5	95	80	-	12	1	96	64	82	435	
		100.0	58.6	54.8	-	75.0	33.3	66.7	62.7	59.0	60.5	
	미상	-	44	51	2	4	1	36	33	48	219	
		-	27.2	34.9	100.0	25.0	33.3	25.0	32.4	34.5	30.5	
계		5	162	146	2	16	3	144	102	139	71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경험 유무와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전부가 과거 성관계 경험이 있었으며, 중학교 재학생과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졸업한 피해자의 경우는 75%가 과거 성관계 경험이 있었으며, 중학교를 중퇴한 피해자의 경우는 2/3 정도가 과거 성관계 경험이 있었으며, 고등학교를 중퇴한 피해자의 경우도 경험이 있는 경우가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과 관계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표 67>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경험유무와 직업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의 직업							계	
		무직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다방 종업원	유흥업소 종업원	기타	미상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경험	없다	26	-	-	1	-	35	-	62	
		7.4	-	-	3.2	-	12.6	-	8.8	
	있다	220	3	2	19	24	153	6	427	
		62.7	100.0	66.7	61.3	96.0	55.0	46.2	60.7	
	미상	105	-	1	11	1	90	7	215	
		29.9	-	33.3	35.5	4.0	32.4	53.8	30.5	
계		351	3	3	31	25	278	13	7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경험 유무와 직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업이 없는 피해자는 과거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가 62.7%를 차지하였으며,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는 3명 모두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방종업원인 피해자의 경우는 성관계 경험이 있었던 예가 61.3%로 달하였으며,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96%)이 성관계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 68>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경험유무와 청소년 가출여부와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청소년 가출여부			계	
		가출	미가출	미상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경험	없다	20	33	9	62	
		6.8	10.8	7.5	8.6	
	있다	208	174	57	439	
		70.5	56.9	47.5	60.9	
	미상	67	99	54	220	
		22.7	32.4	45.0	30.5	
계		295	306	120	721	
		100.0	100.0	100.0	100.0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경험 유무와 청소년 가출 여부를 살펴보면, 가출청소년의 70.5%가 미가출 청소년의 56.9%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의 가출이 성관계를 높이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은 가출여부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피해자의 특성과 성폭력 피해경험

<표 69>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경험유무와 피해자연령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연령										계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경험	없다	1	-	1	9	22	38	28	22	11	4	136	
		100.0	-	6.3	18.8	20.6	24.8	15.5	13.8	26.8	17.4	18.6	
	있다	-	1	10	4	11	7	5	-	1	1	40	
		-	100.0	62.5	8.3	10.3	4.6	2.8	-	2.4	4.3	5.5	
	미상	-	-	5	35	74	108	148	137	29	18	554	
		-	-	31.3	72.9	69.2	70.6	81.8	86.2	70.7	78.3	75.9	
계		1	1	16	48	107	153	181	159	41	23	7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경험 유무와 피해자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12세인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었던 사례가 62.5%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13세인 피해자는 피해경험이 없었던 경우가 18.8%, 있었던 경우가 8.3%로 나타났다. 14세인 피해자는 피해경험이 없었던 경우가 있었던 경우보다 약 2배 많은 수치를 보였다.

<표 70>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경험 유무와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교육수준									계	
		초등학교 재학	중학교 재학	고등학교 재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중퇴	고퇴	미상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경험	없다	1	44	20	-	3	1	30	14	22	135	
		20.0	27.0	13.4	-	18.8	33.3	20.4	13.6	15.6	18.5	
	있다	2	24	3	-	1	1	4	-	5	40	
		40.0	14.7	2.0	-	6.3	33.3	2.7	-	3.5	5.5	
	미상	2	95	126	2	12	1	113	89	114	554	
		40.0	58.3	84.6	100.0	75.0	33.3	76.9	86.4	80.9	76.0	
계		5	163	149	2	16	3	147	103	141	7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경험 유무와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학교 재학 중인 피해자는 피해경험이 없었던 경우가 27%, 있었던 경우가 14.7%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피해자는 피해경험이 없었던 경우가 13.4%, 있었던 경우가 2%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를 중퇴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20.4%가 피해경험이 없으며, 2.7%만이 피해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피해자의 성폭력피해경험 유무와 청소년 가출여부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청소년 가출여부			계	
		가출	미가출	미상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경험	없다	50	58	26	134	
		16.7	18.8	21.3	18.4	
	있다	34	5	2	41	
		11.3	1.6	1.6	5.6	
	미상	216	245	94	555	
		72.0	79.5	77.0	76.0	
계		300	308	122	730	
		100.0	100.0	100.0	100.0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경험 유무와 청소년 가출 여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가출의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경험이 11.3%로 미가출청소년 1.6%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출청소년이 성폭력을 피할 방안이 거의 없음을 의미하며, 정책적으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3) 피해자의 특성과 성매매 형태

피해자의 성매매 형태와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12세 피해자의 경우 개인형 성매매 형태가 87.5%를 차지하였으며, 13세~17세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형 성매매 형태가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8세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성매매 형태가 개인형인 사례가 80.5%, 업소형인 사례가 19.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9세 피해자의 경우에만 유독 업소형인 사례가 69.6%나 되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성매매가 직업으로 고착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2> 피해자의 성매매형태와 연령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연령										계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피해자의 성매매 형태	개인형	1	1	14	48	104	145	172	144	33	7	669	
		100.0	100.0	87.5	100.0	97.2	94.2	94.0	90.0	80.5	30.4	91.1	
	업소형 (보도방, 전화방)	-	-	1	-	3	3	6	15	8	16	52	
		-	-	6.3	-	2.8	1.9	3.3	9.4	19.5	69.6	7.1	
	기타	-	-	1	-	-	6	5	1	-	-	13	
		-	-	6.3	-	-	3.8	2.7	.6	-	-	1.8	
	계		1	1	16	48	107	154	183	160	41	23	73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해자의 성매매형태와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학교 재학 중인 피해자의 경우 성매매형태가 개인형인 사례가 96.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98%가 개인형 성매매형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대상자가 적기는 하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피해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전부 개인형 성매매형태였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의 경우에도 모두 90% 이상이 개인형 성매매형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피해자의 성매매형태와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교육수준									계	
		초등학교 재학	중학교 재학	고등학교 재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중퇴	고퇴	미상		
피해자의 성매매 형태	개인형	4	157	147	2	15	3	138	99	102	667	
		80.0	96.3	98.0	100.0	93.8	100.0	93.9	96.1	72.3	91.4	
	업소형 (보도방, 전화방)	1	4	2	-	1	-	9	1	34	52	
		20.0	2.5	1.3	-	6.3	-	6.1	1.0	24.1	7.1	
	기타	-	2	1	-	-	-	-	3	5	11	
		-	1.2	.7	-	-	-	-	2.9	3.5	1.5	
	계		5	163	150	2	16	3	147	103	141	7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74> 피해자의 성매매형태와 직업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의 직업							계	
		무직	유풍업소 아르바이트	편의점등 아르바이트	다방 종업원	유풍업소 종업원	기타	미상		
피해자의 성매매 형태	개인형	343	3	3	9	9	276	12	655	
		96.1	100.0	100.0	29.0	36.0	97.5	92.3	91.6	
	업소형 (보도방, 전화방)	6	-	-	21	16	6	1	50	
		1.7	-	-	67.7	64.0	2.1	7.7	7.0	
	기타	8	-	-	1	-	1	-	10	
		2.2	-	-	3.2	-	.4	-	1.4	
계		357	3	3	31	25	283	13	7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해자의 성매매형태와 직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개인형 성매매형태였던 사례가 96.1%를 차지하였으며, 유풍업소 및 편의점 아르바이트 피해자의 경우에는 전부가 개인형 성매매형태를 보였다. 다만 유풍시설인 다방과 유풍업소의 종업원인 경우에는 업소형 성매매가 각각 67.7%, 64%로 높았다.

<표 75> 피해자의 성매매형태와 청소년 가출여부와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청소년 가출여부			계	
		가출	미가출	미상		
피해자의 성매매 형태	개인형	276	287	106	669	
		91.7	92.9	86.9	91.4	
	업소형 (보도방, 전화방등)	17	20	15	52	
		5.6	6.5	12.3	7.1	
	기타	8	2	1	11	
		2.7	.6	.8	1.5	
계		301	309	122	732	
		100.0	100.0	100.0	100.0	

피해자의 성매매형태와 청소년 가출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가출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성매매형태가 개인형이었던 비율이 9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출 경험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성매매형태가 개인형이었던 비율이

92.9%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성매매형태와 청소년 가출여부는 큰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자의 특성과 청소년의 기타피해

<표 76> 청소년의 기타 피해사항과 연령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계	
청소년의 기타 피해사항	다른 피해 없음	1	-	10	34	69	128	135	125	24	21	547
		100.0	-	62.5	70.8	65.7	83.1	73.8	78.6	58.5	91.3	74.8
	폭행	-	-	-	-	1	-	-	1	3	-	5
		-	-	-	-	1.0	-	-	.6	7.3	-	.7
	폭언	-	-	-	-	-	-	3	2	1	-	6
		-	-	-	-	-	-	1.6	1.3	2.4	-	.8
	절도	-	-	-	2	1	-	1	-	1	-	5
		-	-	-	4.2	1.0	-	.5	-	2.4	-	.7
	협박이나 위협	-	-	2	-	2	-	3	4	-	-	11
		-	-	12.5	-	1.9	-	1.6	2.5	-	-	1.5
	약속한 대가 못받음	-	1	1	9	18	13	19	17	7	-	85
		-	100.0	6.3	18.8	17.1	8.4	10.4	10.7	17.1	-	11.6
	대가 전혀 못받음	-	-	1	2	7	10	14	8	1	1	44
		-	-	6.3	4.2	6.7	6.5	7.7	5.0	2.4	4.3	6.0
	기타	-	-	-	1	5	3	1	1	4	1	16
		-	-	-	2.1	4.8	1.9	.5	.6	9.8	4.3	2.2
	미상	-	-	2	-	2	-	7	1	-	-	12
		-	-	12.5	-	1.9	-	3.8	.6	-	-	1.6
계	1	1	16	48	105	154	183	159	41	23	7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의 기타 피해사항과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다른 피해사항이 없었는데, 피해사항이 있었던 경우만을 골라본다면, 13세 피해자의 경우 약속한 대가를 못 받은 사례가 18.8%로 가장 많았고, 대가를 전혀 못 받은 경우와 절도의 경우가 각각 4.2%로 나타났다. 14세 피해자의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를 못 받은 사례가 17.1%, 전혀 못 받은 사례가 6.7%로 나타났으며, 15세 피해자의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를 못 받은 사례와 전혀 못 받은 사례가 8.4%, 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약속한 대가를 못 받은 사례가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 청소년의 기타 피해사항과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교육수준									계		
	초등 학교 재학	중학교 재학	고등 학교 재학	초등 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 학교 졸업	중퇴	고퇴	미상			
청소년의 기타피해 사항	다른 피해 없음	5	116	107	1	13	-	116	79	106	543	
		100.0	71.6	71.3	50.0	81.3	-	79.5	76.7	75.7	74.7	
	폭행	-	-	-	-	-	2	1	2	5		
		-	-	-	-	-	1.4	1.0	1.4	.7		
	폭언	-	-	1	-	1	-	1	1	2	6	
		-	-	.7	-	6.3	-	.7	1.0	1.4	.8	
	절도	-	-	2	-	-	-	1	-	2	5	
		-	-	1.3	-	-	-	.7	-	1.4	.7	
	협박이나 위협	-	2	3	-	1	1	2	-	2	11	
		-	1.2	2.0	-	6.3	33.3	1.4	-	1.4	1.5	
	약속한 대가 못받음	-	23	17	-	-	1	18	17	10	86	
		-	14.2	11.3	-	-	33.3	12.3	16.5	7.1	11.8	
	대가 전혀 못받음	-	11	15	1	1	-	6	4	5	43	
		-	6.8	10.0	50.0	6.3	-	4.1	3.9	3.6	5.9	
	기타	-	8	3	-	-	1	-	1	3	16	
		-	4.9	2.0	-	-	33.3	-	1.0	2.1	2.2	
	미상	-	2	2	-	-	-	-	-	8	12	
		-	1.2	1.3	-	-	-	-	-	5.7	1.7	
계		5	162	150	2	16	3	146	103	140	7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의 기타 피해사항과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전부가 다른 피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약속한 대가를 못 받은 경우 및 전혀 못 받은 경우가 각각 14.2%, 6.8%,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를 못 받은 경우 및 전혀 못 받은 경우가 각각 11.3%,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중퇴한 피해자 역시 약속한 대가를 못 받은 경우가 12.3%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를 중퇴한 피해자도 약속한 대가를 못 받은 경우가 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8> 청소년의 기타 피해사항과 직업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의 직업							계		
	무직	유흥업소 아르 바이트	편의점등 아르 바이트	다방 종업원	유흥업소 종업원	기타	미상			
청소년의 기타피해 사항	다른 피해 없음	270	1	3	23	25	201	11	534	
		75.8	33.3	100.0	74.2	100.0	71.3	84.6	74.9	
	폭행	3	-	-	1	-	1	-	5	
		.8	-	-	3.2	-	.4	-	.7	
	폭언	4	-	-	-	-	2	-	6	
		1.1	-	-	-	-	.7	-	.8	
	절도	3	-	-	-	-	2	-	5	
		.8	-	-	-	-	.7	-	.7	
	협박이나 위협	4	-	-	2	-	5	-	11	
		1.1	-	-	6.5	-	1.8	-	1.5	
	약속한 대가 못받음	42	-	-	2	-	37	1	82	
		11.8	-	-	6.5	-	13.1	7.7	11.5	
	대가 전혀 못받음	18	2	-	1	-	22	-	43	
		5.1	66.7	-	3.2	-	7.8	-	6.0	
	기타	4	-	-	1	-	10	-	15	
		1.1	-	-	3.2	-	3.5	-	2.1	
	미상	8	-	-	1	-	2	1	12	
		2.2	-	-	3.2	-	.7	7.7	1.7	
계		356	3	3	31	25	282	13	7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의 기타 피해사항과 직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와 유흥업소 종업원의 경우에는 모두 다른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었다. 한편 유흥업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3명 중 2명이 대가를 전혀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방종업원의 경우 약속한 대가를 못 받은 경우와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경우가 각각 6.5%로 나타났다.

<표 79> 청소년의 기타 피해사항과 청소년가출여부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청소년 가출여부			계	
		가출	미가출	미상		
청소년의 기타피해사항	다른 피해 없음	234	234	77	545	
		77.7	76.2	63.6	74.8	
	폭행	1	1	3	5	
		.3	.3	2.5	.7	
	폭언	3	1	2	6	
		1.0	.3	1.7	.8	
	절도	3	1	1	5	
		1.0	.3	.8	.7	
	협박이나 위협	4	5	2	11	
		1.3	1.6	1.7	1.5	
	약속한 대가 못받음	32	38	16	86	
		10.6	12.4	13.2	11.8	
	대가 전혀 못받음	15	17	11	43	
		5.0	5.5	9.1	5.9	
	기타	2	9	5	16	
		.7	2.9	4.1	2.2	
	미상	7	1	4	12	
		2.3	.3	3.3	1.6	
계		301	307	121	729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의 기타 피해사항과 청소년 가출 여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가출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 있어서는, 다른 피해가 없었던 경우가 77.7%, 약속한 대가를 못 받은 경우가 10.6%, 대가를 전혀 못 받은 경우가 5%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가출 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다른 피해가 없었던 경우가 76.2%, 약속한 대가를 못 받은 경우가 12.4%, 대가를 전혀 못 받은 경우가 5.5%인 것으로 드러났다.

5) 피해자의 특성과 청소년의 범죄자처벌 의견

<표 80> 피해청소년의 범죄자 처벌의견과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교육수준										계		
		미 취학	초등 학교 재학	중학교 재학	고등 학교 재학	대학교 재학	초등 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 학교 졸업	중퇴	고퇴			
피해 청소년의 범죄자 처벌 의견	처벌 원함	44	168	118	113	3	2	6	9	26	24	85	598	
		84.6	81.6	45.0	44.5	100.0	66.7	37.5	90.0	16.5	20.9	41.1	46.5	
	처벌 원하지 않음	4	12	9	12	—	—	—	1	6	2	8	54	
		7.7	5.8	3.4	4.7	—	—	—	10.0	3.8	1.7	3.9	4.2	
	미상	4	26	135	129	—	1	10	—	126	89	114	634	
		7.7	12.6	51.5	50.8	—	33.3	62.5	—	79.7	77.4	55.1	49.3	
계		52	206	262	254	3	3	16	10	158	115	207	128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해청소년의 범죄자 처벌의견과 교육수준의 관계를 살펴보면, 미취학 피해자의 경우 84.6%, 초등학생 피해자의 경우 81.6%, 대학생 피해자의 경우 100%, 고졸 피해자의 경우 90%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중학생 피해자의 경우는 처벌을 원하는 사례가 45%, 원치 않는 사례가 3.4%, 고등학생 피해자의 경우는 처벌을 원하는 사례가 44.5%, 원치 않는 사례가 4.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 피해청소년의 범죄자 처벌의견과 가출여부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청소년 가출여부			계	
		가출	미가출	미상		
피해청소년의 범죄자 처벌의견	처벌 원함	82	441	72	595	
		24.6	57.3	39.6	46.3	
	처벌 원하지 않음	10	37	7	54	
		3.0	4.8	3.8	4.2	
	미상	242	292	103	637	
		72.5	37.9	56.6	49.5	
계		334	770	182	1286	
		100.0	100.0	100.0	100.0	

피해청소년의 범죄자 처벌의견과 가출 여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가출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처벌을 원한 사례가 24.6%,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례가 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가출 경험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처벌을 원한 사례가 57.3%,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례가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6) 피해자의 특성과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

<표 82> 가해자와의 합의여부와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교육수준										계		
		미 취학	초등 학교 재학	중 학교 재학	고등 학교 재학	대 학교 재학	초등 학교 졸업	중 학교 졸업	고등 학교 졸업	중퇴	고퇴			
가해자와 의 합의 여부	합의하지 않음	43	143	154	137	2	1	8	9	78	56	94	725	
		82.7	69.1	58.8	54.2	66.7	33.3	47.1	90.0	49.7	48.7	45.9	56.5	
	합의함	6	37	17	21	-	-	-	-	3	2	18	104	
		11.5	17.9	6.5	8.3	-	-	-	-	1.9	1.7	8.8	8.1	
	미상	3	27	91	95	1	2	9	1	76	57	93	455	
		5.8	13.0	34.7	37.5	33.3	66.7	52.9	10.0	48.4	49.6	45.4	35.4	
계		52	207	262	253	3	3	17	10	157	115	205	12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미취학 피해자의 경우 82.7%가 합의를 하지 않았고 11.5%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 피해자의 경우 69.1%가 합의하지 않았고 17.9%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생 피해자의 경우에는 합의한 경우와 합의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6.5%, 58.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 피해자의 경우에는 합의한 경우와 합의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8.3%, 5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중퇴 및 고등학교 중퇴 피해자의 경우에도 거의 50%가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의를 한 사례는 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가해자와의 합의여부와 피해자 직업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의 직업						계	
		무직	유홍업소 아르바이트	편의점등 아르바이트	다방 종업원	유홍업소 종업원	기타		
가해자와의 합의여부	합의하지 않음	227	1	1	17	2	431	22 701	
		50.2	33.3	25.0	38.6	7.7	65.4	44.0 56.6	
	합의함	16			5		70	8 99	
		3.5			11.4		10.6	16.0 8.0	
	미상	209	2	3	22	24	158	20 438	
		46.2	66.7	75.0	50.0	92.3	24.0	40.0 35.4	
계		452	3	4	44	26	659	50 123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자 직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합의하지 않은 사례가 50.2%, 합의한 사례가 3.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방종업원의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은 사례가 38.6%, 합의한 사례가 11.4%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홍업소 종업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

<표 84> 가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청소년 가출여부와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청소년 가출여부			계	
		가출	미가출	미상		
가해자와의 합의여부	합의하지 않음	149	478	93	720	
		44.9	62.2	51.1	56.1	
	합의함	3	84	17	104	
		.9	10.9	9.3	8.1	
	미상	180	207	72	459	
		54.2	26.9	39.6	35.8	
계		332	769	182	1283	
		100.0	100.0	100.0	100.0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청소년 가출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가출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사례가 44.9%이었고, 합의한 것으로 드러난 사례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가출 경험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사례가 62.2%이었고, 합의한 것으로 드러난 사례는 10.9%인 것으로 나타나, 가출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 비해 합의한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7) 피해자의 특성과 경찰신고여부

<표 85> 경찰신고여부와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교육수준										계		
		미 취학	초등 학교 재학	중 학교 재학	고등 학교 재학	대 학교 재학	초등 학교 졸업	중 학교 졸업	고등 학교 졸업	중퇴	고퇴			
경찰 신고 여부	미신고	1	7	38	26	–	–	1	–	41	27	45	186	
		2.0	3.4	14.7	10.3	–	–	5.9	–	26.3	23.5	22.1	14.6	
	신고	44	163	99	95	3	1	3	8	20	10	58	504	
		86.3	80.3	38.4	37.7	100.0	33.3	17.6	80.0	12.8	8.7	28.4	39.6	
	미상	6	33	121	131	–	–	13	2	95	78	101	582	
		11.8	16.3	46.9	52.0	–	–	76.5	20.0	60.9	67.9	49.6	45.8	
계		51	203	258	252	3	3	17	10	156	115	204	127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찰신고 여부와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미취학 피해자의 경우 86.3%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80.3%가 신고한 것으로 3.4%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38.4%가 신고, 14.7%가 미신고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37.7%가 신고, 10.3%가 미신고로 드러났다. 중학교를 중퇴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26.3%가 신고하지 않았고, 12.8%가 신고하였으며, 고등학교를 중퇴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23.5%가 신고하지 않았고 8.7%만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피해자의 경우 미신고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6> 경찰신고여부와 청소년 가출여부와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청소년 가출여부			계	
		가출	미가출	미상		
경찰신고 여부	미신고	64	88	34	186	
		19.7	11.5	18.6	14.6	
	신고	52	403	47	502	
		16.0	52.8	25.7	39.5	
	미상	209	272	102	583	
		64.3	35.6	55.8	45.9	
계		325	763	183	1271	
		100.0	100.0	100.0	100.0	

경찰신고 여부와 청소년 가출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가출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가 16%,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19.7%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소년 가출 경험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가 52.5%,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가출 청소년의 경우 부모, 학교 등 주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가출청소년의 경우 그러한 도움 없이 혼자 결정하게 됨으로써 경찰신고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8) 피해자의 특성과 성매매이유

<표 87> 청소년 성매매이유와 연령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연령										계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청소년 성매매 이유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	1	-	5	19	63	80	100	83	20	2	373
	100.0	-	31.3	39.6	59.4	52.3	54.9	53.2	50.0	8.7	51.4	
	부채해결	-	-	-	-	1	-	-	4	1	-	6
	-	-	-	-	.9	-	-	2.6	2.5	-	.8	
	물건구매	-	-	-	1	5	7	10	6	2	-	31
	-	-	-	2.1	4.7	4.6	5.5	3.8	5.0	-	4.3	
	생계비 마련	-	-	-	6	3	7	6	15	4	19	60
	-	-	-	12.5	2.8	4.6	3.3	9.6	10.0	82.6	8.3	
	숙식해결	-	1	10	17	19	32	24	17	4	-	124
	-	100.0	62.5	35.4	17.9	20.9	13.2	10.9	10.0	-	17.1	
남성유혹	-	-	-	1	1	1	1	3	2	-	9	
	-	-	-	2.1	.9	.7	.5	1.9	5.0	-	1.2	
	기타	-	-	-	2	4	8	17	14	2	1	48
	-	-	-	4.2	3.8	5.2	9.3	9.0	5.0	4.3	6.6	
미상	-	-	1	2	10	18	24	14	5	1	75	
	-	-	6.3	4.2	9.4	11.8	13.1	9.0	12.5	4.3	10.4	
계	1	1	16	48	106	153	182	156	40	23	7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 성매매 이유와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13세 피해자의 경우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이 39.6%, 숙식해결이 35.4%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14세 피해자의 경우 역시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이 59.4%, 숙식해결이 17.9%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4세 내지 18세 피해자의 경우에도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을 위한 경우가 50%를 넘는 반면, 19세 피해자의 경우에는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을 위한 경우는

8.7%에 불과했고,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경우가 82.6%나 차지하였다.

<표 88> 청소년 성매매이유와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피해자 교육수준									계		
	초등학교 재학	중학교 재학	고등학교 재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중퇴	고퇴	미상			
청소년 성매매 이유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	2	85	90	-	10	-	88	53	46	374	
		40.0	52.1	62.1	-	62.5	-	60.7	52.0	32.6	51.8	
	부채해결	-	-	1	-	-	-	1	-	4	6	
		-	-	.7	-	-	-	.7	-	2.8	.8	
	물건구매	-	10	7	-	-	1	4	6	3	31	
		-	6.1	4.8	-	-	33.3	2.8	5.9	2.1	4.3	
	생계비 마련	-	7	4	-	1	-	10	14	23	59	
		-	4.3	2.8	-	6.3	-	6.9	13.7	16.3	8.2	
	숙식해결	1	37	8	1	-	-	28	17	31	123	
		20.0	22.7	5.5	50.0	-	-	19.3	16.7	22.0	17.0	
	남성유혹	-	2	2	-	-	1	2	-	2	9	
		-	1.2	1.4	-	-	33.3	1.4	-	1.4	1.2	
	기타	-	7	16	1	4	1	2	5	12	48	
		-	4.3	11.0	50.0	25.0	33.3	1.4	4.9	8.5	6.6	
	미상	2	15	17	-	1	-	10	7	20	72	
		40.0	9.2	11.7	-	6.3	-	6.9	6.9	14.2	10.0	
계		5	163	145	2	16	3	145	102	141	7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 성매매 이유와 피해자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이 52.1%, 숙식해결이 22.7%인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 62.1%가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중퇴자의 경우 역시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이 60.7%, 숙식해결이 19.3%인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중퇴자의 경우에는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이 52%, 숙식해결이 16.7%, 생계비 마련이 13.7%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89> 청소년 성매매이유와 가출여부와의 관계

(단위: 빈도, %)

구분	청소년 가출여부			계		
	가출	미가출	미상			
청소년 성매매 이유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	116	212	46	374	
		39.1	69.3	38.0	51.7	
	부채해결	2	1	3	6	
		.7	.3	2.5	.8	
	물건구매	8	17	6	31	
		2.7	5.6	5.0	4.3	
	생계비 마련	29	25	7	61	
		9.8	8.2	5.8	8.4	
	숙식해결	114	5	5	124	
		38.4	1.6	4.1	17.1	
	남성유혹	2	4	3	9	
		.7	1.3	2.5	1.2	
	기타	17	21	8	46	
		5.7	6.9	6.6	6.4	
	미상	9	21	43	73	
		3.0	6.9	35.5	10.1	
계		297	306	121	724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 성매매 이유와 가출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출청소년의 경우는 피해자의 경우,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을 위한 경우가 39.1%, 숙식해결을 위한 경우가 38.4%,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경우가 9.8%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가출 청소년의 경우에는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을 위한 경우가 69.3%,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경우가 8.2%,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경우가 5.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성매매가 가출청소년의 경우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6.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표 90> 범죄 유형별 범행 장소

(단위: 빈도, %)

범행장소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길	길	3	9	46	58
		.4	3.9	13.9	4.4
	사무실	2	1	3	6
		.3	.4	.9	.5
	공원, 야산	1	16	18	35
		.4	6.9	5.4	2.4
	유흥주점, 노래방	6	2	2	10
		.8	.9	.6	.8
	여관(숙박업소)	513	28	7	548
		69.2	12.1	2.1	42.4
피해자의 집	피해자의 집	8	42	48	98
		1.1	18.1	14.5	7.6
	주거침입		8	3	11
			3.4	.9	.8
	가해자의 집	107	38	39	184
		14.5	16.4	11.8	14.0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	2	21	20	43
		.3	9.1	6.0	3.3
	제3자의 집	68	37	26	131
		9.2	15.9	7.9	10.0
	자동차안	24	27	18	69
		3.2	11.6	5.4	12.7
기타	기타	10	4	101	115
		1.3	1.7	30.5	1.2
	계	741	235	331	1296
		100.0	100.0	100.0	100.0

범죄유형별 범행 장소를 살펴보면, 우선 성매수의 경우 여관 등 숙박업소가 6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집(18.1%), 가해자의 집(16.4%), 제3자의 집(15.9%) 등 가정집에서 범행이 일어난 비율이 높았다. 또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자동차 안이 1/3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표 91> 범죄유형별 범행지역

(단위: 빈도, %)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범행지역	서울	242	39	73	354	
		33.1	16.6	22.3	27.4	
	부산	56	9	21	86	
		7.7	3.8	6.4	6.6	
	대구	28	6	15	49	
		3.8	2.6	4.6	3.8	
	인천	85	20	20	125	
		11.6	8.5	6.1	9.7	
	광주	17	10	13	40	
		2.3	4.3	4.0	3.1	
	대전	3	5	6	14	
		.4	2.1	1.8	1.1	
	울산	22	3	8	33	
		3.0	1.3	2.4	2.6	
	경기	108	56	62	226	
		14.8	23.8	18.9	17.5	
	경북	73	18	23	114	
		10.0	7.7	7.0	8.8	
	경남	29	16	17	62	
		4.0	6.8	5.2	4.8	
	전북	13	9	11	33	
		1.8	3.8	3.4	2.6	
	전남	12	12	18	42	
		1.6	5.1	5.5	3.2	
	충북	15	6	4	25	
		2.1	2.6	1.2	1.9	
	충남	7	10	16	33	
		1.0	4.3	4.9	2.6	
	강원	16	7	16	39	
		2.2	3.0	4.9	3.0	
	제주	3	6	4	13	
		.4	2.6	1.2	1.0	
	미상	2	3	1	6	
		.3	1.3	.3	.5	
계		731	235	328	1294	
		100.0	100.0	100.0	100.0	

범죄유형별 범행지역을 살펴보면, 성매수의 경우 서울(33.1%), 경기(14.8%), 인천(11.6%)의 순으로 서울·경기지역에서 범행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역시, 서울·경기지역으로 범행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2> 범죄유형별 범행월

(단위: 빈도, %)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범행월	1월	66	7	18	91	
		9.0	3.0	5.6	7.0	
	2월	58	12	20	90	
		7.9	5.2	6.2	7.0	
	3월	79	18	18	115	
		10.7	7.7	5.6	8.9	
	4월	51	15	25	91	
		6.9	6.4	7.7	7.0	
	5월	59	16	25	100	
		8.0	6.9	7.7	7.7	
	6월	55	19	26	100	
		7.5	8.2	8.0	7.7	
	7월	49	36	27	112	
		6.7	15.5	8.3	8.7	
	8월	53	22	31	106	
		7.2	9.4	9.6	8.2	
	9월	62	25	27	114	
		8.4	10.7	8.3	8.8	
	10월	57	29	47	133	
		7.7	12.4	14.5	10.3	
	11월	67	17	37	121	
		9.1	7.3	11.4	9.4	
	12월	80	17	23	120	
		10.9	7.3	7.1	9.3	
계		736	233	324	1293	
		100.0	100.0	100.0	100.0	

범죄유형별로 범행월을 살펴보면, 성매매의 경우 최저 6.7, 최고 10.9%로 특정 월에 관계없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강간의 경우에는 7월(15.5%), 10월(12.4%), 9월(10.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대체로 고른 분포 가운데 10월(14.5%), 11월(11.4%)이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93> 범죄유형별 범행일

(단위: 빈도, %)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범행일	초순	158	50	91	299	
		33.8	26.9	34.1	32.5	
	중순	169	66	92	327	
		36.1	35.5	34.5	35.5	
	하순	141	70	84	295	
		30.1	37.6	31.5	32.0	
계		468	186	267	921	
		100.0	100.0	100.0	100.0	

범죄유형별로 범행일을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에만 초순에 26.9%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을 뿐, 그 외의 경우에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94> 범죄유형별 범행시간

(단위: 빈도, %)

범행발생 시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심야 (0~6시)	88	76	178	342
	38.4	23.8	24.9	27.1
오전 (07~12시)	26	50	45	121
	11.4	15.7	6.3	9.6
오후 (13~18시)	56	134	171	361
	24.5	42.0	23.9	28.6
저녁 (19~24시)	59	59	320	438
	25.8	18.5	44.8	34.7
합계	229	319	714	1262
	100.0	100.0	100.0	100.0

범죄유형별로 범행시간을 살펴보면, 성매수의 경우 19~24시가 44.8%, 0~6시가 24.9%로 일몰 후 일출 전 많은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에도 0~6시가 38.4%, 19~24시가 25.8%로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고, 강제추행의 경우는 13~18시(42.0%)에 가장 많은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성매수 및 강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95> 범죄유형별 범행요일

(단위: 빈도, %)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범행요일	일요일	77	30	44	151	
		16.3	17.2	17.1	16.7	
	월요일	71	22	32	125	
		15.0	12.6	12.4	13.8	
	화요일	50	23	43	116	
		10.6	13.2	16.7	12.8	
	수요일	57	24	21	102	
		12.1	13.8	8.1	11.3	
	목요일	57	18	32	107	
		12.1	10.3	12.4	11.8	
	금요일	61	27	36	124	
		12.9	15.5	14.0	13.7	
	토요일	59	30	29	118	
		12.5	17.2	11.2	13.0	
	미상	41		21	62	
		8.7		8.1	6.9	
계		473	174	258	905	
		100.0	100.0	100.0	100.0	

범죄유형별로 범행요일을 살펴보면, 요일별로 아주 많은 격차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의 경우 일요일(16.3%), 월요일(15.0%)의 순이었으며, 강간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1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일요일(17.1%), 화요일(16.7%), 금요일(14.0%)의 순이었다.

<표 96> 범죄유형별 공범여부

(단위: 빈도, %)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공범여부	공범없음	691	166	324	1181	
		94.3	71.6	98.8	91.3	
	공범있음	42	66	4	112	
		5.7	28.4	1.2	8.7	
계		733	232	328	1293	
		100.0	100.0	100.0	100.0	

범죄유형별로 공범여부를 살펴보면, 성매수의 경우 94.3%, 강간의 경우 71.6%, 강제추행의 경우 98.8%가 공범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강간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28.4%)으로 나타났다.

<표 97> 범죄유형별 공범 수

(단위: 빈도, %)

구분	범죄유형			계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공범수	공범없음	263	171	323	757	
		86.8	72.8	98.8	87.5	
	1명	28	25	1	54	
		9.2	10.6	.3	6.2	
	2명	8	25	3	36	
		2.6	10.6	.9	4.2	
	3명		6		6	
			2.6		.7	
	4명이상	4	8		12	
		1.3	3.4		1.4	
계		303	235	327	865	
		100.0	100.0	100.0	100.0	

범죄유형별로 공범의 수를 살펴보면, 성매수의 경우 없음(86.8%), 1명(9.2%), 2명(2.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간의 경우에는 공범이 없는 경우가 72.8%로 나타난 가운데, 1명인 경우와 2명인 경우가 각각 10.6%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공범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1.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내용

<표 98>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단위: 빈도, %)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모르는 사람	137	198	335
	59.1	59.8	59.5
친부	14	9	23
	6.0	2.7	4.1
의부	14	14	28
	6.0	4.2	5.0
친척	3	4	7
	1.3	1.2	1.2
친구	5	1	6
	2.2	0.3	1.1
이웃	16	47	63
	6.9	14.2	11.2
권력관계에 있는 자	5	11	16
	2.2	3.3	2.8
기타	38	47	85
	16.4	14.2	15.1
계	232	331	563
	100.0	100.0	100.0

범죄유형별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강간과 강제추행은 모르는 사람이 각각 59.1%, 5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가운데, 강간의 경우는 이웃(6.9%), 친부(6.0%), 의부(6.0%)의 순이고, 강제추행의 경우는 이웃이 14.2%를 차지하였다.

<표 99>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공범관계에서의 역할

(단위: 빈도, %)

구분	강간	강제추행
공범관계에서의 역할	148	278
	69.2	98.2
	9	1
	4.2	.4
	50	3
	23.4	1.1
	7	1
	3.3	.4
계		283
		100.0

장간의 경우 공범관계에서의 역할을 비교해보면, 공범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동등한 역할(23.4%), 보조적인 역할(4.2%), 주도적인 역할(3.3%)의 순을 보였으며, 강제추행의 경우 역시 공범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동등한 역할(1.1%)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100> 장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범죄지속기간

(단위: 빈도, %)

구분	장간	강제추행
범죄지속기간	1회에 그침	149 64.5
	1개월 이하	38 16.5
		33 10.2
	1~5개월	13 5.6
		14 4.3
	6개월~1년	10 4.3
		13 4.0
	1년이상	21 9.1
		13 4.0
	계	231 100.0
		324 100.0

범죄지속기간을 살펴보면, 장간의 경우 1회에 그친 사례가 64.5%로 2/3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였으나,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도 9.1%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1회에 그친 사례가 77.5%로 3/4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101> 장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피해청소년 유인방법

(단위: 빈도, %)

유인방법	범죄유형		계
	장간	강제추행	
해당사항 없음	70	123	193
	30.2	37.2	34.3
금품	3	6	9
	1.3	1.8	1.6
질문	4	22	26
	1.7	6.6	4.6
놀이 유인	29	44	73
	12.5	13.3	13.0
애정, 칭찬	3	13	16
	1.3	3.9	2.8

유인방법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사칭 및 위장	31	30	61
	13.4	9.1	10.8
위협	44	27	71
	19.0	8.2	12.6
폭력	2	5	7
	0.9	1.5	1.2
만취상태	4	4	8
	1.7	1.2	1.4
기타	42	57	99
	18.1	17.2	17.6
계	232	331	563
	100.0	100.0	100.0

피해청소년 유인방법을 살펴보면,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강간의 경우 위협(19.0%), 사칭 및 위장(13.4%), 놀이 유인(12.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놀이 유인(13.3%), 사칭 및 위장(9.1%), 위협(8.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2>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제방식

(단위: 빈도, %)

구분	강간	강제추행
강제방식	말로 협박	68 29.3
	흉기로 협박	39 16.8
	구타	10 4.3
	흉기로 폭행	— —
	인신속박	3 1.3
	완력의 사용	67 28.9
	약물이용	— —
	감금	2 .9
	위계, 위력의 사용	15 6.5
	해당없음	28 12.1
	계	232 100.0
		322 100.0

범죄의 강제방식을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말로 협박한 사례가 29.3%, 완력을 사용한 사례가 28.0%, 흉기로 협박한 사례가 16.8%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위계, 위력을 사용한 사례가 32.9%로 가장 많았으며, 완력을 사용한 사례도 26.7%의 비율을 보였다.

<표 103>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피해자의 저항정도

(단위: 빈도, %)

구분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의 저항정도	저항하지 못함	85	183	
		36.8	57.4	
	말로만 저항	109	112	
		47.2	35.1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저항	37	24	
		16.1	7.5	
계		231	319	
		100.0	100.0	

피해자의 저항정도를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말로만 저항한 예가 47.2%, 저항하지 못한 예가 36.8%로 나타난 데 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저항한 예는 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역시 저항하지 못한 예가 57.4%, 말로만 저항한 예가 35.1%로 나타난 데 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저항한 예는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4>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범행이후 2차폭력 유형

(단위: 빈도, %)

구분		강간	강제추행
범행이후 2차 폭력	없음	140	280
		61.1	88.1
	협박, 공갈	44	19
		19.2	6.0
	스토킹	1	-
		.4	-
	금품 요구	3	-
		1.3	-
	성관계 요구	23	3
		10.0	.9

구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요구	1	1
	.4	.3
	1	0
	.4	.0
	12	11
	5.2	3.5
	4	4
	1.7	1.3
계	229	318
	100.0	100.0

범행 이후 2차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2차 폭력이 없었던 경우(61.1%)를 제외하면 협박 및 공갈이 19.2%, 성관계 요구가 10.0%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2차 폭력이 없었던 경우가 88.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105>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윤간공범자수

(단위: 빈도, %)

구분	강간	강제추행
윤간공범자수	106	47
	76.8	100.0
	20	-
	14.5	-
	11	-
	8.0	-
	1	-
	.7	-
계	138	47
	100.0	100.0

윤간공범자 수를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윤간이 아니었던 사례를 제외하면 2명(14.5%), 3명(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의 경우 윤간에 해당하는 예가 없었다.

<표 106>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범죄피해여부

(단위: 빈도, %)

구분		강간	강제추행	
피해여부	없음	132	57	
		57.1	17.5	
	있음	99	268	
		42.9	82.5	
계		231	325	
		100.0	100.0	

범죄피해여부를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피해가 없었던 사례가 57.1%, 있었던 사례가 42.9%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가 있었던 사례가 82.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107>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간 유형

(단위: 빈도, %)

구분		강간	
강간의 유형	해당 없음	9	
		4.3	
	단순 강간	135	
		64.6	
	강도 강간	15	
		7.2	
	윤간	20	
		9.6	
	윤간+강도	12	
		5.7	
	기타	18	
		8.6	
계		209	
		100.0	

강간 유형을 살펴보면, 단순 강간이 6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가운데, 윤간(9.6%), 강도강간(7.2%), 윤간 및 강도(5.7%)의 순을 보였다.

<표 108>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제추행 유형

(단위: 빈도, %)

구분		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유형	해당 없음	6	
		1.9	
	성적키스	33	
		10.2	
	성기이외 성적접촉	112	
		34.6	
	피해자의 성기접촉	113	
		34.9	
	가해자의 성기접촉	29	
		9.0	
	구강성교	5	
		1.5	
	항문성교	3	
		.9	
	손가락의 항문 및 질삽입	11	
		3.4	
	기타	12	
		3.7	
계		324	
		100.0	

강제추행의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성기 접촉이 34.9%,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이 34.6%, 성적 키스가 10.2%로 나타났다.

6-2. 성매수 범죄자 범죄내용

<표 109> 성매수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

(단위: 빈도, %)

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	인터넷	603
		82.0
	전화방	8
		1.1
	이동통신	4
		.5
	거리현팅	11
		1.5
	아는 사람 소개	26
		3.5
	업소(유흥업소)	56
		7.6
	기타	27
		3.6
	계	735
		100.0

성매수범죄자의 피해자 접촉방법을 살펴보면, 인터넷이 8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 외에 업소(7.6%), 아는 사람 소개(3.5%), 거리 현팅(1.5%)의 순을 보였다.

<표 110> 성매수범죄자의 성매매제의자

(단위: 빈도, %)

성매매 제의자	가해자	459
		63.8
	피해자	244
		33.9
	미상	17
		2.4
	계	720
		100.0

성매수범죄의 성매매 제의자를 살펴보면, 가해자인 경우가 63.%, 피해자인 경우가 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성매수범죄의 성교인원

(단위: 빈도, %)

성교인원	1:1	685 93.5
	청소년1 : 성인2 이상	5 .7
	청소년2 이상 : 성인 1인	38 5.2
	청소년2 이상 : 성인 2 이상	5 .7
	계	733 100.0

성매수범죄의 성교 인원을 살펴보면, 1:1인 경우가 93.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성인 1인이 청소년 2인 이상을 상대로 한 경우는 5.2%의 비율을 보였다.

<표 112> 성매수범죄의 성교유형

(단위: 빈도, %)

성교유형	성기성교	588 80.2
	구강성교	26 3.5
	항문성교	2 .3
	기타	9 1.2
	미상	108 14.7
	계	733 100.0

성매수범죄의 성교유형을 살펴보면, 성기성교가 8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구강성교는 3.5%, 항문성교는 0.3%로 아주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113> 성매수범죄시 피임기구사용여부

(단위: 빈도, %)

피임기구 사용여부	콘돔 사용	59 8.1
	질외 사정	116 15.9
	질내 사정	103 14.1
	사정하지 않음	28 3.8
	미상	425 58.1
	계	731 100.0

성매수범죄시 피임기구 사용여부를 살펴보면, 질외 사정의 경우가 15.9%, 질내 사정의 경우가 14.1%, 콘돔을 사용한 경우가 8.1%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6-3. 성매매알선 범죄자 범죄내용

<표 114> 성매매알선범죄의 성매매업소 위치지역

(단위: 빈도, %)

성매매업소위치지역	서울	5	
		7.0	
	부산	2	
		2.8	
	대구	2	
		2.8	
	광주	2	
		2.8	
	대전	7	
		9.9	
	경기	12	
		16.9	
	경북	4	
		5.6	
	경남	5	
		7.0	
	전북	10	
		14.1	
	전남	15	
		21.1	
	충북	1	
		1.4	
	충남	2	
		2.8	
	제주	4	
		5.6	
계		71	
		100.0	

성매매를 알선하는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지역을 살펴보면, 전남(21.1%), 경기(16.9%), 전북(14.1%)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호남권에 비교적 많은 성매매업소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15> 성매매알선범죄 업소에 고용한 청소년의 수

성매매업소 고용 청소년 수	평균	2.8명
----------------	----	------

성매매알선범죄 업소에 고용한 청소년의 수는 평균 2.8명으로 나타났다.

<표 116> 성매매알선범죄의 업소형태

(단위: 빈도, %)

성매매업소 형태	단란주점	6	
		8.6	
	티켓다방	50	
		71.4	
	전화방	1	
		1.4	
	여관	2	
		2.9	
	보도방	2	
		2.9	
	기타	9	
		12.9	
계		70	
		100.0	

성매매알선범죄의 업소형태를 살펴보면, 티켓다방이 71.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가운데, 단란주점(8.6%), 여관(2.9%), 보도방(2.9%)의 순을 보였다.

<표 117> 성매매알선범죄자의 업소에서의 역할

(단위: 빈도, %)

업소에서 가해자의 역할	업주(사장)	58
		84.1
	관리자(마담, 웨이터)	3
		4.3
	카맨/오토맨	1
		1.4
	기타	7
		10.1
	계	
		69
		100.0

성매매알선범죄자의 업소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업주(사장)인 경우가 84.1%로 가장 많았고, 관리자(마담, 웨이터)인 경우가 4.3%, 카맨/오토맨인 경우가 1.4%로 나타났다.

<표 118>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청소년의 업소에서의 노동조건

(단위: 빈도, %)

성매매업소의 고용조건 (노동시간)	9시간에서 12시간	4
		6.0
	13시간에서 15시간	20
		29.9
	15시간 이상	9
		13.4
	미상	34
계		50.7
		67
		100.0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청소년의 업소에서의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13~15시간(29.9%), 15시간 이상(13.4%), 9~12시간(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9> 성매매알선범죄의 업소에 고용된 경로

(단위: 빈도, %)

성매매 업소에 고용된 경로	인터넷	23
		20.9
	소개소	3
		2.7
	동종업주의 소개	14
		12.7
	고용 친구 등 소개	38
		34.5
자발적 취업		25
		22.7
기타		7
		6.4
계		110
		100.0

청소년이 성매매알선범죄의 업소에 고용된 경로를 살펴보면, 고용 친구 등의 소개에 의한 경우가 3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자발적 취업(22.7%), 인터넷(20.9%), 동종업주의 소개(12.7%)가 그 뒤를 이었다.

<표 120> 성매매알선범죄의 성매매 강요방법

(단위: 빈도, %)

성매매 강요방법	강요하지 않음	45
		42.1
	욕설, 폭언	17
		15.9
	공갈, 협박	15
		14.0
	불이익	19
		17.8
	폭행	4
		3.7
	기타	5
		4.7
	미상	2
		1.9
계		107
		100.0

성매매알선범죄의 성매매 강요방법을 살펴보면, 강요하지 않은 경우가 4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불이익(17.8%), 욕설 · 폭언(15.9%), 공갈 · 협박(14%)의 경우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21> 성매매알선범죄의 성매매 외 다른 범죄 발생유형

(단위: 빈도, %)

성매매 외 다른 범죄발생	없음	54
		49.1
	성폭행	2
		1.8
	성추행	1
		.9
	폭행	10
		9.1
	감금	6
		5.5
	성매매 대금갈취	31
		28.2
	기타	5
		4.5
	미상	1
		.9
계		110
		100.0

성매매알선범죄의 성매매 외 다른 범죄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성매매대금 갈취가 28.2%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밖에 폭행(9.1%), 감금(5.5%)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III. 분석결과 시사점과 대책

1. 일반 대책

1) 신종 성범죄 매개체 예측 및 미디어교육 실시

□ 시사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피해청소년을 접촉한 방법은 거의 대부분(82.9%)이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1년 하반기에 46.7%, 2003년 하반기에 63.6%, 2004년 하반기에 79.4%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은 전화방이 인터넷의 뒤를 이은 접촉방법이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성매매 업소에 고용된 경로도 인터넷을 통한 경우가 2002년 상반기에 2%였던 것이 2005년 상반기에는 20.9%로 현저히 늘었다. 이것은 2001년 이후 인터넷의 보급이 급격히 확산되었고 편리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전화방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온 것도 하나의 요인인 될 것이다. 그러나 전화방에 대한 단속으로 성범죄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매개체로 이동하는 효과만을 가져왔다면 이는 성범죄 예방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이 된다.

□ 대책

인터넷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매개체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완벽한 단속과 규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위주의 대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 자신의 비판적 수용능력과 부모의 감독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2) 티켓다방 대책 수립

□ 시사점

청소년 성매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업소는 티켓다방으로 73.8%를 차지했다. 이

것은 2001년 하반기에 25%였다가 2002년 하반기에 31.3%, 2003년 하반기에 41.6%, 2004년 하반기에 67.2%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에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단란주점의 경우는 2001년 하반기에 50%였던 것이 2005년 상반기에는 8.4%로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변화가 있는 것도 풍선효과일 수 있을 것이다.

□ 대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책도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 업소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또한 단속이 강화되면 업소가 지하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신종업소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기 위해 청소년단체의 유해업소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3)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 시사점

2001년 하반기에는 피해청소년 중 10.2%만이 성범죄자의 처벌을 원했었다. 그것이 2002년 하반기에는 28.5%, 2003년 하반기에는 34.4%, 2004년 하반기에는 40.9%로 증가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청소년은 2001년 하반기에 12%에서 2005년 상반기에 4%로 급감했다. 이와 같이 피해청소년의 의식이 변화한 것은 그 동안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있었고 그것이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홍보활동이 있기 전에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오히려 죄의식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특히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 대책

이상과 같이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청소년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볼 때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모든 국민의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국민의식이

높아지면 성범죄자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2. 성범죄자 대책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시사점

2001년도 하반기에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대부분인 93.3%가 구속 수사였으나 2002년도 하반기에는 88.2%, 2003년 하반기에는 84.6%, 2004년 하반기에는 79.7%로 구속수사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79.4%만이 구속 수사를 받았고, 20.5%의 성범죄자는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구속 자체는 처벌이 아니라 수사를 위한 신병확보 수단이지만 일반인의 법 감정은 구속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률의 저하는 일반인에게 처벌이 약화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2001년부터 신상공개제도가 실시된 이래 법원의 1심판결 형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징역형의 비율이 줄어들고 벌금형의 비율이 늘고 있다. 물론 집행유예와 금고·징역형의 비율에 있어서는 집행유예가 다소 줄고 실형을 선고한 경우가 조금 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벌금형의 비율이 2001년에는 21%였으나 2003년에는 31%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벌금형의 증가 또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 대책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대처가 약화된 이유는 성범죄자의 유형에 있어 성매수 범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성매수는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매매특별법까지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강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종사자(경찰, 검사, 판사 등)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해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 강화

□ 시사점

2001년도 하반기에는 성범죄의 지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7%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도 하반기에는 10.1%까지 증가했다가 2005년도에는 7.3%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뿐 아니라 6개월~1년 사이, 1~5개월 사이, 1개월 이하도 조금씩 증가했고, 1회에 그쳤다는 경우만 2001년 하반기에 82.3%에서 2005년 상반기에 68.8%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1회에 그친 경우는 감소하고 성범죄를 반복한 경우는 늘었으며, 1년 이상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대폭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책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상습적 또는 지속적으로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1회에 그친 범죄자와 구별하여 교육의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시간을 늘리는 한 편 교육프로그램의 내용도 성범죄의 상습화 예방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러한 상습성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신과적 치료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3) 성범죄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 수립

□ 시사점

청소년대상 성범죄 중에서 성매수의 경우는 나머지 성범죄인 성매매알선이나 강간, 강제추행과 비교해 볼 때 가해자의 특성 면에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매수자 중에서 회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1.9%인데 반해 성매매알선은 2.9%, 강간은 13.4%, 강제추행은 14.2%이다. 또한 학생의 비율은 성매수가 10%, 성매매알선이 1.4%, 강간이 2.2%, 강제추행이 3.4%이다. 이와 같이 성매수 범죄자는 다른 성범죄자와 달리 회사원과 학생 41.9%이고, 정규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48.1%이며, 미혼자가 43.5%이고, 연령대는 20~3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성매수

범죄자의 상당수가 평범한 시민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해자가 학력이 높고 젊을수록 피해자가 성매매를 제의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청소년에 비해 자기 통제력이 높은 성인들이 이러한 제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의식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 대책

이상과 같이 평범한 시민들이 성매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성매매알선이나 강간, 강제추행과 달리 성매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낫거나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성매수 범죄자에 대한 대책과 다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차별화하여 성매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예방에 더 주력하고, 나머지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예방에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성매수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대책으로 성매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 언론이 협력하여 성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을 홍보하고,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파렴치한 것인지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나머지 성범죄에 대한 특별예방 대책으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을 더욱 강화하고, 신상공개와 교육을 병행할 필요도 있다.

3. 성범죄 피해청소년 대책

1) 가출청소년 피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

□ 시사점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청소년 중 26.5%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당시에 가출상태에 있었다. 이중 성매수 피해의 경우는 41.1%, 성매매알선 피해의 경우는 45.5%나 차지하고 있다. 물론 가출상태가 아니었던 청소년이 57.2%로 훨씬 더 많지만 전체 청소년가출의 발생률을 감안해 보면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가출율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출은 성경험과도 관련성이 높아 성매매 이전에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

년이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는 70.5%이고, 가출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에는 56.9%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과 성경험 및 성매매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이유 중에서 17.3%가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한 청소년이 6.8%인 것으로 보아 숙식해결이라는 응답은 가출 후의 숙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출은 성범죄 중에서도 성매매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대책

가출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은 이들이 안전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안전한 숙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성범죄 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안전한 숙소인 가출청소년쉼터가 확충되어야 하고, 가출청소년들이 이러한 시설로 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청소년상담실은 이러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초기에 개입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성범죄 피해를 알린 대상으로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이 상담실이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이나 성범죄 피해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가치관 교육 실시

□ 시사점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으로 51.7%를 차지했다. 반면에 '생계비 마련'은 6.8%에 불과했다. 한편 성매매 피해청소년 중에서 협박이나 폭행 같은 강요 없이 자의로 성매매를 한 경우가 42.1%나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향락주의가 청소년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 대책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복지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하겠지만,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한 청소년의 경우는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의 개선과 적은 임금이라도 건전한 일자리에서 일하겠다는 근로의식의 함양을 통해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가치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예방으로써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일반예방으로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윤리교육 및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성범죄피해의 저연령화 대책

□ 시사점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8세이다. 형법상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13세미만자가 28.8%를 차지하고, 중학생에 해당하는 16세 미만자가 72.3%나 차지하고 있어, 저연령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 대책

성범죄 피해자의 상당수가 16세 미만자라는 것은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과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뿐 아니라 조기 성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실시되어 청소년들이 조기에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 피해청소년에 대해서도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부록 1. 범죄유형별 3차원 교차표

<표 1> 성매매알선의 피해자 교육수준별 성매매이동경로

(단위: 빈도, %)

구 분		성매매이동경로						계	
		처음	다방에서 다방으로 이동	다방에서 주점으로 이동	주점에서 다방으로 이동	기타	미상		
피해자 교 수 육 준	중학교 재학	10	-	-	-	-	1	11	
		18.2	-	-	-	-	6.7	10.3	
	고등 학교 재학	11	-	-	-	3	-	14	
		20.0	-	-	-	27.3	-	13.1	
	중학교 졸업	2	-	-	-	-	-	2	
		3.6	-	-	-	-	-	1.9	
	중퇴	4	5	2	0	0	3	14	
		7.3	22.7	66.7	-	-	20.0	13.1	
	고퇴	4	1	-	-	-	6	11	
		7.3	4.5	-	-	-	40.0	10.3	
	미상	24	16	1	1	8	5	55	
		43.6	72.7	33.3	100.0	72.7	33.3	51.4	
계		55	22	3	1	11	15	10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 성매매알선의 피해자 연령별 성매매이동경로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 이동경로						계	
		처음	다방에서 다방으로 이동	다방에서 주점으로 이동	주점에서 다방으로 이동	기타	미상		
피해자 연령	12세	1	-	-	-	-	-	1	
		1.8	-	-	-	-	-	.9	
	13세	8	-	-	-	-	-	8	
		14.5	-	-	-	-	-	7.5	
	14세	1	-	-	-	1	1	3	
		1.8	-	-	-	9.1	6.7	2.8	
	15세	3	-	-	-	2	-	5	
		5.5	-	-	-	18.2	-	4.7	
	16세	14	4	-	-	2	3	23	
		25.5	18.2	-	-	18.2	20.0	21.5	
	17세	7	8	2	1	4	5	27	
		12.7	36.4	66.7	100.0	36.4	33.3	25.2	
	18세	15	10	1	-	2	6	34	
		27.3	45.5	33.3	-	18.2	40.0	31.8	
	19세	6	-	-	-	-	-	6	
		10.9	-	-	-	-	-	5.6	
계		55	22	3	1	11	15	10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 성매매알선의 피해청소년 동거형태별 성매매이동경로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 이동경로						계		
	처음	다방에서 다방으로 이동	다방에서 주점으로 이동	주점에서 다방으로 이동	기타	미상			
피해 청소년의 동거형태	부모	11	4	1	–	1	7	24	
		20.4	18.2	33.3	–	9.1	46.7	22.6	
	부	1	–	–	–	–	1	2	
		1.9	–	–	–	–	6.7	1.9	
	모	3	–	–	–	1	–	4	
		5.6	–	–	–	9.1	–	3.8	
	조모	2	2	1	–	–	–	5	
		3.7	9.1	33.3	–	–	–	4.7	
	친척	7	1	–	–	–	–	8	
		13.0	4.5	–	–	–	–	7.5	
	형제 자매	8	4	–	–	5	1	18	
		14.8	18.2	–	–	45.5	6.7	17.0	
	친구	22	11	1	1	4	6	45	
		40.7	50.0	33.3	100.0	36.4	40.0	42.5	
계		54	22	3	1	11	15	10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 성매매알선의 청소년 가출여부에 따른 성매매이동경로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 이동경로					계		
	처음	다방에서 다방으로 이동	다방에서 주점으로 이동	기타	미상			
청소년 가출여부	가출	23	7	–	9	7	46	
		41.8	30.4	–	81.8	50.0	43.4	
	미가출	14	5	–	–	1	20	
		25.5	21.7	–	–	7.1	18.9	
	미상	18	11	3	2	6	40	
		32.7	47.8	100.0	18.2	42.9	37.7	
	계		55	23	3	11	14	10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자 교육수준별 성매매이유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이유						계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	채무해결	생계비 마련	숙식 해결	기타	미상		
피해자 교육 수준	중학교 재학	7 26.9	0 -	3 18.8	1 16.7	1 12.5	- -	12 11.0
	고등학교 재학	7 26.9	3 14.3	1 6.3	- -	3 37.5	- -	14 12.8
	중학교 졸업	- -	2 9.5	- -	- -	- -	- -	2 1.8
	중퇴	1 3.8	2 9.5	1 6.3	4 66.7	1 12.5	6 18.8	15 13.8
	고퇴	1 3.8	2 9.5	2 12.5	- -	- -	6 18.8	11 10.1
	미상	10 38.5	12 57.1	9 56.3	1 16.7	3 37.5	20 62.5	55 50.5
	계	26 100.0	21 100.0	16 100.0	6 100.0	8 100.0	32 100.0	109 100.0

<표 6>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자 연령별 성매매이유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이유						계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	채무해결	생계비 마련	숙식해결	기타	미상	
피해자 연령	12세	- -	- -	- 16.7	- -	- -	1 .9
	13세	7 26.9	- -	- -	1 12.5	- -	8 7.3
	14세	3 11.5	- -	1 16.7	- -	- -	4 3.6
	15세	2 7.7	- 11.8	- -	1 12.5	- -	5 4.5
	16세	6 23.1	3 14.3	5 29.4	- -	2 25.0	8 25.0
	17세	4 15.4	10 47.6	5 29.4	1 16.7	1 12.5	7 21.9
	18세	4 15.4	6 28.6	5 29.4	3 50.0	- -	16 50.0
	19세	- -	2 9.5	- -	- -	3 37.5	1 3.1
	계	26 100.0	21 100.0	17 100.0	6 100.0	8 100.0	32 100.0

<표 7>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청소년 동거형태별 성매매이유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이유						계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	채무해결	생계비 마련	숙식해결	기타	미상		
피해 청소년의 동거형태	부모	3	4	4	2	4	7	24
		12.0	19.0	25.0	33.3	50.0	21.9	22.2
	부	-	-	1	-	-	1	2
		-	-	6.3	-	-	3.1	1.9
	모	1	3	-	-	-	-	4
		4.0	14.3	-	-	-	-	3.7
	조모	-	4	1	-	-	1	6
		-	19.0	6.3	-	-	3.1	5.6
	친척	4	-	3	1	-	-	8
		16.0	-	18.8	16.7	-	-	7.4
	형제 자매	6	2	2	-	4	4	18
		24.0	9.5	12.5	-	50.0	12.5	16.7
	친구	11	8	5	3	-	19	46
		44.0	38.1	31.3	50.0	-	59.4	42.6
	계	25	21	16	6	8	32	1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8> 성매매알선범죄의 청소년가출여부에 따른 성매매이유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이유						계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	채무해결	생계비 마련	숙식해결	기타	미상		
청소년 가출여부	가출	17	10	8	5	1	7	48
		68.0	47.6	47.1	83.3	12.5	22.6	44.4
	미가출	5	6	1	-	5	3	20
		20.0	28.6	5.9	-	62.5	9.7	18.5
	미상	3	5	8	1	2	21	40
		12.0	23.8	47.1	16.7	25.0	67.7	37.0
	계	25	21	17	6	8	31	1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9>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자 교육수준별 성매매이전 일자리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 이전 일자리						계
	무직	편의점등 아르바이트	다방 종업원	유흥업소 종업원	기타	미상	
피해자 교육 수준	중학교 재학	8	-	-	2	-	11
		27.6	-	-	40.0	-	3.1
	고등학교 재학	4	-	4	-	3	14
		13.8	-	12.9	-	33.3	9.4
	중학교 졸업	-	-	2	-	-	2
		-	-	6.5	-	-	1.9
	중퇴	5	-	5	-	1	3
		17.2	-	16.1	-	11.1	9.4
	고퇴	6	-	2	-	-	3
		20.7	-	6.5	-	-	9.4
	미상	6	1	18	3	5	22
		20.7	100.0	58.1	60.0	55.6	68.8
	계	29	1	31	5	9	3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0>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자 연령별 성매매이전 일자리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 이전 일자리						계
	무직	편의점등 아르바이트	다방 종업원	유흥업소 종업원	기타	미상	
피해자 연령	12세	1	-	-	-	-	1
		3.4	-	-	-	-	.9
	13세	7	-	-	-	-	7
		24.1	-	-	-	-	6.5
	14세	1	-	-	-	3	4
		3.4	-	-	-	9.4	3.7
	15세	1	1	-	1	2	5
		3.4	100.0	-	11.1	6.3	4.7
	16세	6	-	7	1	9	23
		20.7	-	22.6	-	11.1	28.1
	17세	3	-	9	3	9	27
		10.3	-	29.0	60.0	33.3	28.1
	18세	10	-	12	2	1	34
		34.5	-	38.7	40.0	11.1	28.1
	19세	-	-	3	-	3	6
		-	-	9.7	-	33.3	-
	계	29	1	31	5	9	3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1> 성매매 알선범죄의 피해청소년 동거형태별 성매매이전 일자리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 이전 일자리						계
	무직	편의점등 아르바이트	다방 종업원	유흥업소 종업원	기타	미상	
피해 청소년의 동거형태	부모	7	-	5	3	3	23
		24.1	-	16.7	60.0	33.3	21.9
	부	1	-	-	-	1	2
		3.4	-	-	-	3.2	1.9
	모	1	-	2	-	-	3
		3.4	-	6.7	-	-	2.9
	조모	-	-	2	-	3	5
		-	-	6.7	-	33.3	4.8
	친척	5	-	1	-	1	8
		17.2	-	3.3	-	11.1	7.6
	형제 자매	1	-	3	-	2	18
		3.4	-	10.0	-	22.2	17.1
	친구	14	1	17	2	-	46
		48.3	100.0	56.7	40.0	-	38.7
	계	29	1	30	5	9	1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2> 성매매알선범죄의 청소년가출여부에 따른 성매매이전 일자리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 이전 일자리						계
	무직	편의점등 아르바이트	다방 종업원	유흥업소 종업원	기타	미상	
청소년 가출 여부	가출	21	-	10	3	2	47
		72.4	-	31.3	75.0	22.2	44.3
	미가출	3	-	5	1	5	20
		10.3	-	15.6	25.0	55.6	18.9
	미상	5	1	17	-	2	39
		17.2	100.0	53.1	-	22.2	45.2
	계	29	1	32	4	9	10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3>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자 교육수준별 업소에 고용된 경로

(단위: 빈도, %)

계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경로						계	
		인터넷	소개소	동종업주 의 소개	고용친구 등 소개	자발적 취업	기타		
피해자 교 육 수 준	중학교 재학	1	-	2	5	3	1	12	
		4.3	-	15.4	13.2	12.0	14.3	11.0	
	고등학교 재학	6	-	1	5	1	1	14	
		26.1	-	7.7	13.2	4.0	14.3	12.8	
	중학교 졸업	-	-	2	-	-	-	2	
		-	-	15.4	-	-	-	1.8	
	중퇴	5	-	3	2	4	1	15	
		21.7	-	23.1	5.3	16.0	14.3	13.8	
	고퇴	4	1	-	4	2	-	11	
		17.4	33.3	-	10.5	8.0	-	10.1	
	미상	7	2	5	22	15	4	55	
		30.4	66.7	38.5	57.9	60.0	57.1	50.5	
계		23	3	13	38	25	7	1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4>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자연령별 업소에 고용된 경로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경로						계	
		인터넷	소개소	동종업주 의 소개	고용친구 소개	자발적 취업	기타		
피해자 연령	12세	-	-	-	1	-	-	1	
		-	-	-	2.6	-	-	.9	
	13세	1	-	-	3	3	1	8	
		4.3	-	-	7.9	12.5	14.3	7.3	
	14세	1	-	-	2	-	-	3	
		4.3	-	-	5.3	-	-	2.8	
	15세	2	-	-	3	-	-	5	
		8.7	-	-	7.9	-	-	4.6	
	16세	10	-	2	6	4	2	24	
		43.5	-	14.3	15.8	16.7	28.6	22.0	
	17세	2	1	7	9	5	4	28	
		8.7	33.3	50.0	23.7	20.8	57.1	25.7	
	18세	4	2	5	12	11	-	34	
		17.4	66.7	35.7	31.6	45.8	-	31.2	
	19세	3	-	-	2	1	-	6	
		13.0	-	-	5.3	4.2	-	5.5	
계		23	3	14	38	24	7	1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5> 성매매알선범죄의 피해청소년 동거형태별 업소 고용경로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경로						계	
	인터넷	소개소	동종업주 의 소개	고용친구 등 소개	자발적 취업	기타		
피해 청소년의 동거형태	부모	9	1	5	4	2	3	24
		39.1	50.0	35.7	10.5	8.3	42.9	22.2
	부	-	-	-	2	-	-	2
		-	-	-	5.3	-	-	1.9
	모	1	-	2	-	1	-	4
		4.3	-	14.3	-	4.2	-	3.7
	조모	1	-	2	1	1	1	6
		4.3	-	14.3	2.6	4.2	14.3	5.6
	친척	1	-	-	4	3	-	8
		4.3	-	-	10.5	12.5	-	7.4
	형제 자매	5	1	1	9	-	2	18
		21.7	50.0	7.1	23.7	-	28.6	16.7
	친구	6	-	4	18	17	1	46
		26.1	-	28.6	47.4	70.8	14.3	42.6
	계	23	2	14	38	24	7	1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6> 성매매알선범죄의 청소년가출여부에 따른 업소 고용경로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경로						계	
	인터넷	소개소	동종업주 의 소개	고용친구 등 소개	자발적 취업	기타		
청소년 가출 여부	가출	13	1	5	14	11	4	48
		56.5	33.3	35.7	37.8	45.8	57.1	44.4
	미가출	4	-	4	7	2	3	20
		17.4	-	28.6	18.9	8.3	42.9	18.5
	미상	6	2	5	16	11	-	40
		26.1	66.7	35.7	43.2	45.8	-	37.0
	계	23	3	14	37	24	7	1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7> 성매매알선범죄의 성범죄자 연령별 성매매강요방법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 강요방법							계	
		강요하지 않음	욕설, 폭언	공갈, 협박	불이익	폭행	기타	미상		
성범죄자 연령별	20대 이하	16	6	8	11	1	1	1	44	
		38.1	37.5	57.1	68.8	50.0	20.0	50.0	45.4	
	30대	16	7	5	2	1	1	–	32	
		38.1	43.8	35.7	12.5	50.0	20.0	–	33.0	
	40대	5	–	–	2	–	3	1	11	
		11.9	–	–	12.5	–	60.0	50.0	11.3	
	50대	4	3	1	1	–	–	–	9	
		9.5	18.8	7.1	6.3	–	–	–	9.3	
	60대 이상	1	–	–	–	–	–	–	1	
		2.4	–	–	–	–	–	–	1.0	
계		42	16	14	16	2	5	2	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8> 성매매알선범죄의 교육수준별 성매매강요방법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 강요방법							계	
		강요하지 않음	욕설, 폭언	공갈, 협박	불이익	폭행	기타	미상		
교육 수준	무학	–	–	–	1	–	–	–	1	
		–	–	–	6.3	–	–	–	1.0	
	중졸 이하	1	1	–	2	–	–	–	4	
		2.4	6.3	–	12.5	–	–	–	4.2	
	고졸	6	–	1	1	–	–	1	9	
		14.6	–	7.1	6.3	–	–	50.0	9.4	
	대졸 이상	–	1	–	1	–	–	–	2	
		–	6.3	–	6.3	–	–	–	2.1	
	미상	34	14	13	11	2	5	1	80	
		82.9	87.5	92.9	68.8	100.0	100.0	50.0	83.3	
계		41	16	14	16	2	5	2	9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9> 성매매알선범죄의 직업별 성매매 강요방법

(단위: 빈도, %)

직업	구분	성매매 강요방법							계
		강요하지 않음	욕설, 폭언	공갈, 협박	불이익	폭행	기타	미상	
회사원	1	1	–	–	–	–	–	–	2
	2.4	6.3	–	–	–	–	–	–	2.1
자영업	7	4	5	2	1	–	1	20	
	16.7	25.0	35.7	12.5	50.0	–	50.0	20.6	
서비스직	–	–	4	–	–	–	–	4	
	–	–	28.6	–	–	–	–	4.1	
학생 (휴학생)	–	–	–	1	–	–	–	1	
	–	–	–	6.3	–	–	–	1.0	
유통업소	17	8	3	8	–	5	1	42	
	40.5	50.0	21.4	50.0	–	100.0	50.0	43.3	
무직	17	3	2	5	1	–	–	28	
	40.5	18.8	14.3	31.3	50.0	–	–	28.9	
계	42	16	14	16	2	5	2	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0> 성매매알선범죄자의 연령별 성매매 외 다른 범죄발생 유형

(단위: 빈도, %)

성범죄자 연령별	구분	성매매 외 다른 범죄발생							계	
		없음	성폭행	성추행	폭행	강금	성매매 대가갈취	기타		
20대 이하	20대 이하	20	2	–	3	1	16	3	–	45
		39.2	100.0	–	37.5	33.3	55.2	60.0	–	45.0
30대	30대	21	–	1	1	1	7	2	–	33
		41.2	–	100.0	12.5	33.3	24.1	40.0	–	33.0
40대	40대	6	–	–	1	–	4	–	1	12
		11.8	–	–	12.5	–	13.8	–	100.0	12.0
50대	50대	3	–	–	3	1	2	–	–	9
		5.9	–	–	37.5	33.3	6.9	–	–	9.0
60대 이상	60대 이상	1	–	–	–	–	–	–	–	1
		2.0	–	–	–	–	–	–	–	1.0
계	51	2	1	8	3	29	5	1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1> 성매매알선 범죄자 교육수준별 성매매 외 다른 범죄발생유형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 외 다른 범죄발생								계
	없음	성폭행	성추행	폭행	감금	성매매 대가 갈취	기타	미상	
교육 수준	무학	1	-	-	-	-	-	-	1
		2-	-	-	-	-	-	-	1.0
	중졸 이하	3	-	-	1	-	-	-	4
		5.9	-	-	12.5	-	-	-	4.0
	고졸	7	-	-	-	1	2	-	10
		13.7	-	-	-	33.3	7.1	-	10.1
	대졸 이상	-	-	1	-	-	1	-	2
		-	-	100.0	-	-	3.6	-	2.0
	미상	40	2	-	7	2	25	5	82
		78.4	100.0	-	87.5	66.7	89.3	100.0	82.8
	계	51	2	1	8	3	28	5	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2> 성매매알선범죄자 직업별 성매매 외 다른 범죄발생 유형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 외 다른 범죄발생								계
	없음	성폭행	성추행	폭행	감금	성매매 대가 갈취	기타	미상	
직업	회사원	1	-	1	-	-	-	-	2
		2-	-	100.0	-	-	-	-	2.0
	자영업	14	-	-	2	1	3	-	20
		27.5	-	-	25.0	33.3	10.3	-	20.0
	서비스직	-	-	-	-	-	4	-	4
		-	-	-	-	-	13.8	-	4.0
	학생 (휴학생)	-	-	-	-	-	1	-	1
		-	-	-	-	-	3.4	-	1.0
	유통 업소	23	1	-	5	2	13	-	1
		45.1	50.0	-	62.5	66.7	44.8	-	45.0
	무직	13	1	-	1	-	8	5	28
		25.5	50.0	-	12.5	-	27.6	100.0	28.0
	계	51	2	1	8	3	29	5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3> 피해자신분별 피해유무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피해여부		계
		없음	있음	
성매수	피해자 신분	미취학아동	-	1
			-	100.0
		재학생	1	-
			33.3	-
		퇴학 및 자퇴생	1	-
			33.3	-
		미상	1	-
			33.3	-
		계		4
			100.0	100.0
강간	피해자 신분	미취학아동	5	2
			2.9	1.4
		재학생	122	83
			69.7	59.7
		휴학생	1	1
			.6	.7
		퇴학 및 자퇴생	13	20
			7.4	14.4
		미상	34	33
			19.4	23.7
		계		314
			100.0	100.0
		미취학아동	13	47
			20.6	14.2
강제추행	피해자 신분	재학생	45	259
			71.4	78.2
		휴학생	-	1
			-	.3
		퇴학 및 자퇴생	1	5
			1.6	1.5
		미상	4	19
			6.3	5.7
		계		394
			100.0	100.0

<표 24> 피해자신분별 음부상처나 감염피해 유무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음부상처나감염피해		계	
		없다	있다		
성매수	피해자 신분	미취학아동	1	-	1
			33.3	-	25.0
		재학생	1	-	1
			33.3	-	25.0
		퇴학 및 자퇴생	-	1	1
			-	100.0	25.0
		미상	1	-	1
			33.3	-	25.0
		계	3	1	4
			100.0	100.0	100.0
강간	피해자 신분	미취학아동	7	-	7
			2.9	-	2.2
		재학생	143	62	205
			59.6	83.8	65.3
		휴학생	2	-	2
			.8	-	.6
		퇴학 및 자퇴생	30	3	33
			12.5	4.1	10.5
		미상	58	9	67
			24.2	12.2	21.3
		계	240	74	314
			100.0	100.0	100.0
강제추행	피해자 신분	미취학아동	50	10	60
			13.7	33.3	15.2
		재학생	285	19	304
			78.3	63.3	77.2
		휴학생	1	-	1
			.3	-	.3
		퇴학 및 자퇴생	6	-	6
			1.6	-	1.5
		미상	22	1	23
			6.0	3.3	5.8
		계	364	30	394
			100.0	100.0	100.0

<표 25> 피해자신분별 음부이외 외상피해 유무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음부 이외의 외상 피해		계		
		없다	있다			
성매수	피해자 신분	미취학아동	1	-	1	
			33.3	-	25.0	
		재학생	1	-	1	
			33.3	-	25.0	
		퇴학 및 자퇴생	1	-	1	
			33.3	-	25.0	
		미상	-	1	1	
			-	100.0	25.0	
		계		3	1	4
			100.0	100.0	100.0	
강간	피해자 신분	미취학아동	4	3	7	
			1.5	5.5	2.2	
		재학생	169	36	205	
			65.3	65.5	65.3	
		휴학생	2	-	2	
			.8	-	.6	
		퇴학 및 자퇴생	29	4	33	
			11.2	7.3	10.5	
		미상	55	12	67	
			21.2	21.8	21.3	
		계		259	55	314
			100.0	100.0	100.0	
강제추행	피해자 신분	미취학아동	58	2	60	
			15.3	13.3	15.2	
		재학생	293	11	304	
			77.3	73.3	77.2	
		휴학생	1	-	1	
			.3	-	.3	
		퇴학 및 자퇴생	6	-	6	
			1.6	-	1.5	
		미상	21	2	23	
			5.5	13.3	5.8	
		계		379	15	394
			100.0	100.0	100.0	

<표 26> 피해자신분별 금전적 피해유무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금전적 피해		계	
		없다	있다		
성매수	피해자 신분	미취학아동	1	-	1
			25.0	-	25.0
		재학생	1	-	1
			25.0	-	25.0
		퇴학 및 자퇴생	1	-	1
			25.0	-	25.0
		미상	1	-	1
			25.0	-	25.0
		계		4	
		100.0		-	
강간	피해자 신분	미취학아동	7	-	7
			2.5	-	2.2
		재학생	189	16	205
			67.0	50.0	65.3
		휴학생	1	1	2
			.4	3.1	.6
		퇴학 및 자퇴생	32	1	33
			11.3	3.1	10.5
		미상	53	14	67
			18.8	43.8	21.3
		계		282	
		100.0		100.0	
강제추행	피해자 신분	미취학아동	60	-	60
			15.3	-	15.2
		재학생	303	1	304
			77.1	100.0	77.2
		휴학생	1	-	1
			.3	-	.3
		퇴학 및 자퇴생	6	-	6
			1.5	-	1.5
		미상	23	-	23
			5.9	-	5.8
		계		393	
		100.0		100.0	

<표 27> 피해자신분별 임신피해유무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임신 피해		계	
		없다	있다		
성매수	피해자 신분	미취학아동	1	-	1
			25.0	-	25.0
		재학생	1	-	1
			25.0	-	25.0
		퇴학 및 자퇴생	1	-	1
			25.0	-	25.0
		미상	1	-	1
			25.0	-	25.0
		계		4	
				100.0	
				-	
				100.0	
강간	피해자 신분	미취학아동	7	-	7
			2.3	-	2.2
		재학생	202	3	205
			66.0	37.5	65.3
		휴학생	2	-	2
			.7	-	.6
		퇴학 및 자퇴생	29	4	33
			9.5	50.0	10.5
		미상	66	1	67
			21.6	12.5	21.3
		계		306	
				8	
				314	
				100.0	
				100.0	
강제추행	피해자 신분	미취학아동	60	-	60
			15.2	-	15.2
		재학생	304	-	304
			77.2	-	77.2
		휴학생	1	-	1
			.3	-	.3
		퇴학 및 자퇴생	6	-	6
			1.5	-	1.5
		미상	23	-	23
			5.8	-	5.8
		계		394	
				-	
				100.0	
				100.0	

<표 28> 성매수범죄의 피해자신분별 기타 피해사항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청소년의 기타 피해사항							계	
		다른 피해 없음	폭행	협박이나 위협	약속한 대가 못받음	대가 전혀 못받음	기타	미상		
성매수	피해자 신분	미취학 아동	8	—	1	2	—	—	3	14
		32.0	—	100.0	33.3	—	—	42.9	32.6	
		재학생	7	—	—	2	1	1	3	14
		28.0	—	—	33.3	100.0	50.0	42.9	32.6	
		퇴학 및 자퇴생	10	1	—	2	—	1	1	15
		40.0	100.0	—	33.3	—	50.0	14.3	34.9	
		계	25	1	1	6	1	2	7	4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9> 강간범죄의 강제추행 유형별 피해여부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피해 여부		계	
		없음	있음		
강간	강제추행의 유형	해당 없음	12	13	25
			21.8	28.9	25.0
		성적키스	6	1	7
			10.9	2.2	7.0
		성기이외 성적접촉	10	13	23
			18.2	28.9	23.0
		피해자의 성기접촉	13	9	22
			23.6	20.0	22.0
		가해자의 성기접촉	1	6	7
			1.8	13.3	7.0
		구강성교	10	1	11
			18.2	2.2	11.0
		손가락의 항문 및 질삽입	2	2	4
			3.6	4.4	4.0
		기타	1	—	1
			1.8	—	1.0
		계	55	45	100
			100.0	100.0	100.0

<표 30>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제추행 유형별 음부상처나 감염피해유무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음부상처나 감염 피해		계
		없다	있다	
강간	강제추행의 유형	해당 없음	23	25
			28.0	11.1 25.0
		성적키스	3	7
			3.7	22.2 7.0
		성기이외 성적접촉	19	23
			23.2	22.2 23.0
		피해자의 성기접촉	19	22
			23.2	16.7 22.0
		가해자의 성기접촉	7	7
			8.5	7.0
		구강성교	6	11
			7.3	27.8 11.0
		손가락의 항문 및 질삽입	4	4
			4.9	4.0
		기타	1	1
			1.2	1.0
		계		82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유형	해당 없음	6	6
			1.7	1.6
		성적키스	35	35
			9.9	9.2
		성기이외 성적접촉	124	127
			34.9	33.2
		피해자의 성기접촉	122	138
			34.4	36.1
		가해자의 성기접촉	33	37
			9.3	9.7
		구강성교	4	5
			1.1	1.3
		항문성교	4	4
			1.1	1.0
		손가락의 항문 및 질삽입	9	12
			2.5	3.1
		기타	18	18
			5.1	4.7
		계		355 27 382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1>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제추행 유형별 음부 이외 외상피해유무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음부이외의 외상 피해		계
		없다	있다	
강간	강제추행의 유형	해당 없음	22	3
			26.8	16.7
		성적키스	5	2
			6.1	11.1
		성기이외 성적접촉	20	3
			24.4	16.7
		피해자의 성기접촉	17	5
			20.7	27.8
		가해자의 성기접촉	6	1
			7.3	5.6
		구강성교	9	2
			11.0	11.1
		손가락의 항문 및 질삽입	3	1
			3.7	5.6
		기타	–	1
			–	5.6
		계		100.0
			18	100
			100.0	100.0
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유형	해당 없음	6	6
			1.6	1.6
		성적키스	32	3
			8.7	20.0
		성기이외 성적접촉	121	6
			33.0	127
		피해자의 성기접촉	137	1
			37.3	138
		가해자의 성기접촉	35	2
			9.5	37
		구강성교	5	13.3
			1.4	9.7
		항문성교	3	–
			.8	5
		손가락의 항문 및 질삽입	1	6.7
			2.7	4
		기타	18	12
			4.9	3.1
		계		18
			–	4.7
			367	382
			100.0	100.0

<표 32>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제추행 유형별 금전적 피해유무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금전적 피해		계	
		없다	있다		
강간	강제추행의 유형	해당 없음	19	6	25
			22.1	42.9	25.0
		성적키스	7	—	7
			8.1	—	7.0
		성기이외 성적접촉	21	2	23
			24.4	14.3	23.0
		피해자의 성기접촉	22	—	22
			25.6	—	22.0
		가해자의 성기접촉	6	1	7
			7.0	7.1	7.0
		구강성교	7	4	11
			8.1	28.6	11.0
		손가락의 항문 및 질삽입	4	—	4
			4.7	—	4.0
		기타	—	1	1
			—	7.1	1.0
		계	86	14	100
			100.0	100.0	100.0

<표 33>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제추행 유형별 임신피해유무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임신 피해		계	
		없다	있다		
강간	강제추행의 유형	해당 없음	25	—	25
			25.3	—	25.0
		성적키스	7	—	7
			7.1	—	7.0
		성기이외 성적접촉	23	—	23
			23.2	—	23.0
		피해자의 성기접촉	21	1	22
			21.2	100.0	22.0
		가해자의 성기접촉	7	—	7
			7.1	—	7.0
		구강성교	11	—	11
			11.1	—	11.0
		손가락의 항문 및 질삽입	4	—	4
			4.0	—	4.0
		기타	1	—	1
			1.0	—	1.0
		계	99	1	100
			100.0	100.0	100.0

<표 34>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간 유형별 피해유무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피해여부		계		
		없음	있음			
강간	강간의 유형	해당 없음	6	14	20	
			3.8	12.1	7.2	
		단순 강간	100	72	172	
			62.5	62.1	62.3	
		강도 강간	15	6	21	
			9.4	5.2	7.6	
		윤간	17	12	29	
			10.6	10.3	10.5	
		윤간+강도	12	2	14	
			7.5	1.7	5.1	
		기타	10	10	20	
			6.3	8.6	7.2	
	계		160	116	276	
			100.0	100.0	100.0	
강제추행	강간의 유형	해당 없음	11	25	36	
			84.6	89.3	87.8	
		단순 강간	2	2	4	
			15.4	7.1	9.8	
		기타	-	1	1	
			-	3.6	2.4	
	계		13	28	41	
			100.0	100.0	100.0	

<표 35>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간 유형별 음부상처나 감염피해유무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음부상처나 감염 피해		계	
		없다	있다		
강간	강간의 유형	해당 없음	19	20	
			9.3	7.2	
		단순 강간	123	49	
			60.0	62.3	
		강도 강간	16	5	
			7.8	7.6	
		윤간	15	29	
			7.3	10.5	
		윤간+강도	14	14	
			6.8	5.1	
		기타	18	20	
			8.8	7.2	
	계		205	276	
			100.0	100.0	
강제추행	강간의 유형	해당 없음	34	36	
			91.9	87.8	
		단순 강간	2	4	
			5.4	9.8	
		기타	1	1	
			2.7	2.4	
	계		37	41	
			100.0	100.0	

<표 36>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간 유형별 음부 이외의 외상피해 유무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음부이외의 외상 피해		계		
		없다	있다			
강간	강간의 유형	해당 없음	16	4	20	
			7.0	8.3	7.2	
		단순 강간	144	28	172	
			63.2	58.3	62.3	
		강도 강간	14	7	21	
			6.1	14.6	7.6	
		윤간	26	3	29	
			11.4	6.3	10.5	
		윤간+강도	14	–	14	
			6.1	–	5.1	
		기타	14	6	20	
			6.1	12.5	7.2	
	계		228	48	276	
			100.0	100.0	100.0	
강제추행	강간의 유형	해당 없음	33	3	36	
			86.8	100.0	87.8	
		단순 강간	4	–	4	
			10.5	–	9.8	
		기타	1	–	1	
			2.6	–	2.4	
	계		38	3	41	
			100.0	100.0	100.0	

<표 37>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간 유형별 금전적 피해유무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금전적 피해		계	
		없다	있다		
강간	강간의 유형	해당 없음	18	20	
			7.3	7.2	
		단순 강간	165	172	
			67.3	62.3	
		강도 강간	14	21	
			5.7	7.6	
		윤간	28	29	
			11.4	10.5	
		윤간+강도	2	14	
			.8	5.1	
		기타	18	20	
			7.3	7.2	
	계		245	276	
			100.0	100.0	
강제추행	강간의 유형	해당 없음	36	36	
			87.8	87.8	
		단순 강간	4	4	
			9.8	9.8	
		기타	1	1	
			2.4	2.4	
	계		41	41	
			100.0	100.0	

<표 38>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간 유형별 임신피해유무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임신 피해		계
		없다	있다	
강간	강간의 유형	해당 없음	20	- 20
			7.4	- 7.2
		단순 강간	165	7 172
			61.3	100.0 62.3
		강도 강간	21	- 21
			7.8	- 7.6
		윤간	29	- 29
			10.8	- 10.5
		윤간+강도	14	- 14
			5.2	- 5.1
		기타	20	- 20
			7.4	- 7.2
		계		269 7 276
				100.0 100.0 100.0
강제추행	강간의 유형	해당 없음	36	- 36
			87.8	- 87.8
		단순 강간	4	- 4
			9.8	- 9.8
		기타	1	- 1
			2.4	- 2.4
		계		41 - 41
				100.0 - 100.0

<표 39>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간 유형별 피해자 신분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피해자 신분					계		
		미취학 아동	재학생	휴학생	퇴학 및 자퇴생	미상			
강간	강간의 유형	해당 없음	-	17	-	-	3	20	
			-	9.0	-	-	5.2	7.2	
		단순 강간	4	118	1	20	30	173	
			100.0	62.4	100.0	76.9	51.7	62.2	
		강도 강간	-	15	-	-	6	21	
			-	7.9	-	-	10.3	7.6	
		윤간	-	18	-	3	8	29	
			-	9.5	-	11.5	13.8	10.4	
		윤간+강도	-	5	-	2	7	14	
			-	2.6	-	7.7	12.1	5.0	
		기타	-	16	-	1	4	21	
			-	8.5	-	3.8	6.9	7.6	
	계		4	189	1	26	58	27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강간의 유형	해당 없음	3	31	-	2	1	37	
			100.0	88.6	-	100.0	50.0	88.1	
		단순 강간	-	3	-	-	1	4	
			-	8.6	-	-	50.0	9.5	
		기타	-	1	-	-	-	1	
			-	2.9	-	-	-	2.4	
		계		3	35	-	2	42	
				100.0	100.0	-	100.0	100.0	

<표 40>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제추행 유형별 피해자 신분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피해자 신분					계		
		미취학 아동	재학생	휴학생	퇴학 및 자퇴생	미상			
강간	강제 추행의 유형	해당없음	–	17	1	2	4	24	
			–	26.6	50.0	22.2	19.0	24.0	
		성적키스	–	7	–	–	–	7	
			–	10.9	–	–	–	7.0	
		성기이외 성적접촉	–	14	–	2	7	23	
			–	21.9	–	22.2	33.3	23.0	
		피해자의 성기접촉	2	12	–	3	5	22	
			50.0	18.8	–	33.3	23.8	22.0	
		가해자의 성기접촉	1	5	1	–	–	7	
			25.0	7.8	50.0	–	–	7.0	
		구강성교	–	6	–	1	5	12	
			–	9.4	–	11.1	23.8	12.0	
		손가락의 항문 및 질삽입	1	2	–	1	–	4	
			25.0	3.1	–	11.1	–	4.0	
		기타	–	1	–	–	–	1	
			–	1.6	–	–	–	1.0	
		계		4	64	2	9	21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강제 추행의 유형	해당없음	1	5	–	–	–	6	
			1.7	1.7	–	–	–	1.6	
		성적키스	9	26	–	–	1	36	
			15.5	8.8	–	–	4.8	9.4	
		성기이외 성적접촉	8	105	1	5	7	126	
			13.8	35.6	100.0	83.3	33.3	33.1	
		피해자의 성기접촉	27	101	–	1	8	137	
			46.6	34.2	–	16.7	38.1	36.0	
		가해자의 성기접촉	8	28	–	–	1	37	
			13.8	9.5	–	–	4.8	9.7	
		구강성교	–	5	–	–	–	5	
			–	1.7	–	–	–	1.3	
		항문성교	–	3	–	–	1	4	
			–	1.0	–	–	4.8	1.0	
		손가락의 항문 및 질삽입	3	7	–	–	2	12	
			5.2	2.4	–	–	9.5	3.1	
		기타	2	15	–	–	1	18	
			3.4	5.1	–	–	4.8	4.7	
		계		58	295	1	6	21	38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1>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유인방법별 피해자 신분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피해자 신분					계	
		미취학 아동	재학생	휴학생	퇴학, 자퇴생	미상		
강간	유인 방법	해당사항 없음	2 28.6	50 24.6	1 50.0	3 9.7	25 37.9	81 26.2
		금품	1 14.3	3 1.5	— —	— —	— —	4 1.3
		질문	— —	3 1.5	— —	1 3.2	— —	4 1.3
		놀이유인	— —	20 9.9	— —	7 22.6	4 6.1	31 10.0
		애정, 칭찬	— —	5 2.5	— —	— —	1 1.5	6 1.9
		사칭 및 위장	— —	32 15.8	1 50.0	9 29.0	13 19.7	55 17.8
		위협	3 42.9	50 24.6	— —	3 9.7	7 10.6	63 20.4
		폭력	— —	2 1.0	— —	— —	— —	2 .6
		만취상태	— —	3 1.5	— —	1 3.2	1 1.5	5 1.6
		기타	1 14.3	35 17.2	— —	7 22.6	15 22.7	58 18.8
		계	7 100.0	203 100.0	2 100.0	31 100.0	66 100.0	309 100.0
		해당사항 없음	15 26.3	99 33.6	— —	3 50.0	17 77.3	134 35.2
		금품	2 3.5	7 2.4	— —	— —	— —	9 2.4
		질문	2 3.5	26 8.8	— —	— —	— —	28 7.3
		놀이유인	10 17.5	37 12.5	— —	— —	4 18.2	51 13.4
		애정, 칭찬	1 1.8	16 5.4	— —	— —	— —	17 4.5
		사칭 및 위장	5 8.8	32 10.8	— —	— —	— —	37 9.7
		위협	4 7.0	25 8.5	1 100.0	1 16.7	1 4.5	32 8.4
		폭력	— —	5 1.7	— —	— —	— —	5 1.3
		만취상태	— —	4 1.4	— —	— —	— —	4 1.0
		기타	18 31.6	44 14.9	— —	2 33.3	— —	64 16.8
		계	57 100.0	295 100.0	1 100.0	6 100.0	22 100.0	381 100.0

<표 42>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제방식별 피해자신분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피해자 신분					계	
		미취학아동	재학생	휴학생	퇴학, 자퇴생	미상		
강간	강제 방식	말로 협박	3	61	–	7	25	96
			42.9	29.9	–	22.6	37.9	31.0
		흉기로 협박	3	38	1	3	16	61
			42.9	18.6	50.0	9.7	24.2	19.7
		구타	–	12	–	–	–	12
			–	5.9	–	–	–	3.9
		인신속박	–	4	–	–	1	5
			–	2.0	–	–	1.5	1.6
		완력의 사용	–	49	1	18	12	80
			–	24.0	50.0	58.1	18.2	25.8
		감금	–	3	–	1	4	8
			–	1.5	–	3.2	6.1	2.6
		위계, 위력의 사용	1	15	–	1	1	18
			14.3	7.4	–	3.2	1.5	5.8
		해당 없음	–	22	–	1	7	30
			–	10.8	–	3.2	10.6	9.7
		계	7	204	2	31	66	3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강제 방식	말로 협박	3	30	–	–	1	34
			5.2	10.2	–	–	4.5	8.9
		흉기로 협박	1	7	–	–	–	8
			1.7	2.4	–	–	–	2.1
		구타	1	7	–	–	–	8
			1.7	2.4	–	–	–	2.1
		흉기로 폭행	–	–	–	1	–	1
			–	–	–	16.7	–	.3
		인신속박	–	1	–	–	–	1
			–	.3	–	–	–	.3
		완력의 사용	10	76	1	3	5	95
			17.2	25.9	100.0	50.0	22.7	24.9
		약물이용	–	1	–	–	–	1
			–	.3	–	–	–	.3
		감금	–	4	–	–	–	4
			–	1.4	–	–	–	1.0
		위계, 위력의 사용	30	105	–	1	2	138
			51.7	35.7	–	16.7	9.1	36.2
		해당 없음	13	63	–	1	14	91
			22.4	21.4	–	16.7	63.6	23.9
		계	58	294	1	6	22	38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3>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범행이후 2차폭력 유형별 피해자 신분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피해자 신분					계	
		미취학 아동	재학생	휴학생	퇴학 및 자퇴생	미상		
강간	범행 이후의 2차폭력	없음	7	109	2	19	50	187
			100.0	54.0	100.0	61.3	76.9	60.9
		협박, 공갈	–	52	–	5	6	63
			–	25.7	–	16.1	9.2	20.5
		스토킹	–	–	–	1	–	1
			–	–	–	3.2	–	.3
		금품 요구	–	1	–	3	–	4
			–	.5	–	9.7	–	1.3
		성관계 요구	–	21	–	1	2	24
			–	10.4	–	3.2	3.1	7.8
		강간미수	–	–	–	1	–	1
			–	–	–	3.2	–	.3
		성매매 요구	–	1	–	–	–	1
			–	.5	–	–	–	.3
		기타	–	12	–	1	5	18
			–	5.9	–	3.2	7.7	5.9
		미상	–	6	–	–	2	8
			–	3.0	–	–	3.1	2.6
		계	7	202	2	31	65	30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범행 이후의 2차폭력	없음	54	250	1	3	18	326
			94.7	86.2	100.0	50.0	81.8	86.7
		협박, 공갈	2	25	–	1	1	29
			3.5	8.6	–	16.7	4.5	7.7
		성관계 요구	–	3	–	–	–	3
			–	1.0	–	–	–	.8
		강간미수	–	–	–	1	–	1
			–	–	–	16.7	–	.3
		기타	1	9	–	1	2	13
			1.8	3.1	–	16.7	9.1	3.5
		미상	–	3	–	–	1	4
			–	1.0	–	–	4.5	1.1
		계	57	290	1	6	22	37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4> 성매매알선범죄의 성범죄자 연령별 성매매 강요방법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 강요방법							계	
		강요하지 않음	욕설, 폭언	공갈, 협박	불이익	폭행	기타	미상		
성범죄자 연령별	20대 이하	16	6	8	11	1	1	1	44	
		38.1	37.5	57.1	68.8	50.0	20.0	50.0	45.4	
	30대	16	7	5	2	1	1	–	32	
		38.1	43.8	35.7	12.5	50.0	20.0	–	33.0	
	40대	5	–	–	2	–	3	1	11	
		11.9	–	–	12.5	–	60.0	50.0	11.3	
	50대	4	3	1	1	–	–	–	9	
		9.5	18.8	7.1	6.3	–	–	–	9.3	
	60대 이상	1	–	–	–	–	–	–	1	
		2.4	–	–	–	–	–	–	1.0	
	계		42	16	14	16	2	5	2	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5>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연령별 유인방법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유인방법									계			
		해당 사항 없음	금품	질문	놀이 유인	애정, 칭찬	사칭 및 위장	위협	폭력	만취 상태				
강간	성범죄자 연령별	20대 이하	26	1	2	23	3	15	42	–	4	18	134	
			32.9	25.0	50.0	71.9	50.0	26.8	66.7	–	80.0	31.6	43.5	
		30대	27	1	–	6	–	17	13	–	1	27	92	
			34.2	25.0	–	18.8	–	30.4	20.6	–	20.0	47.4	29.9	
		40대	21	2	2	1	–	21	6	2	–	9	64	
			26.6	50.0	50.0	3.1	–	37.5	9.5	100.0	–	15.8	20.8	
		50대	4	–	–	1	–	1	2	–	–	3	11	
			5.1	–	–	3.1	–	1.8	3.2	–	–	5.3	3.6	
		60대 이상	1	–	–	1	3	2	–	–	–	–	7	
			1.3	–	–	3.1	50.0	3.6	–	–	–	–	2.3	
		계		79	4	4	32	6	56	63	2	5	57	3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성범죄자 연령별	20대 이하	15	–	5	5	–	4	9	2	1	7	48	
			10.9	–	17.9	10.0	–	11.4	28.1	40.0	25.0	11.1	12.6	
		30대	52	–	5	12	3	4	10	1	–	18	105	
			38.0	–	17.9	24.0	17.6	11.4	31.3	20.0	–	28.6	27.6	
		40대	41	2	7	16	5	17	8	2	2	18	118	
			29.9	22.2	25.0	32.0	29.4	48.6	25.0	40.0	50.0	28.6	31.1	
		50대	22	5	8	10	3	3	3	–	–	19	73	
			16.1	55.6	28.6	20.0	17.6	8.6	9.4	–	–	30.2	19.2	
		60대 이상	7	2	3	7	6	7	2	–	1	1	36	
			5.1	22.2	10.7	14.0	35.3	20.0	6.3	–	25.0	1.6	9.5	
		계		137	9	28	50	17	35	32	5	4	63	38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6>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연령별 강제방식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강 제 방 식										계		
		말로 협박	흉기 협박	구타	흉기 폭행	인신 속박	완력 사용	약물 이용	감금	위계, 위력 사용	해당 없음			
강간	성 범죄자 연령별	20대 이하	43	29	5	–	2	39	–	1	3	11	133	
			45.3	48.3	41.7	–	40.0	48.8	–	12.5	16.7	35.5	43.0	
		30대	25	15	3	–	2	23	–	7	6	12	93	
			26.3	25.0	25.0	–	40.0	28.8	–	87.5	33.3	38.7	30.1	
		40대	23	15	3	–	1	13	–	0	2	7	64	
			24.2	25.0	25.0	–	20.0	16.3	–	.0	11.1	22.6	20.7	
		50대	4	1	–	–	–	4	–	–	2	1	12	
			4.2	1.7	–	–	–	5.0	–	–	11.1	3.2	3.9	
		60대 이상	–	–	1	–	–	1	–	–	5	–	7	
			–	–	8.3	–	–	1.3	–	–	27.8	–	2.3	
		계		95	60	12	–	5	80	–	8	18	309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성 범죄자 연령별	20대 이하	9	5	4	1	–	9	–	1	11	9	49	
			26.5	62.5	50.0	100.0	–	9.5	–	25.0	8.1	8.7	12.9	
		30대	11	2	1	–	–	24	–	1	33	33	105	
			32.4	25.0	12.5	–	–	25.3	–	25.0	24.3	35.9	27.6	
		40대	10	1	3	–	–	31	1	2	35	33	116	
			29.4	12.5	37.5	–	–	32.6	100.0	50.0	25.7	35.9	30.4	
		50대	3	–	–	–	1	20	–	–	34	15	73	
			8.8	–	–	–	100.0	21.1	–	–	25.0	16.3	19.2	
		60대 이상	1	–	–	–	–	11	–	–	23	3	38	
			2.9	–	–	–	–	11.6	–	–	16.9	3.3	10.0	
		계		34	8	8	1	1	95	1	4	136	93	38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7>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연령별 범행이후 2차폭력 유형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범행이후의 2차폭력									계		
		없음	협박, 공갈	스토킹	금품 요구	성관계 요구	강간 미수	성매매 요구	기타	미상			
강간	성범죄자 연령별	20대 이하	83	28	–	2	9	1	–	6	3	132	
			45.1	44.4	–	40.0	37.5	100.0	–	31.6	37.5	43.1	
		30대	57	14	–	–	6	–	–	9	5	91	
			31.0	22.2	–	–	25.0	–	–	47.4	62.5	29.7	
		40대	30	20	1	3	7	–	–	3	–	64	
			16.3	31.7	100.0	60.0	29.2	–	–	15.8	–	20.9	
		50대	9	–	–	–	2	–	–	1	–	12	
			4.9	–	–	–	8.3	–	–	5.3	–	3.9	
		60대 이상	5	1	–	–	–	–	1	–	–	7	
			2.7	1.6	–	–	–	–	100.0	–	–	2.3	
		계		184	63	1	5	24	1	1	19	8	30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성범죄자 연령별	20대 이하	44	4			–	–		1	–	49	
			13.5	13.8			–	–		7.7	–	13.0	
		30대	92	8			1	1		3	–	105	
			28.2	27.6			33.3	100.0		23.1	–	27.9	
		40대	97	7			2	–		5	2	113	
			29.8	24.1			66.7	–		38.5	50.0	30.1	
		50대	61	9			–	–		–	1	71	
			18.7	31.0			–	–		–	25.0	18.9	
		60대 이상	32	1			–	–		4	1	38	
			9.8	3.4			–	–		30.8	25.0	10.1	
		계		326	29			3	1		13	4	37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8>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연령별 강제추행 유형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강제추행의 유형									계		
		해당 없음	성적 키스	성기외 성적 접촉	피해자 의 성기 접촉	가해자 성기 접촉	구강 성교	항문 성교	손가락 항문, 질삽입	기타			
강간	성 범죄자 연령별	20대 이하	8	2	6	8	1	6	-	3	1	35	
			32.0	25.0	26.1	36.4	14.3	54.5	-	75.0	100.0	34.7	
		30대	9	4	9	6	1	1	-	1	-	31	
			36.0	50.0	39.1	27.3	14.3	9.1	-	25.0	-	30.7	
		40대	8	1	6	7	5	4	-	-	-	31	
			32.0	12.5	26.1	31.8	71.4	36.4	-	-	-	30.7	
		50대	-	-	1	1	-	-	-	-	-	2	
			-	-	4.3	4.5	-	-	-	-	-	2.0	
		60대 이상	-	1	1	-	-	-	-	-	-	2	
			-	12.5	4.3	-	-	-	-	-	-	2.0	
		계		25	8	23	22	7	11	-	4	1	1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성 범죄자 연령별	20대 이하	-	4	16	15	9	2	-	2	1	49	
			-	11.4	12.8	10.7	24.3	40.0	-	16.7	5.6	12.8	
		30대	4	12	35	30	8	1	1	3	10	104	
			66.7	34.3	28.0	21.4	21.6	20.0	25.0	25.0	55.6	27.2	
		40대	2	9	40	47	9	1	3	3	3	117	
			33.3	25.7	32.0	33.6	24.3	20.0	75.0	25.0	16.7	30.6	
		50대	-	7	27	27	7	1	-	1	3	73	
			-	20.0	21.6	19.3	18.9	20.0	-	8.3	16.7	19.1	
		60대 이상	-	3	7	21	4	-	-	3	1	39	
			-	8.6	5.6	15.0	10.8	-	-	25.0	5.6	10.2	
		계		6	35	125	140	37	5	4	12	18	3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표 49>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연령별 강간의 유형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강간의 유형						계	
		해당 없음	단순 강간	강도 강간	윤간	윤간+강도	기타		
강간	성범죄자 연령별	20대 이하	4	61	6	28	14	8	121
		21.1	35.1	31.6	96.6	100.0	38.1	43.8	
		30대	7	50	11	1	—	9	78
		36.8	28.7	57.9	3.4	—	42.9	28.3	
		40대	7	48	2	—	—	2	59
		36.8	27.6	10.5	—	—	9.5	21.4	
		50대	—	9	—	—	—	2	11
		—	5.2	—	—	—	9.5	4.0	
		60대 이상	1	6	—	—	—	—	7
		5.3	3.4	—	—	—	—	—	2.5
		계	19	174	19	29	14	21	27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성범죄자 연령별	20대 이하	4	—	—	—	—	—	4
		10.8	—	—	—	—	—	—	9.8
		30대	8	2	—	—	—	1	11
		21.6	66.7	—	—	—	100.0	26.8	
		40대	18	1	—	—	—	—	19
		48.6	33.3	—	—	—	—	—	46.3
		50대	4	—	—	—	—	—	4
		10.8	—	—	—	—	—	—	9.8
		60대 이상	3	—	—	—	—	—	3
		8.1	—	—	—	—	—	—	7.3
		계	37	3	—	—	—	1	41
		100.0	100.0	—	—	—	100.0	100.0	100.0

<표 50> 성매매알선 범죄자연령별 성매매 강요방법

(단위: 빈도, %)

구분	성매매 강요방법							계
	강요하지 않음	욕설, 폭언	공갈, 협박	불이익	폭행	기타	미상	
교육 수준	무학	—	—	—	1	—	—	1
		—	—	6.3	—	—	—	1.0
	중졸 이하	1	1	—	2	—	—	4
		2.4	6.3	—	12.5	—	—	4.2
	고졸	6	—	1	1	—	—	9
		14.6	—	7.1	6.3	—	—	50.0
	대졸 이상	—	1	—	1	—	—	2
		—	6.3	—	6.3	—	—	2.1
	미상	34	14	13	11	2	5	80
		82.9	87.5	92.9	68.8	100.0	100.0	50.0
	계	41	16	14	16	2	5	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1>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교육수준별 유인방법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유인 방법										계
		해당 사항 없음	금품	질문	놀이 유인	애정, 칭찬	사칭 및 위장	위협	폭력	만취 상태	기타	
강간	교육 수준	무학	1	-	-	-	-	-	-	-	-	1
			1.3	-	-	-	-	-	-	-	-	.3
		중졸 이하	4	-	-	-	-	3	1	-	-	4
			5.1	-	-	-	-	5.4	1.6	-	-	3.9
		고졸	7	1	-	9	-	-	2	1	-	3
			9.0	25.0	-	28.1	-	-	3.2	50.0	-	5.5
		대졸 이상	2	-	-	3	-	3	4	-	-	13
			2.6	-	-	9.4	-	5.4	6.3	-	-	23.6
		미상	64	3	4	20	6	50	56	1	5	35
			82.1	75.0	100.	62.5	100.	89.3	88.9	50.0	100.	63.6
		계		78	4	4	32	6	56	63	2	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강제 추행	교육 수준	무학	1	-	1	-	-	-	-	-	-	2
			.7	-	3.6	-	-	-	-	-	-	.5
		중졸 이하	10	-	6	2	1	3	-	-	-	16
			7.5	-	21.4	3.9	5.9	9.1	-	-	-	25.4
		고졸	15	-	2	2	-	-	4	-	-	5
			11.2	-	7.1	3.9	-	-	12.9	-	-	7.5
		대졸 이상	9	-	1	2	6	2	-	-	-	6
			6.7	-	3.6	3.9	35.3	6.1	-	-	-	9.5
		미상	99	9	18	45	10	28	27	5	4	36
			73.9	100.	64.3	88.2	58.8	84.8	87.1	100.	100.	57.2
		계		134	9	28	51	17	33	31	5	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표 52>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의 교육수준별 강제방식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강제 방식										계
		말로 협박	흉기 협박	구타	흉기 폭행	인신 속박	완력 사용	약물 이용	감금	위계, 위력 사용	해당 없음	
강간	교육 수준	무학	1	-	-	-	-	-	-	-	-	1
			1.1	-	-	-	-	-	-	-	-	.3
		중졸 이하	6	-	2	-	-	4	-	-	-	12
			6.4	-	16.7	-	-	5.0	-	-	-	3.9
		고졸	11	1	1	-	-	6	-	-	2	22
			11.7	1.7	8.3	-	-	7.5	-	-	11.8	3.2
		대졸 이상	10	5	-	-	1	8	-	-	-	1
			10.6	8.5	-	-	20.0	10.0	-	-	-	3.2
		미상	66	53	9	-	4	62	-	8	15	29
			70.2	89.8	75.0	-	80.0	77.5	-	100.	88.2	93.5
		계	94	59	12	-	5	80	-	8	17	31
			100.	100.	100.	-	100.	100.	-	100.	100.	100.0
강제 추행	교육 수준	무학	-	-	-	-	-	1	-	-	-	1
			-	-	-	-	-	1.1	-	-	-	1.1
		중졸 이하	3	1	-	-	-	7	1	-	17	10
			9.1	14.3	-	-	-	7.4	100.	-	12.7	11.0
		고졸	4	-	1	-	-	6	-	-	6	11
			12.1	-	12.5	-	-	6.3	-	-	4.5	12.1
		대졸 이상	3	-	-	1	-	7	-	1	13	2
			9.1	-	-	100.	-	7.4	-	25.0	9.7	2.2
		미상	23	6	7	-	1	74	-	3	98	68
			69.7	85.7	87.5	-	100.	77.9	-	75.0	73.1	73.6
		계	33	7	8	1	1	95	1	4	134	9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표 53>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의 교육수준별 범행이후 2차폭력 유형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범행이후의 2차폭력									계		
		없음	협박, 공갈	스토킹	금품 요구	성관계 요구	강간 미수	성매매 요구	기타	미상			
강간	교육 수준	무학	1	-	-	-	-	-	-	-	1		
			.5	-	-	-	-	-	-	-	.3		
		중졸 이하	6	5	-	-	1	-	-	-	12		
			3.3	8.1	-	-	4.2	-	-	-	4.0		
		고졸	13	5	-	-	1	-	-	3	22		
			7.1	8.1	-	-	4.2	-	-	15.8	-	7.3	
		대졸 이상	12	5	-	-	1	-	-	3	4	25	
			6.6	8.1	-	-	4.2	-	-	15.8	50.0	8.3	
		미상	150	47	1	5	21	1	1	13	4	243	
			82.4	75.8	100.0	100.0	87.5	100.0	100.0	68.4	50.0	80.2	
		계		182	62	1	5	24	1	1	19	8	30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교육 수준	무학	2	-	-	-	-	-	-	-	2		
			.6	-	-	-	-	-	-	-	.5		
		중졸 이하	32	4	-	-	1	1	-	1	-	39	
			9.9	13.8	-	-	50.0	100.0	-	9.1	-	10.5	
		고졸	26	2	-	-	-	-	-	-	28		
			8.0	6.9	-	-	-	-	-	-	7.5		
		대졸 이상	18	8	-	-	-	-	-	-	26		
			5.6	27.6	-	-	-	-	-	-	7.0		
		미상	246	15	-	-	1	-	-	10	4	276	
			75.9	51.7	-	-	50.0	-	-	90.9	100.0	74.4	
		계		324	29	-	-	2	1	-	11	4	371
				100.0	100.0	-	-	100.0	100.0	-	100.0	100.0	

<표 54>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교육수준별 강제추행 유형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강제추행의 유형									계
		해당 없음	성적 키스	성기외 성적 접촉	피해자 성기 접촉	가해자 성기 접촉	구강 성교	항문 성교	손가락 항문, 질삽입	기타	
강간	교육 수준	중졸 이하	-	1	-	-	-	3	-	-	4
			-	12.5	-	-	-	27.3	-	-	4.0
		고졸	1	1	-	-	-	1	-	-	3
			4.0	12.5	-	-	-	9.1	-	-	3.0
		대졸 이상	3	3	2	-	-	2	-	-	10
			12.0	37.5	8.7	-	-	18.2	-	-	9.9
		미상	21	3	21	22	7	5	-	4	1
			84.0	37.5	91.3	100.0	100.0	45.5	-	100.0	100.0
		계		25	8	23	22	7	11	-	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강제 추행	교육 수준	무학	1	-	1	-	-	-	-	-	2
			16.7	-	.8	-	-	-	-	-	.5
		중졸 이하	-	3	18	10	3	-	1	1	3
			-	8.3	14.5	7.4	8.3	-	25.0	8.3	16.7
		고졸	1	2	11	9	2	-	-	-	27
			16.7	5.6	8.9	6.6	5.6	-	-	-	11.1
		대졸 이상	-	5	8	12	1	-	-	1	-
			-	13.9	6.5	8.8	2.8	-	-	8.3	-
		미상	4	26	86	105	30	5	3	10	13
			66.7	72.2	69.3	77.2	83.3	100.0	75.0	83.4	72.2
		계		6	36	124	136	36	5	4	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5>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교육수준별 강간 유형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강간의 유형						계
		해당 없음	단순 강간	강도 강간	윤간	윤간 +강도	기타	
강간	교육 수준	무학	—	1	—	—	—	1
			—	.6	—	—	—	.4
		중졸 이하	—	12	—	—	—	12
			—	7.0	—	—	—	4.4
		고졸	—	14	—	6	—	20
			—	8.2	—	20.7	—	7.3
		대출 이상	2	9	5	1	2	22
			10.5	5.3	26.3	3.4	14.3	8.1
		미상	17	135	14	22	12	218
			89.5	78.9	73.7	75.9	85.7	79.9
		계	19	171	19	29	14	2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	—	—	—	2
			5.4	—	—	—	—	4.9
		고졸	1	1	—	—	—	2
			2.7	33.3	—	—	—	4.9
		대출 이상	3	—	—	—	—	3
			8.1	—	—	—	—	7.3
		미상	31	2	—	—	1	34
			83.8	66.7	—	—	100.0	82.9
		계	37	3	—	—	1	41
			100.0	100.0	—	—	100.0	100.0

<표 56> 성매매알선 범죄자 직업별 성매매 강요방법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성매매 강요방법						계
		강요하지 않음	욕설, 폭언	공갈, 협박	불이익	폭행	기타	
성매매 알선	직업	회사원	1	1	—	—	—	—
			2.4	6.3	—	—	—	2.1
		자영업	7	4	5	2	1	20
			16.7	25.0	35.7	12.5	50.0	20.6
		서비스 직	—	—	4	—	—	4
			—	—	28.6	—	—	4.1
		학생 (휴학생)	—	—	—	1	—	1
			—	—	—	6.3	—	1.0
		유흥 업소	17	8	3	8	5	42
			40.5	50.0	21.4	50.0	—	43.3
		무직	17	3	2	5	1	28
			40.5	18.8	14.3	31.3	50.0	28.9
		계	42	16	14	16	2	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7>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자 직업별 유인방법

(단위: 빈도, %)

유형	구분	유인방법										계	
		해당없음	금품	질문	놀이유인	애정청찬	사칭위장	위협	폭력	만취상태	기타		
강간	직업	전문직	-	-	-	-	-	1	1	-	-	5	7
			-	-	-	-	-	1.9	1.6	-	-	8.8	2.3
		회사원	11	-	-	2	1	3	15	1	1	4	38
			14.1	-	-	6.3	16.7	5.6	24.2	50.0	20.0	7.0	12.5
		자영업	5	1	1	-	-	18	2	-	-	2	29
			6.4	25.0	25.0	-	-	33.3	3.2	-	-	3.5	9.5
		서비스직	17	1	-	5	4	3	9	-	3	10	52
			21.8	25.0	-	15.6	66.7	5.6	14.5	-	60.0	17.5	17.1
		일용직	16	1	1	2	-	6	5	-	-	6	37
			20.5	25.0	25.0	6.3	-	11.1	8.1	-	-	10.5	12.2
		학생 (휴학생)	-	-	-	2	-	-	1	-	-	1	4
			-	-	-	6.3	-	-	1.6	-	-	1.8	1.3
		공직	1	-	-	4	-	1	6	-	-	1	13
			1.3	-	-	12.5	-	1.9	9.7	-	-	1.8	4.3
		유통 업소	2	-	1	2	-	-	4	-	-	2	11
			2.6	-	25.0	6.3	-	-	6.5	-	-	3.5	3.6
		무직	26	1	1	15	1	22	19	1	1	26	113
			33.3	25.0	25.0	46.9	16.7	40.7	30.6	50.0	20.0	45.6	37.2
		계	78	4	4	32	6	54	62	2	5	57	3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직업	전문직	1	-	-	-	-	-	-	-	-	1	2
			.7	-	-	-	-	-	-	-	-	1.6	.5
		회사원	18	1	4	4	4	1	4	2	2	10	50
			13.4	11.1	14.3	8.0	23.5	3.0	12.5	40.0	50.0	15.9	13.3
		자영업	24	4	2	7	3	5	5	-	-	11	61
			17.9	44.4	7.1	14.0	17.6	15.2	15.6	-	-	17.5	16.3
		서비스직	21	-	5	14	1	8	8	1	-	7	65
			15.7	-	17.9	28.0	5.9	24.2	25.0	20.0	-	11.1	17.3
		일용직	22	-	7	6	-	4	3	1	1	12	56
			16.4	-	25.0	12.0	-	12.1	9.4	20.0	25.0	19.0	14.9
		학생 (휴학생)	3	-	1	1	-	1	1	-	-	4	11
			2.2	-	3.6	2.0	-	3.0	3.1	-	-	6.3	2.9
		공직	8	-	-	1	7	6	1	-	-	3	26
			6.0	-	-	2.0	41.2	18.2	3.1	-	-	4.8	6.9
		유통 업소	2	-	-	-	-	-	-	-	-	2	4
			1.5	-	-	-	-	-	-	-	-	3.2	1.1
		무직	34	4	9	17	2	8	10	1	1	13	99
			25.4	44.4	32.1	34.0	11.8	24.2	31.3	20.0	25.0	20.6	26.4
		기타	1	-	-	-	-	-	-	-	-	-	1
			.7	-	-	-	-	-	-	-	-	-	.3
		계	134	9	28	50	17	33	32	5	4	63	3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8>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직업별 강제방식

(단위: 빈도, %)

유형	구분	강제 방식										계	
		말로 협박	흉기 협박	구타	흉기 폭행	인신 속박	완력 사용	약물 이용	강금	위계, 위력	해당 없음		
강간	직업	전문직	1	0	—	—	—	6	—	—	—	7	
			1.1	—	—	—	—	7.5	—	—	—	2.3	
		회사원	16	5	3	—	—	9	—	—	—	4	
			17.0	8.8	25.0	—	—	11.3	—	—	—	12.9	
		자영업	3	5	3	—	—	10	—	6	—	2	
			3.2	8.8	25.0	—	—	12.5	—	75.0	—	6.5	
		서비스직	16	8	1	—	—	14	—	1	8	4	
			17.0	14.0	8.3	—	—	17.5	—	12.5	44.4	12.9	
		일용직	13	3	1	—	—	7	—	—	5	8	
			13.8	5.3	8.3	—	—	8.8	—	—	27.8	25.8	
		학생	1	1	—	—	—	1	—	—	—	1	
			1.1	1.8	—	—	—	1.3	—	—	—	3.2	
		공직	5	1	1	—	2	3	—	—	—	2	
			5.3	1.8	8.3	—	40.0	3.8	—	—	—	6.5	
		유통업소	—	4	—	—	—	6	—	—	—	1	
			—	7.0	—	—	—	7.5	—	—	—	3.2	
		무직	39	30	3	—	3	24	—	1	5	9	
			41.5	52.6	25.0	—	60.0	30.0	—	12.5	27.8	29.0	
		계		94	57	12	—	5	80	—	8	18	
				100.	100.	100.	—	100.	100.	—	100.	100.	
강제 추행	직업	전문직	—	—	—	—	—	—	—	—	1	1	
			—	—	—	—	—	—	—	—	.8	1.1	
		회사원	5	—	2	—	—	14	—	—	15	11	
			15.2	—	25.0	—	—	14.6	—	—	11.4	12.1	
		자영업	4	1	1	—	—	15	—	1	30	11	
			12.1	12.5	12.5	—	—	15.6	—	25.0	22.7	12.1	
		서비스직	3	5	—	—	—	16	—	1	18	22	
			9.1	62.5	—	—	—	16.7	—	25.0	13.6	24.2	
		일용직	5	—	2	—	1	16	—	—	11	21	
			15.2	—	25.0	—	100.	16.7	—	—	8.3	23.1	
		학생	2	—	—	1	—	2	—	—	3	2	
			6.1	—	—	100.	—	2.1	—	—	2.3	2.2	
		공직	5	—	1	—	—	6	—	—	11	3	
			15.2	—	12.5	—	—	6.3	—	—	8.3	3.3	
		유통업소	—	—	—	—	—	2	—	—	1	1	
			—	—	—	—	—	2.1	—	—	.8	1.1	
		무직	9	2	2	—	—	25	1	2	42	18	
			27.3	25.0	25.0	—	—	26.0	100.	50.0	31.8	19.8	
		기타	—	—	—	—	—	—	—	—	—	1	
			—	—	—	—	—	—	—	—	—	.3	
		계		33	8	8	1	1	96	1	4	132	9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7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표 59>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직업별 범행이후 2차폭력 유형

(단위: 빈도, %)

유형	구분	범행이후의 2차폭력									계		
		없음	협박, 공갈	스토킹	금품 요구	성관계 요구	강간 미수	성매매 요구	기타	미상			
강간	직업	전문직	2	-	-	-	1	-	-	4	-	7	
		1.1	-	-	-	4.5	-	-	21.1	-	2.3		
		회사원	22	13	-	-	1	-	-	-	1	37	
			12.0	21.0	-	-	4.5	-	-	-	12.5	12.3	
		자영업	21	5	-	-	2	-	-	1	-	29	
			11.5	8.1	-	-	9.1	-	-	5.3	-	9.6	
		서비스직	33	8	-	-	5	1	1	2	1	51	
			18.0	12.9	-	-	22.7	100.0	100.0	10.5	12.5	16.9	
		일용직	21	9	1	-	6	-	-	-	-	37	
			11.5	14.5	100.0	-	27.3	-	-	-	-	12.3	
		학생 (휴학생)	2	1	-	-	-	-	-	1	-	4	
			1.1	1.6	-	-	-	-	-	5.3	-	1.3	
		공직	6	6	-	-	-	-	-	1	-	13	
			3.3	9.7	-	-	-	-	-	5.3	-	4.3	
		유통 업소	7	2	-	-	-	-	-	1	-	10	
			3.8	3.2	-	-	-	-	-	5.3	-	3.3	
		무직	69	18	-	5	7	-	-	9	6	114	
			37.7	29.0	-	100.0	31.8	-	-	47.4	75.0	37.7	
		계		183	62	1	5	22	1	1	19	8	3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직업	전문직	2	-	-	-	-	-	-	-	-	2	
		.6	-	-	-	-	-	-	-	-	-	.5	
		회사원	44	-	-	-	-	-	-	2	1	47	
			13.7	-	-	-	-	-	-	15.4	33.3	12.7	
		자영업	50	3	-	-	2	-	-	5	1	61	
			15.5	10.3	-	-	66.7	-	-	38.5	33.3	16.4	
		서비스직	63	1	-	-	-	-	-	1	-	65	
			19.6	3.4	-	-	-	-	-	7.7	-	17.5	
		일용직	48	5	-	-	-	1	-	2	-	56	
			14.9	17.2	-	-	-	100.0	-	15.4	-	15.1	
		학생 (휴학생)	10	1	-	-	-	-	-	-	-	11	
			3.1	3.4	-	-	-	-	-	-	-	3.0	
		공직	12	13	-	-	-	-	-	-	-	25	
			3.7	44.8	-	-	-	-	-	-	-	6.7	
		유통 업소	3	-	-	-	-	-	-	1	-	4	
			.9	-	-	-	-	-	-	7.7	-	1.1	
		무직	89	6	-	-	1	-	-	2	1	99	
			27.6	20.7	-	-	33.3	-	-	15.4	33.3	26.7	
		기타	1	-	-	-	-	-	-	-	-	1	
			.3	-	-	-	-	-	-	-	-	.3	
		계		322	29	-	-	3	1	-	13	3	371
			100.0	100.0	-	-	100.0	100.0	-	100.0	100.0	100.0	

<표 60>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자 직업별 강제추행 유형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강제추행의 유형									계	
		해당 없음	성적 키스	성기외 성적 접촉	피해자 성기 접촉	가해자 성기 접촉	구강 성교	항문 성교	손가락 항문, 질삽입	기타		
강간	직업	전문직	-	-	4	-	-	-	-	-	4	
			-	-	17.4	-	-	-	-	-	4.0	
		회사원	2	1	5	2	1	-	-	-	11	
			8.0	12.5	21.7	9.1	14.3	-	-	-	10.9	
		자영업	7	-	2	7	1	3	-	1	21	
			28.0	-	8.7	31.8	14.3	27.3	-	25.0	-	20.8
		서비스직	2	2	4	1	1	-	-	-	10	
			8.0	25.0	17.4	4.5	14.3	-	-	-	9.9	
		일용직	4	2	5	2	-	-	-	-	13	
			16.0	25.0	21.7	9.1	-	-	-	-	12.9	
		학생 (휴학생)	-	1	-	-	-	-	-	-	1	
			-	12.5	-	-	-	-	-	-	1.0	
		공직	1	-	1	1	-	1	-	-	4	
			4.0	-	4.3	4.5	-	9.1	-	-	4.0	
		유통업소	1	-	-	-	1	-	-	-	2	
			4.0	-	-	-	14.3	-	-	-	2.0	
		무직	8	2	2	9	3	7	-	3	1	35
			32.0	25.0	8.7	40.9	42.9	63.6	-	75.0	100.0	34.7
		계	25	8	23	22	7	11	-	4	1	1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직업	전문직	-	1	-	1	-	-	-	-	2	
			-	2.8	-	.7	-	-	-	-	.5	
		회사원	1	4	2-	16	4	-	-	2	3	50
			16.7	11.1	16.3	11.7	11.1	-	-	16.7	16.7	13.3
		자영업	2	5	20	20	7	1	3	2	2	62
			33.3	13.9	16.3	14.6	19.4	20.0	75.0	16.7	11.1	16.4
		서비스직	-	5	22	24	7	2	-	1	3	64
			-	13.9	17.9	17.5	19.4	40.0	-	8.3	16.7	17.0
		일용직	2	8	18	18	4	1	-	1	4	56
			33.3	22.2	14.6	13.1	11.1	20.0	-	8.3	22.2	14.9
		학생 (휴학생)	-	3	2	4	2	-	-	-	-	11
			-	8.3	1.6	2.9	5.6	-	-	-	-	2.9
		공직	-	1	6	16	1	-	-	-	2	26
			-	2.8	4.9	11.7	2.8	-	-	-	11.1	6.9
		유통업소	-	-	1	1	1	-	-	1	-	4
			-	-	.8	.7	2.8	-	-	8.3	-	1.1
		무직	1	9	33	37	10	1	1	5	4	101
			16.7	25.0	26.8	27.0	27.8	20.0	25.0	41.7	22.2	26.8
		기타	-	-	1	-	-	-	-	-	1	
			-	-	.8	-	-	-	-	-	.3	
		계	6	36	123	137	36	5	4	12	18	37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1>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자 직업별 강간 유형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강간의 유형						계
		해당 없음	단순 강간	강도 강간	윤간	윤간+ 강도	기타	
강간	직업	전문직	—	4	—	—	—	4
			—	2.3	—	—	—	1.5
		회사원	2	16	1	10	1	33
			10.5	9.2	5.3	35.7	8.3	14.3
		자영업	2	18	—	—	—	22
			10.5	10.4	—	—	—	8.1
		서비스직	2	39	2	5	1	51
			10.5	22.5	10.5	17.9	8.3	18.8
		일용직	3	23	—	2	—	32
			15.8	13.3	—	7.1	—	11.8
		학생 (휴학생)	—	2	—	—	—	3
			—	1.2	—	—	—	1.1
		공직 (공공기관 근무자)	—	4	1	2	—	10
			—	2.3	5.3	7.1	—	3.7
		유통 업소	—	7	—	2	—	10
			—	4.0	—	7.1	—	3.7
		무직	10	60	15	7	10	5
			52.6	34.7	78.9	25.0	83.3	39.3
		계	19	173	19	28	12	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직업	회사원	11	—	—	—	—	11
			29.7	—	—	—	—	26.8
		자영업	8	1	—	—	—	10
			21.6	33.3	—	—	—	24.4
		서비스직	5	1	—	—	—	6
			13.5	33.3	—	—	—	14.6
		일용직	4	—	—	—	—	4
			10.8	—	—	—	—	9.8
		학생 (휴학생)	3	—	—	—	—	3
			8.1	—	—	—	—	7.3
		공직 (공공기관 근무자)	4	—	—	—	—	4
			10.8	—	—	—	—	9.8
		무직	2	1	—	—	—	3
			5.4	33.3	—	—	—	7.3
		계	37	3	—	—	—	41
			100.0	100.0	—	—	—	100.0

<표 62>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연령별 범죄지속기간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범죄지속기간					계	
		1회에 그침	1개월 이하	1~5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강간	성범죄자 연령별	20대 이하	102	18	10	1	1	132
			52.6	36.0	43.5	6.7	4.0	43.0
		30대	53	21	5	3	9	91
			27.3	42.0	21.7	20.0	36.0	29.6
		40대	34	7	3	8	13	65
			17.5	14.0	13.0	53.3	52.0	21.2
		50대	4	3	2	2	1	12
			2.1	6.0	8.7	13.3	4.0	3.9
		60대 이상	1	1	3	1	1	7
			.5	2.0	13.0	6.7	4.0	2.3
		계	194	50	23	15	25	30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추행	성범죄자 연령별	20대 이하	45	3	1	-	-	49
			15.9	8.1	4.5	-	-	12.8
		30대	89	6	3	3	4	105
			31.4	16.2	13.6	17.6	16.7	27.4
		40대	85	17	6	5	6	119
			30.0	45.9	27.3	29.4	25.0	31.1
		50대	46	2	8	6	9	71
			16.3	5.4	36.4	35.3	37.5	18.5
		60대 이상	18	9	4	3	5	39
			6.4	24.3	18.2	17.6	20.8	10.2
		계	283	37	22	17	24	38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3>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교육수준별 범죄지속기간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범죄지속기간					계
		1회에 그침	1개월 이하	1~5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강간	교육수준	무학	1	-	-	-	1
			.5	-	-	-	.3
		중졸이하	7	1	2	2	13
			3.6	2.0	8.7	13.3	4.0
		고졸	17	3	-	-	21
			8.9	6.1	-	-	6.9
		대졸이상	20	2	-	1	25
			10.4	4.1	-	6.7	8.2
		미상	147	43	21	12	244
			76.6	87.8	91.3	80.0	80.3
		계		192	49	23	15
				100.0	100.0	100.0	100.0
강제추행	교육수준	무학	2	0	0	0	2
			.7	.0	.0	.0	.5
		중졸이하	24	4	0	2	39
			8.6	10.8	.0	11.8	37.5
		고졸	26	0	1	0	28
			9.3	.0	4.8	.0	7.4
		대졸이상	12	3	4	4	26
			4.3	8.1	19.0	23.5	12.5
		미상	215	30	16	11	283
			77.1	81.1	76.2	64.7	45.8
		계		279	37	21	17
				100.0	100.0	100.0	100.0

<표 64>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직업별 범죄지속기간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범죄지속기간					계		
		1회에 그침	1개월 이하	1~5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강간	직업	전문직	–	1	1	2	3	7	
		–	2.0	4.3	13.3	12.0	2.3		
		회사원	25	2	3	1	6	37	
			13.2	4.0	13.0	6.7	24.0	12.2	
		자영업	14	8	3	–	3	28	
			7.4	16.0	13.0	–	12.0	9.2	
		서비스직	29	6	6	5	7	53	
			15.3	12.0	26.1	33.3	28.0	17.5	
		일용직	24	5	–	4	4	37	
			12.6	10.0	–	26.7	16.0	12.2	
		학생 (휴학생)	4	–	–	–	–	4	
			2.1	–	–	–	–	1.3	
		공직	12	1	–	–	–	13	
			6.3	2.0	–	–	–	4.3	
		유통업소	6	5	–	–	–	11	
			3.2	10.0	–	–	–	3.6	
		무직	76	22	10	3	2	113	
			40.0	44.0	43.5	20.0	8.0	37.3	
		계		190	50	23	15	25	30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추행	직업	전문직	2	–	–	–	–	2	
		–	.7	–	–	–	–	.5	
		회사원	42	1	3	2	2	50	
			15.1	2.7	14.3	11.8	8.3	13.2	
		자영업	37	8	1	6	11	63	
			13.3	21.6	4.8	35.3	45.8	16.7	
		서비스직	50	10	–	2	2	64	
			17.9	27.0	–	11.8	8.3	16.9	
		일용직	44	4	4	–	3	55	
			15.8	10.8	19.0	–	12.5	14.6	
		학생 (휴학생)	10	1	–	–	–	11	
			3.6	2.7	–	–	–	2.9	
		공직	11	3	5	4	2	25	
			3.9	8.1	23.8	23.5	8.3	6.6	
		유통업소	4	–	–	–	–	4	
			1.4	–	–	–	–	1.1	
		무직	78	10	8	3	4	103	
			28.0	27.0	38.1	17.6	16.7	27.2	
		기타	1	–	–	–	–	1	
			.4	–	–	–	–	.3	
		계		279	37	21	17	24	37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5>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 피해자 직업별 범죄지속기간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범죄지속기간					계		
		1회에 그침	1개월 이하	1~5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강간	피해자의 직업	무직	46	15	3	1	5	70	
			24.1	31.9	13.6	6.3	20.8	23.3	
		편의점 아르바이트	–	–	–	–	1	1	
			–	–	–	–	4.2	.3	
		다방 종업원	15	–	1	2	–	18	
			7.9	–	4.5	12.5	–	6.0	
		기타	114	28	18	13	16	189	
			59.7	59.6	81.8	81.3	66.7	63.0	
		미상	16	4	–	–	2	22	
			8.4	8.5	–	–	8.3	7.3	
		계		191	47	22	16	24	3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피해자의 직업	무직	36	4	3	–	1	44	
			13.5	11.4	13.6	–	4.2	12.1	
		다방 종업원	2	–	–	1	–	3	
			.7	–	–	6.3	–	.8	
		유통업소 종업원	1	–	–	–	–	1	
			.4	–	–	–	–	.3	
		기타	207	31	19	14	21	292	
			77.5	88.6	86.4	87.5	87.5	80.2	
		미상	21	–	–	1	2	24	
			7.9	–	–	6.3	8.3	6.6	
		계		267	35	22	16	24	36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6>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 피해청소년 동거형태별 범죄지속기간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범죄지속기간					계		
		1회에 그침	1개월 이하	1~5개월	6개월~1년	1년이상			
강간	피해청소년의동거 형태	부모	72	18	15	4	16	125	
			36.9	37.5	65.2	25.0	66.7	40.8	
		부	4	7	4	1	3	19	
			2.1	14.6	17.4	6.3	12.5	6.2	
		모	17	4	–	4	2	27	
			8.7	8.3	–	25.0	8.3	8.8	
		조모	7	2	1	–	–	10	
			3.6	4.2	4.3	–	–	3.3	
		친척	14	1	–	1	–	16	
			7.2	2.1	–	6.3	–	5.2	
		형제 자매	10	2	–	2	2	16	
			5.1	4.2	–	12.5	8.3	5.2	
		친구	71	14	3	4	1	93	
			36.4	29.2	13.0	25.0	4.2	30.4	
		계		195	48	23	16	24	30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피해 청소년의 동거형태	부모	177	20	18	11	17	243	
			63.2	52.6	78.3	64.7	70.8	63.6	
		부	13	5	2	1	4	25	
			4.6	13.2	8.7	5.9	16.7	6.5	
		모	20	2	2	1	2	27	
			7.1	5.3	8.7	5.9	8.3	7.1	
		조부모	1	1	–	–	–	2	
			.4	2.6	–	–	–	.5	
		조부	1	–	–	–	–	1	
			.4	–	–	–	–	.3	
		조모	1	2	–	–	–	3	
			.4	5.3	–	–	–	.8	
		친척	7	1	1	2	–	11	
			2.5	2.6	4.3	11.8	–	2.9	
		형제 자매	9	1	–	–	–	10	
			3.2	2.6	–	–	–	2.6	
		친구	49	5	–	2	1	57	
			17.5	13.2	–	11.8	4.2	14.9	
		기타	2	1	–	–	–	3	
			.7	2.6	–	–	–	.8	
		계		280	38	23	17	24	3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7>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에서 청소년가출여부에 따른 범죄지속기간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범죄지속기간					계	
		1회에 그침	1개월 이하	1~5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강간	청소년 가출여부	가출	23	8	2	2	–	35
			11.8	16.3	8.7	12.5	–	11.4
		미가출	125	30	18	12	24	209
			64.1	61.2	78.3	75.0	96.0	67.9
		미상	47	11	3	2	1	64
			24.1	22.4	13.0	12.5	4.0	20.8
		계	195	49	23	16	25	3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청소년 가출여부	가출	4	1	–	1	–	6
			1.4	2.6	–	5.9	–	1.6
		미가출	255	36	23	16	24	354
			90.4	94.7	100.0	94.1	100.0	92.2
		미상	23	1	–	–	–	24
			8.2	2.6	–	–	–	6.3
		계	282	38	23	17	24	3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8>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 피해자신분별 범죄지속기간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범죄지속기간					계	
		1회에 그침	1개월 이하	1~5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강간	피해자 신분	미취학아동	4	–	3	–	–	7
			2.1	–	13.0	–	–	2.3
		재학생	119	30	17	14	22	202
			61.0	61.2	73.9	87.5	88.0	65.6
		휴학생	1	1	–	–	–	2
			.5	2.0	–	–	–	.6
		퇴학 및 자퇴생	21	8	1	–	1	31
			10.8	16.3	4.3	–	4.0	10.1
		미상	50	10	2	2	2	66
			25.6	20.4	8.7	12.5	8.0	21.4
		계	195	49	23	16	25	3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피해자 신분	미취학아동	50	3	2	1	2	58
			17.7	7.9	8.7	5.9	8.3	15.1
		재학생	208	33	21	15	20	297
			73.5	86.8	91.3	88.2	83.3	77.1
		휴학생	1	–	–	–	–	1
			.4	–	–	–	–	.3
		퇴학 및 자퇴생	4	1	–	–	1	6
			1.4	2.6	–	–	4.2	1.6
		미상	20	1	–	1	1	23
			7.1	2.6	–	5.9	4.2	6.0
		계	283	38	23	17	24	38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9>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의 강제방식별 피해자의 저항정도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피해자의 저항정도				계		
		저항하지 못함	말로만 저항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저항	물리적인 힘으로 저항			
강간	강제방식	말로 협박	38	45	13	-	96	
			28.8	32.8	36.1	-	31.3	
		흉기로 협박	42	15	3	-	60	
			31.8	10.9	8.3	-	19.5	
		구타	2	9	1	-	12	
			1.5	6.6	2.8	-	3.9	
		인신 속박	3	2	-	-	5	
			2.3	1.5	-	-	1.6	
		완력의 사용	26	35	16	2	79	
			19.7	25.5	44.4	100.0	25.7	
		감금	6	1	1	-	8	
			4.5	.7	2.8	-	2.6	
		위계, 위력의 사용	4	14	-	-	18	
			3.0	10.2	-	-	5.9	
		해당 없음	11	16	2	-	29	
			8.3	11.7	5.6	-	9.4	
		계		132	137	36	2	307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강제방식	말로 협박	18	13	4	-	35	
			7.9	10.4	16.7	-	9.2	
		흉기로 협박	7	1	-	-	8	
			3.1	.8	-	-	2.1	
		구타	2	4	2	-	8	
			.9	3.2	8.3	-	2.1	
		흉기로 폭행	1	-	-	-	1	
			.4	-	-	-	.3	
		인신 속박	-	1	-	-	1	
			-	.8	-	-	.3	
		완력의 사용	49	36	9	-	94	
			21.4	28.8	37.5	-	24.8	
		약물이용	1	-	-	-	1	
			.4	-	-	-	.3	
		감금	-	3	1	-	4	
			-	2.4	4.2	-	1.1	
		위계, 위력의 사용	93	38	4	-	135	
			40.6	30.4	16.7	-	35.6	
		해당 없음	58	29	4	1	92	
			25.3	23.2	16.7	100.0	24.3	
		계		229	125	24	1	379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70>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강제추행 유형별 피해자 저항정도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피해자의 저항정도				계	
		저항하지 못함	말로만 저항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저항	물리적인 힘으로 저항		
강간	강제 추행의 유형	해당 없음	11	9	4	1	25
			21.6	20.9	57.1	50.0	24.3
		성적키스	1	7	–	–	8
			2.0	16.3	–	–	7.8
		성기이외 성적접촉	5	17	1	–	23
			9.8	39.5	14.3	–	22.3
		피해자의 성기접촉	15	5	1	1	22
			29.4	11.6	14.3	50.0	21.4
		가해자의 성기접촉	5	1	1	–	7
			9.8	2.3	14.3	–	6.8
		구강성교	8	4	–	–	12
			15.7	9.3	–	–	11.7
		이물질 삽입	1	–	–	–	1
			2.0	–	–	–	10
		손가락의 항문 및 질삽입	4	–	–	–	4
			7.8	–	–	–	3.9
		기타	1	–	–	–	1
			2.0	–	–	–	1.0
		계	51	43	7	2	103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강제 추행의 유형	해당 없음	3	3	–	–	6
			1.3	2.4	–	–	1.6
		성적키스	21	14	1	–	36
			9.2	11.1	4.3	–	9.5
		성기이외 성적접촉	67	47	11	1	126
			29.3	37.3	47.8	100.0	33.2
		피해자의 성기접촉	92	40	4	–	136
			40.2	31.7	17.4	–	35.9
		가해자의 성기접촉	27	7	2	–	36
			11.8	5.6	8.7	–	9.5
		구강성교	3	1	1	–	5
			1.3	.8	4.3	–	1.3
		항문성교	2	2	–	–	4
			.9	1.6	–	–	1.1
		손가락의 항문 및 질삽입	4	5	3	–	12
			1.7	4.0	13.0	–	3.2
		기타	10	7	1	–	18
			4.4	5.6	4.3	–	4.7
		계	229	126	23	1	379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71>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의 강간 유형별 피해자 저항정도

(단위: 빈도, %)

범죄유형	구분	피해자의 저항정도				계		
		저항하지 못함	말로만 저항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저항	물리적인 힘으로 저항			
강간	강간의 유형	해당 없음	8	9	1	-	18	
			6.9	7.4	2.9	-	6.6	
		단순 강간	74	77	22	1	174	
			63.8	63.6	64.7	50.0	63.7	
		강도 강간	10	6	3	-	19	
			8.6	5.0	8.8	-	7.0	
		윤간	7	16	5	-	28	
			6.0	13.2	14.7	-	10.3	
		윤간+ 강도	11	3	-	-	14	
			9.5	2.5	-	-	5.1	
		기타	6	10	3	1	20	
			5.2	8.3	8.8	50.0	7.3	
		계		116	121	34	2	273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추행	강간의 유형	해당 없음	21	12	4	-	37	
			87.5	100.0	66.7	-	88.1	
		단순 강간	3	-	1	-	4	
			12.5	-	16.7	-	9.5	
		기타	-	-	1	-	1	
			-	-	16.7	-	2.4	
		계		24	12	6	-	42
				100.0	100.0	100.0	-	100.0

<표 72>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 피해자신분별 저항정도

(단위: 빈도, %)

범죄 유형	구분	피해자의 저항정도				계		
		저항하지 못함	말로만 저항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저항	물리적인 힘으로 저항			
강간	피해자 신분	미취학 아동	5	1	1	-	7	
			3.8	.7	2.8	-	2.3	
		재학생	83	93	23	2	201	
			63.4	68.4	63.9	100.0	65.9	
		휴학생	1	-	1	-	2	
			.8	-	2.8	-	.7	
		퇴학 및 자퇴생	9	19	2	-	30	
			6.9	14.0	5.6	-	9.8	
		미상	33	23	9	-	65	
			25.2	16.9	25.0	-	21.3	
		계		131	136	36	2	305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제 추행	피해자 신분	미취학 아동	40	14	3	-	57	
			17.5	11.1	13.0	-	15.1	
		재학생	169	104	18	1	292	
			74.1	82.5	78.3	100.0	77.2	
		휴학생	-	-	1	-	1	
			-	-	4.3	-	.3	
		퇴학 및 자퇴생	4	1	1	-	6	
			1.8	.8	4.3	-	1.6	
		미상	15	7	-	-	22	
			6.6	5.6	-	-	5.8	
		계		228	126	23	1	378
				100.0	100.0	100.0	100.0	100.0